

매장문화재 업무 편람

2007. 12.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매장문화재 업무편람

1. 매장문화재의 이해	5
매장문화재란 / 매장문화재 조사 / 매장문화재 조사 통계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	
2. 문화재보호법령(매장문화재)	1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 별표·별지 서식	
3.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75
본문 / 별표 / 서식	
4.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101
본문 / 서식 / 자료	
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163
6. 업무 참고자료	171
용어해설 / Q & A / 소규모발굴비 지원업무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 현황 /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 문화재위원회 규정 / 공무원 여비규정	

1. 매장문화재란 / 7
2. 매장문화재 조사 / 7
3. 매장문화재 조사 통계 / 11
4.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 / 14

1.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란?

매장문화재는 지하나 수면 아래 묻혀 있는 문화재(文化財)이다. 크게 유구(遺構)와 유물(遺物)로 나뉘는데, 유구는 집터·무덤 등과 같은 구조물이며, 유물은 돌도끼, 도자기와 같은 물건들이다.

매장문화재는 법에 의해 보호되며,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에 의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보존여부가 결정된다.

매장문화재 조사는 매장문화재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나뉘는데, 지표조사는 원형의 훼손 없이 유적의 분포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며, 발굴조사는 땅이나 물을 헤치고 유적을 드러내는 일이다.

2. 매장문화재 조사

매장문화재는 원형을 유지해야 할 보호의 대상이나, 연구·정비·개발사업 등의 원인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개발사업이며, 아래는 개발사업자가 수행하는 매장문화재관련 행정절차이다.

구분	절차	설명
지표조사	시행	•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따라 지표조사 실시여부를 판단
	조사실시	• 조사기관에서 지표조사 실시
	결과협의	• 조사 결과는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청에 제출(보존대책 통보) * 보존대책 : 사업시행, 현상보존, 입회조사, 발굴(시굴)조사 등
	보존조치이행	•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받음
발굴조사	허가신청	• 조사기관의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청에 신청
	허가	•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청에서 허가 통보 받고 조사기관에 통보
	조사실시	* 조사기관은 문화재청에 착수신고, 지도위원회개최보고 등 실시
	완료보고	• 조사기관의 약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청에 보고
	완료조치	• 지자체를 통해 발굴완료에 대한 조치 통보 받음 * 조치 : 기록보존(사업시행), 이전복원, 원형보존(현상보존) 등

- 위 각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자문(지도)위원회,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자문(지도)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주관으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에서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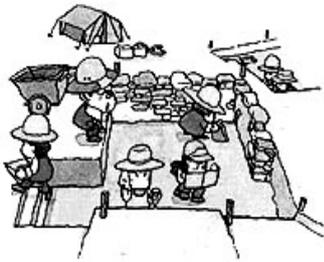
▣ 발굴은 왜 하는가?

발굴은 잃었던 역사를 되찾는 일이며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보고 배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알기 위해 우리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같은 옛 책을 읽어야 한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쓰여 있다. 그러나 역사책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당시 왕들의 행적이나 궁궐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특별히 기록으로 남길 만한 중요한 일들만 쓰여 있어 아주 적은 사실들만 알 수 있을 뿐, 일반 백성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고구려 역사를 자세히 알기 위해 고구려 무덤벽화를 발굴하여 그림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통해 고구려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고 집은 어떻게 만들었으며, 얼굴 생김새는 누구를 닮았는지에 대해 자세한 모습을 알게 된다.



풍납토성을 발굴하여 백제 사람들의 살림터와 그들이 만들어 썼던 그릇, 공공건물의 크기 등을 알 수 있다. 경주에서는 신라 사람들이 돌을 깔아 길을 내고, 우마차가 달렸던 흔적들이 발굴을 통해 나오고 있으며 돌무지 무덤 안에서는 갑옷, 무기를 비롯해 천마그림과 같은 예술작품들, 금관, 금귀걸이, 유리구슬, 목걸이 같은 것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유적을 발굴해 보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모습들이 생생히 남아 있어 역사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발굴은 잃었던 역사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 어디를 발굴할 것인가? - 매장문화재를 찾는 방법

매장문화재 및 유적과 유물들은 본디 땅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지만 땅속에 들어 있는 유물들이 자연의 힘이나 사람들에 의한 훼손의 결과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물의 흔적을 가지고 그곳에 유적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큰 비에 의해 산사태가 나거나 홍수로 유실된 강가의 쌓임 층에서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밟았을 하거나 크고 작은 공사로 땅속에 있던 유물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드러난 유물·유적들을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그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을 지표조사라고 한다. 지표상에 드러난 유물·유적은 조사 지역 안에 어떤 성격의 유적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지표 조사는 고고학 전문가들이 하게 되며 매장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뿐만 아니라 의식주·풍속 등에 관한 민속자료와 전설·민담·민요·방언·가족제도 등 유·무형의 자료들, 그리고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 둔다.

지표조사는 조사지역 안에 있는 유물·유적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지역 안에 있는 유형문화재들은 지표조사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지만 땅속에 들어 있는 매장문화재는 지표조사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표에 드러난 유물·유적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땅속에 들어 있는 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자재인 자력계나 전자탐침봉을 이용하여 땅을 파지 않고도 유적을 찾는 방법도 있으며, 항공사진 촬영으로 땅속에 들어 있던 옛 도시 유적을 찾아내기도 한다.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을 좀 더 분명히 밝혀 보기 위해 발굴을 하게 된다. 발굴이란 땅 속에 들어 있는 매장문화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지표조사에서 유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발굴을 통해 유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발굴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



발굴은 어디까지나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를 하듯이 효율적으로 시간과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가능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다.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적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발굴 기간, 발굴 경비, 발굴조사단 구성, 발굴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발굴을 수행하는 조사단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고고학 전문가도 유적의 시대와 성격에 따라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 조사단을 구성하게 된다.

발굴 경비는 유적의 규모와 발굴 기간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그밖에도 유적의 성격이나 발굴 방법이 다르면 발굴 경비도 다르게 마련이다. 지표조사나 시굴 조사에서 나타난 유적의 규모와 성격이 실제 발굴과정에서 더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발굴 진행 과정에서 발굴 기간이나 경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굴 결과에 따라 중요한 유적을 이전·복원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예상외의 경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 발굴방법

발굴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발굴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 발굴 방법이 다르고 동원되는 인력이 다르다.



가장 효과적으로 유물·유적을 확하는 방법은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오고 있다. 발굴 방법 가운데 옆의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긴 구멍을 만들어 발굴하는 것을 트렌치 조사라 한다. 유적을 가로지르는 긴 구멍을 만들어 조사하는

것으로 유적이 넓게 분포하는 곳에 유리하다. 또 하나는 바둑판식으로 발굴 구덩을 만들어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적이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에 알맞다. 옛무덤을 발굴할 때는 사분법을 많이 쓰는데 유적의 지층을 확인하면서 발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발굴 기록

발굴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한다. 그날 그날 발굴한 내용, 출토 유물, 현장기록 내용으로부터 그날의 날씨, 몇 월 몇 일에 누가 다녀갔고 몇 사람이 일을 했는지 등의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일기처럼 만들어 둔다. 그것이 발굴의 산 역사이고, 때문에 중요하다.

발굴에서 나온 유적과 유물은 하나하나 재서 그린다. 그것을 실측도면이라고 한다. 실측 도면은 발굴 뒤에 남는 가장 귀중한 자료가 된다. 유물이 나온 자리, 유적의 구조는 곧 유물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유물이 드러나는 과정과 놓인 상태 등은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발굴의 전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해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 유적이 나왔을 때 현장 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구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으나 유구를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복제하여 옮기는 방법을 쓴다. 그것을 유구전사라고 한다. 유구 전사로 다른 곳에 옮기는 것 등을 이전복원이라고 한다.

▶ 유적, 유물연구



발굴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할 수는 없다. 유물들이 온전한 형태로 나오지 않고 깨지거나 부서진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연대 측정, 물리적 분석 등 과학기자재를 써서 분석해야 할 것들도 많다. 따라서 발굴이 끝나면 실험실로 옮겨 분석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때론 현장 발굴이 한달 걸리면 실험실에서 6개월 정도의 분석기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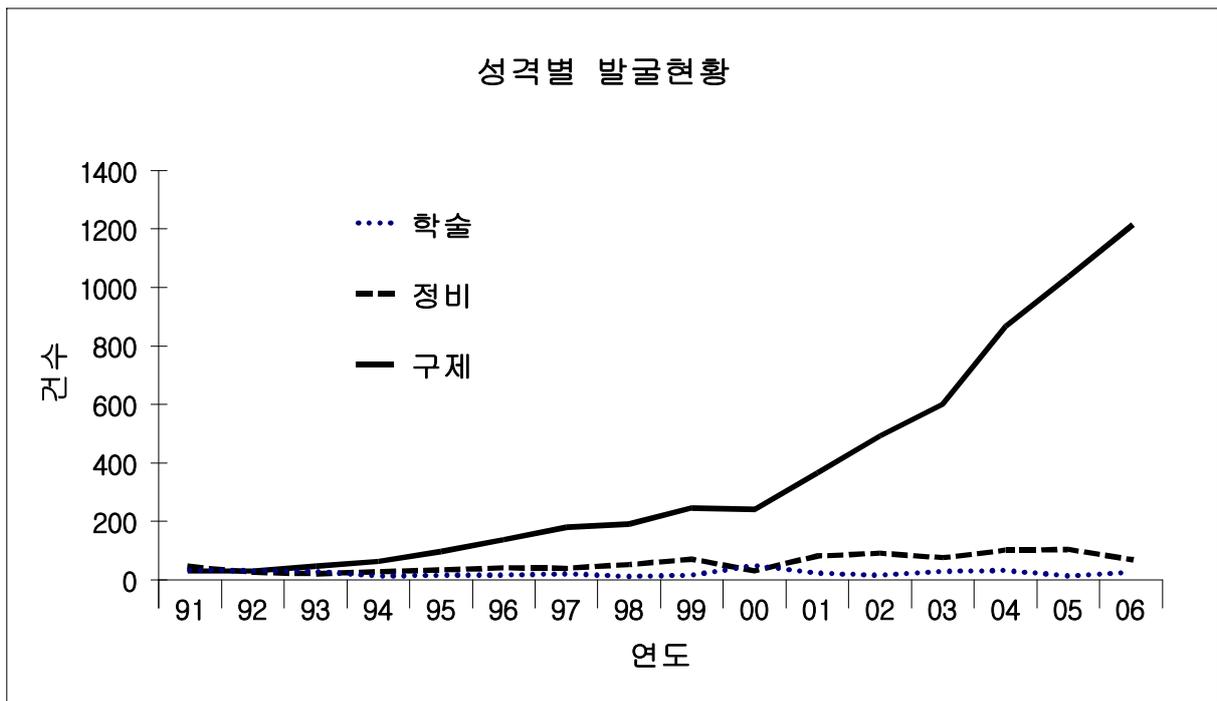
현장발굴과 실험실 분석이 끝나면 조사·정리한 내용을 묶어 보고서로 제출하면 발굴이 모두 마무리된다.

보고서 작성은 대규모 발굴의 경우 발굴이 끝나고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3. 매장문화재 조사 통계

□ 성격별 발굴조사 현황(1991-2006)

연도별	계	순수학술발굴	유적정비목적	구제발굴(연장)
1991	107	31	46	30
1992	86	29	26	31
1993	95	27	21	47
1994	102	11	28	63
1995	145	14	34	97
1996	192	14	41	137
1997	239	19	40	180
1998	254	10	53	191
1999	331	14	71	246
2000	319	47	31	241
2001	469	21	82	366
2002	598	14	91	493
2003	705	27	76	602
2004	999	30	102	867
2005	972	12	104	856(180)
2006	947	23	70	854(353)
계	5,613	320	916	4,447(533)



□ 지역별 발굴조사 현황(2000-2006)

지역/연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강원	11	26	26	47	84	91	75(12)
경기	53	49	80	119	167	164	147(68)
경남	41	58	70	62	110	97	92(31)
경북	52	71	97	91	129	119	149(55)
광주	0	4	10	6	15	18	26(8)
대구	12	28	31	45	60	45	48(24)
대전	9	12	9	5	14	4	7(1)
부산	7	16	21	15	24	21	15(5)
서울	5	10	4	17	24	23	16(10)
울산	26	47	75	56	65	47	53(20)
인천	7	10	11	13	13	9	18(3)
전남	28	37	38	45	68	68	83(13)
전북	20	33	40	56	45	59	41(19)
제주	2	11	6	7	14	19	15(7)
충남	27	29	52	82	116	123	100(48)
충북	19	28	28	39	51	65	62(29)
계	319	469	598	705	999	972	947(353)

* 2005년은 변경(연장)허가 제외됨.

□ 연도별 발굴 허가건/비용/면적 현황(1998-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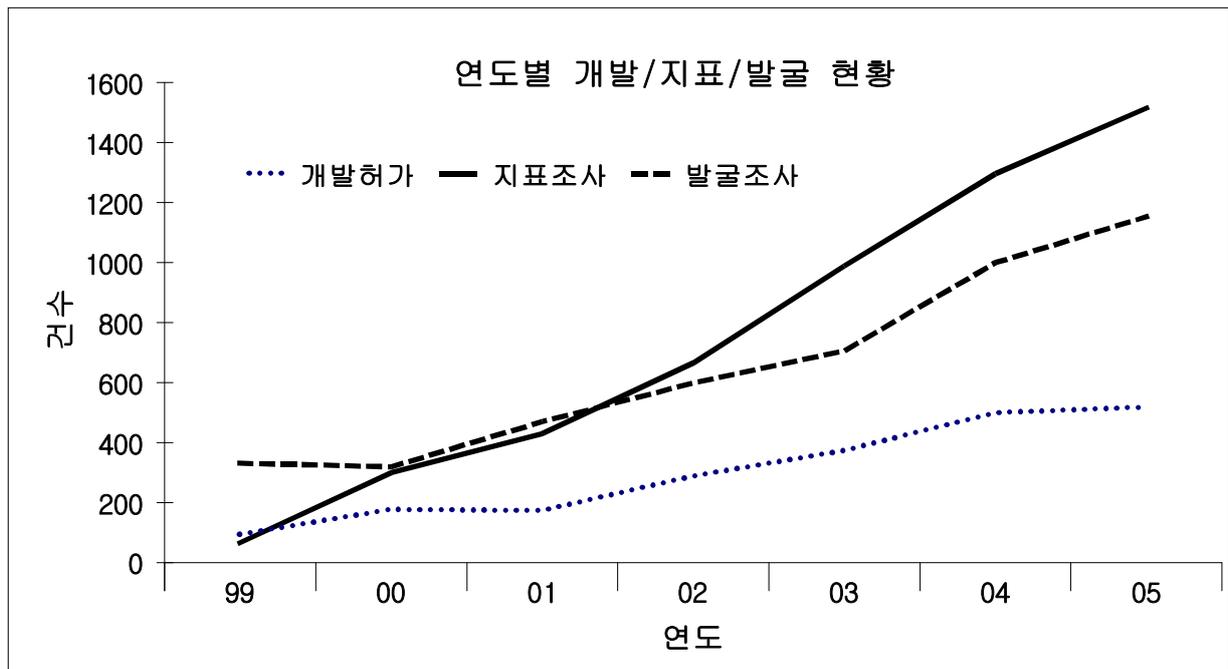
연 도	허가건수 (허가/기간연장)	조사비용(백만원) (허가/기간연장)	조사면적(k㎡)
1998	254	32,501	
1999	331	36,981	7
2000	319	36,167	10
2001	469	50,555	13
2002	598	76,605	19
2003	705	99,246	19
2004	999	141,146	34
2005	1,152 (972/180건)	164,691 (127,823/36,868)	35
2006	1,300 (947/353건)	214,841 (104,115/110,726)	35

*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발굴조사계획서상 기재된 금액 기준임.

□ 개발행위허가 대비 문화재조사 현황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계
지표조사	건 수	66	299	429	665	987	1,295	1,514	5,255
	증가율(%)	-	353	43	55	48	31	17	
발굴조사	건 수	331	319	469	598	705	999	1,152	4,573
	증가율(%)	-	-	47	28	18	42	15	
개발행위허가 (건교부 통계)	건 수	9,286	17,500	17,127	28,692	37,140	49,756	51,698	211,199
	증가율(%)	-	88	-	68	29	34	4	

*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에 대한 행위 허가.



* 개발허가는 100건 단위임.

4.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

Web-Site

<http://www.cha.go.kr/korea>

문화재청 > 자료마당 > 일반자료 > 조사·심사·발굴

- 지표조사·발굴조사 관련 통계 및 행정자료 게재
- 지표조사 착수신고, 발굴조사 허가, 지표·발굴기관 등 행정조치 현황
-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http://info.cha.go.kr>

문화재청 > 문화재정보센터 > 발굴문화재

-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설명 및 각종 통계자료 등

<http://www.nrich.go.kr/kr/data>

국립문화재연구소 > 학술연구정보지식DB

- 문화재 조사 관련 각종 통계 및 전문지식

<http://www.kepia.or.kr>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발굴조사 전문기관(법인) 현황
- 소규모발굴비 지원 관련 절차, 지도위원회 자료 등 최신 현장자료 게재

관련 도서

- 1999,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협의』, 문화재청
- 2005,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국립문화재연구소
- 2005, 『문화재 조사 요람』,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 2006, 『문화재업무지침』, 한국토지공사
- 2007, 『한국 고고학 강의』, 한국고고학회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 17
2. 별표·별지 서식 / 4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 4 장 매장문화재	제 3 장 매장문화재	
제54조 발견신고 1	제32조 발견신고 1	제50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1
제55조 발굴의 제한 1	제33조 건설공사 범위 1	제51조 발굴허가신청서 2
	제34조 발굴허가신청 2	제52조 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2
	제35조 발굴허가의 제한기간 3	
	제36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 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3	
제56조 발굴조사보고서 4	제37조 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4	
제57조 국가에 의한 발굴 4		
제58조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5	제38조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공고 5	제53조 매장문화재의 공고절차 5
제59조 처리방법 5	제39조 매장문화재의 공고 5	제54조 경찰서장의 보고 6
제60조 경찰서장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6		
제61조 국가귀속과 보상금 7	제40조 국가귀속대상문화재의 소유자 반환 7	제55조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소유권 반환 신청 7
	제41조 소유권 반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7	제56조 소유권 반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7
	제42조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8	제57조 국가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등 8
		제58조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9
		제59조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9
		제60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물의 처리방법 10
제62조 매장문화재의 보호 11	제43조 사전협의대상 및 개발 사업의 범위 11	제61조 매장문화재의 대여 11
제63조 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등 12		제62조 국가귀속문화재의 인수·인계 11
제64조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 1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65조 유실물법의 준용 12		
제 7 장 보 칙	제 5 장 보 칙	
제83조 표창 13	제49조 포상금의 지급 13	제72조 포상금지급등급의 기준13
제84조 포상금 13	제50조 포상금의 배분 13	제73조 포상금의 청구 13
제85조 권한의 위임 14	제51조 권한의 위임 14	
제90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15	제52조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15	제79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15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 16	제53조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16	제80조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 16
	제54조 지표조사보고서 등 18	제81조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사업 17
제93조 개발사업에서의 문화재 보호 19	제55조 문화유적분포지도 19	
제 2 장 국가지정문화재	제 1 장 국가지정문화재	
제34조 허가사항 19	제23조 현상변경등의 허가 및 절차 19	제30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 상변경등의 행위 .. 15
제 8 장 벌 칙		
제104조 도굴등의 죄 21		
제105조 가중죄 22		
제109조 미수범 등 22		
제110조 과실범 22		
제111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22		
제113조 관리행위방해등의 죄 23		
제115조 과태료 23		
제1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23		
제117조 양벌규정 24		
부 칙 24	부 칙 24	부 칙 2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매장문화재</p> <p>제54조(발견 신고)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하면 그 발견자 또는 토지·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55조(발굴의 제한) ①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매장문화재</p> <p>제32조(발견신고)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부터 7일 안에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신고가 해당 기관에 접수된 날을 법 제5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국가경찰관서의 장 <p>③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3조(건설공사 범위)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입목(立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p>제50조(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p> <p>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별지 제87호 서식에 따른다.</p> <p>②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경찰서장의 공고문 사본 2. 현품이나 보관기관의 매장문화재 보관증 3. 보관기관 또는 제84조에 따른 동산문화재의 감정자격이 있는 자의 예비평가서 4. 사진 4장(74밀리미터 × 90밀리미터 이상)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등”이라 한다)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굴기관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면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에 따른 발굴 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p>	<p>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및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형변경(절토, 복토, 굴착, 골재채취, 광물채취, 준설, 수몰 및 매립 등을 말한다)</p> <p>제34조(발굴허가신청) ① 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8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1.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과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 내역서를 포함한다)</p> <p>2.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조서</p> <p>3.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p> <p>4.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p>	<p>제51조(발굴허가 신청서)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88호 서식과 같다.</p> <p>제52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p> <p>② 영 제36조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6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p> <p>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p> <p>나. 제5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발굴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p> <p>다. 제56조에 따른 제출 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p> <p>2.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제9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 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이나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할 때 발굴 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면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p> <p>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p>	<p>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굴 예정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발굴대상지,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35조(발굴허가의 제한기간)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발굴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 7과 같다.</p> <p>제36조(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5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드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p> <p>⑧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p>	<p>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p> <p>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p> <p>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p> <p>4.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56조(발굴조사보고서) ①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57조(국가에 의한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p>	<p>한다.</p> <p>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p> <p>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p> <p>제37조(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주는 발굴통지서를 발굴착수 2주일 전</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제1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발굴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p> <p>③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제1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p> <p>제58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p> <p>제59조(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54조에 따른 발견 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시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p>	<p>까지 내주어야 한다.</p> <p>제38조(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9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문화재의 발굴 또는 발견사실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5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절차)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를 발견·발굴한 기관은 발견 또는 발굴 완료일 부터 2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사진 자료를 그 문화재가 발견·발굴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시사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발견·발굴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89호 서식의 출토유물 공고관리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시사는 제2항에 따</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55조와 제57조에 따른 발굴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로 문화재가 발견되면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굴이나 발견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자에게 해당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p> <p>제60조(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 방법) ① 「유실물법」에 따라 매장물이나 유실물로서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함과 동시에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이나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p>		<p>라 공고한 후 법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출현여부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4조(경찰서장의 보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에 관한 경찰서장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장물 또는 유실물의 종류, 명칭, 수량 및 현상에 관한 설명 2. 습득 또는 발견의 연월일, 장소 및 경위 3. 습득자 또는 발견자의 성명 및 주소 4. 경찰서에 제출된 연월일 5. 문화재로 인정되는 사유 6. 보관상황 7.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의 유래·전설·그 밖의 상황과 그 토지나 그 밖의 물건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판명되면 그 물건이 문화재임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2.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p>제61조(국가 귀속과 보상금)</p> <p>① 제59조제2항·제3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해당 문화재는 「민법」 제253조와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 기관 및 보</p>	<p>제40조(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소유자 반환)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공고기간 안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으면 제출받은 입증자료를 조사·검토한 후 그 공고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을 연장</p>	<p>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주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가 유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과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 9. 사진,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제55조(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소유권 반환 신청)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90호 서식에 따른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존할 필요가 없는 발굴 유물의 처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讓與)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④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발견 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5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p>	<p>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소유권 존재여부의 판단을 위한 조사 또는 관계자(관계기관을 포함한다)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관계기관이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 요청한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p>제41조(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소유권반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이하 “소유권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증자료의 조사·검토 및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반환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한 해</p>	<p>제56조(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이하 “소유권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제8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매 회의마다 위촉하는 3명 이상 5명 안에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권심사위원회에 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반환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소유권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유권심사위원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보지 아니한다.</p> <p>⑤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절차나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와 건조물 등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p>	<p>당 문화재를 발견하거나 습득하는데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으면 그 경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 중에서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은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서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하고자 하면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⑥ 소유권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정한다.</p> <p>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57조(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는 법 제54조부터 법 제57조까지 또는 법 제91조에 따라 발견신고 또는 발굴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화석, 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p>② 제53조에 따라 공고한 문화재 중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발견·발굴한 기관은 별지 제91호 서식의 발굴 매장문화재 보관증과 출토유물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4부를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토유물과 유구의 과다 또는 유물과 유구의 가치</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규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기간 안에 신고가 곤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면 법 제 5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제58조(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서는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른다.</p> <p>제59조(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제57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보관·관리관청”이라 한다)에게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 3.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과학관 <p>② 보관·관리관청은 문화재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면 제 1항 본문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문화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1.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p> <p>2. 국립민속박물관</p> <p>3. 국립·공립·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p> <p>4. 해당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p> <p>③ 보관·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라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하려면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존시설의 적부와 문화재의 활용도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기관이 해당 문화재를 다시 다른 기관에 대여 하거나 현상변경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면 제2항에 따라 그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한 보관·관리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기관은 별지 제93호 서식의 국가귀속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전시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p> <p>⑥ 보관·관리관청은 매년도의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문화재청장은 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실태가 적정하지 못하거나 국가 귀속 문화재의 안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보관·관리관청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60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물의 처리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57조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물을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매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장소는 가능한 해당 유물이 발굴된 유적지 안으로 하고 매장할 때는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장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석과 함께 매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물의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p> <p>제61조(매장문화재의 대여) ① 보관·관리관청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학교 등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에서 대여 신청을 하면 다음의 경우에만 이를 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62조(매장문화재의 보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9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그 사업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개발</p>	<p>제43조(사전협의대상 및 개발사업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을 말한다.</p> <p>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p>	<p>3. 그 밖에 문화재의 전시 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안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62조(국가 귀속 문화재의 인수·인계) 보관·관리관청은 해당 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된 날부터 1년 안에 해당 문화재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하고, 인수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94호 서식에 따른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와 그 보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건설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63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64조(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p> <p>제65조(「유실물법」의 준용) 매장문화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유실물법」 제13조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83조(표창)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副賞)을 수여할 수 있다.</p> <p>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p>	<p>제5장 보칙</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경우에 그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p> <p>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p> <p>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자</p> <p>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에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p> <p>5.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p> <p>6. 문화재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p> <p>제84조(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을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6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p>	<p>제49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639 1570 986 1771"> <thead> <tr> <th>등급</th> <th>포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td> <td>2,000만원</td> </tr> <tr> <td>2등급</td> <td>1,500만원</td> </tr> <tr> <td>3등급</td> <td>1,000만원</td> </tr> <tr> <td>4등급</td> <td>500만원</td> </tr> <tr> <td>5등급</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급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50조(포상금의 배분) ① 포상금은 제49조에 따라 사건별로</p>	등급	포상금액	1등급	2,000만원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원	5등급	200만원	<p>제72조(포상금 지급 등급의 기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p> <p>제73조(포상금의 청구)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사범 제보 또는 체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지 제103호 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등급	포상금액													
1등급	2,000만원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원													
5등급	200만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8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결정된 포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제보자에게, 100분의 50의 금액을 범인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각각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자가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를 수 있다.</p> <p>제51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8.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허가</p> <p>9.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p> <p>10. 법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p>	<p>1. 기소유예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p> <p>2.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최초 발굴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별지 제104호 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 포상금 청구서에 공적사실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90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p> <p>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p>	<p>른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p> <p>11.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보존대책의 수립 및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조치명령</p> <p>1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제60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른 통지</p> <p>13. 법 제10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p> <p>제52조(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p>	<p>제79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① 행정기관이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2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p> <p>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p> <p>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 중 제30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 환경, 도시계획, 대기오염, 화학물질, 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p>③ 행정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별지 제107호 서식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 의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④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내면 그 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 와 문화재청장에게</p>	<p>제53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p> <p>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하천</p>	<p>행위에 해당되면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고시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토절차를 생략한다.</p> <p>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하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육상지표조사기관과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p> <p>②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8호 서식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인력, 시설 및 기자재 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그 기관을 제2항에 따른 고시 대상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에 포함된 조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는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p> <p>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p> <p>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p> <p>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p>	<p>적합하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 안에서 기한을 정하여 지정하고, 해당 기관명과 주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준과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제81조(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사업) 영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p> <p>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p> <p>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p> <p>나. 문화유적분포지도</p> <p>다. 문화유적원부</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⑧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p> <p>⑨ 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까지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2. 절토(切土) 또는 굴착(掘鑿)으로 인하여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5.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p>제54조(지표조사보고서 등) 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표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 대상지역의 역사, 고고(古考),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내용 	<p>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6. 법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93조(개발 사업에서의 문화재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장 국가지정문화재</p> <p>제34조(허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p>	<p>2. 해당 지표조사를 실시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자 의견</p> <p>②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5조(문화유적분포지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3조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수록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의 위치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의 것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의 위치 <p>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장 국가지정문화재</p> <p>제23조(현상변경 등의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제30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p>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②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p>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p> <p>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p> <p>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p>

문 화 재 보 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p>제104조(도굴 등의 죄) ① 지정 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치·증설하는 행위</p> <p>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p> <p>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p> <p>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p> <p>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③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같은 항에 따른 도굴, 현상 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p> <p>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p> <p>⑥ 제54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p> <p>제105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109조(미수범 등) ①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②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10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07조 또는 제1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04조제3항 및 제4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04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p> <p>제111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4.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p> <p>2. 제5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p> <p>제113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5.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p> <p>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p> <p>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6항·제8항, 제61조제6항, 제90조 또는 제91조제4항에 따른 명령, 지시 또는 조사에 불응하는 자</p> <p>제1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료를 부과한다.</p> <p>4. 제5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제1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① 제11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11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8346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0222호, 2007.8.17>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68호, 2007.8.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56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별표 · 별지서식

목 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7] 발굴허가 제한기간의 범위(시행령 제35조) 5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발굴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52

[별표 14] 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시행규칙 제72조) 55

[별표 15]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기준(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56

[별표 제87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60

[별표 제88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시행규칙 제55조) 61

(갑지)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기재요령)

(을지) 매장문화재 발굴지역 토지(임야)조서

[별표 제89호서식]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64

[별표 제90호서식] 발견신고 문화재 소유권 반환 신청서(시행규칙 제55조) 65

[별표 제91호서식]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 보관증(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66

(갑지)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 (을지) 출토유물대장

[별표 제92호서식]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서(시행규칙 제58조) 68

[별표 제93호서식] 국가귀속 매장문화재 대장(시행규칙 제59조 제5항) 69

[별표 제94호서식]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시행규칙 제62조) 70

[별표 제104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 포상금청구서(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71

[별표 제108호서식]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72

(갑지)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신청서 / (을지) 인력현황 / (병지) 시설현황

[별표 7]

발굴허가 제한 기간의 범위 (시행령 제35조 관련)

구 분	행위의 정도	발굴허가 제한기간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2년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의 명령이나 그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2년
법 제56조에 따른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1개의 발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2개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3개 이상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행위	1년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관련)

1. 대상 기관

가. 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법인 이외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 「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2. 인력 기준

등 급	임 무	확보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 고
		법인	법인 이외 기관		
가.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조사기관의 장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책임조사원과 겸임가능
나.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1명 이상	1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 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 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다. 조사원	○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 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 조사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 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라. 조사보조원	○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	3명 이상	1명 이상	○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 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마. 보조원	○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자	3명 이상	1명 이상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바. 보존처리 요원	○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법인 이외기관은 다른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3. 시설 기준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법인 이외 기관은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4. 기자재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발굴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법인이외기관은 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5. 기타

-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별표 14]

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 (제72조관련)

2. 발견매장문화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 급	지 급 등 급 의 기 준
1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발굴 지역이나 유구가 연결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3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4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5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문화재의 평가액은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최초 발굴(긴급탐사 및 1차 조사)시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기준 (제80조제1항 관련)

1. 육상지표조사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기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 「민법」 제3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나. 다음의 인력을 갖출 것

구 분	임 무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조 사 단 장	○ 육상지표조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
책 임 조사원	○ 육상지표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	1명 이상	○ 학예연구원 ○ 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조사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조사원	○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를 담당하는 자	2명 이상	○ 학예연구사 ○ 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 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비고

-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직원이어야 한다.
- (2) 육상지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연과학, 민속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자연과학 또는 민속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다.

다. 다음의 시설을 갖추는 것

구 분	규 모	비 고
수 장 시 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 존 처 리 시 설	33제곱미터 이상	위탁처리 가능
연 구 시 설	33제곱미터 이상	
정 리 시 설	33제곱미터 이상	

라. 다음의 기자재를 갖추는 것

- 항온·항습시설(유물수장고에 한한다)
- 카메라 등 사진촬영에 필요한 기자재
- 광파 등 실측 및 측량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마.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바. 육상지표조사기관이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인력기준

- 제2호의 수중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의 인력기준 중 책임기술자 1명 및 수중조사분야 조사원 2명 이상

(2) 기자재

- 수중조사기자재 : 수중환경조사관련 장비,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2조 이상) 등

2. 수중지표조사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기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 국가기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다음의 인력을 갖출 것

구분	등급	확보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조사단장	○ 수중지표조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또는 해양관련학과와 관련이 있는 학과(해양지질, 지구물리, 탐사공학을 말한다. 이하 “해양학과”라 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
책임조사원	○ 수중지표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	1명 이상	○ 학예연구원 ○ 문화재 또는 해양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문화재 또는 해양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문화재 또는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문화재 분야 또는 수중분야 조사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조사원	○ 문화재분야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문화재 분야의 조사를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 학예연구사 ○ 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 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수중분야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수중분야의 조사를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 해양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 해양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해양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문화재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수중문화재분야 7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 비고

-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직원이어야 한다.
- (2)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연과학, 민속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과학 또는 민속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다

다.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구 분	규 모	비 고
수 장 시 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 존 처 리 시 설	33제곱미터 이상	위탁처리 가능
연 구 시 설	33제곱미터 이상	
정 리 시 설	33제곱미터 이상	

라. 다음의 기자재를 갖출 것

- 항온·항습시설(유물수장고에 한한다)
- 카메라 등 사진촬영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 도난 및 방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수중조사기자재 : 수중환경조사관련 장비,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 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2조 이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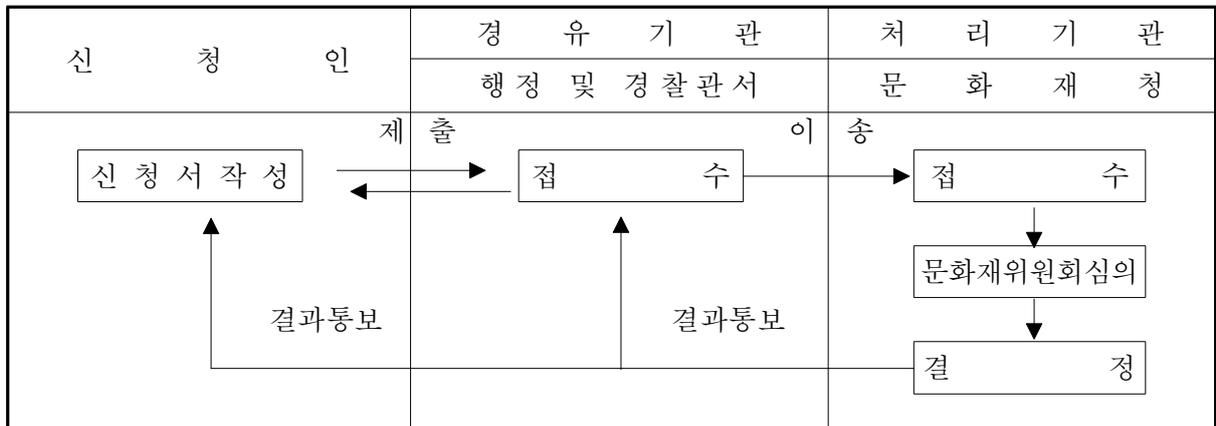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서				처리기간
				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매장문화재종별		⑤ 명 칭		⑥ 수 량
⑦ 재 료		⑧ 구조형태		⑨ 크 기
⑩ 현 상				
⑪ 발 견 일 시				
⑫ 발 견 장 소				
⑬ 유래 또는 전설				
⑭ 기 타 사 항	발견경위 :			
「문화재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5001-24B
81.7.2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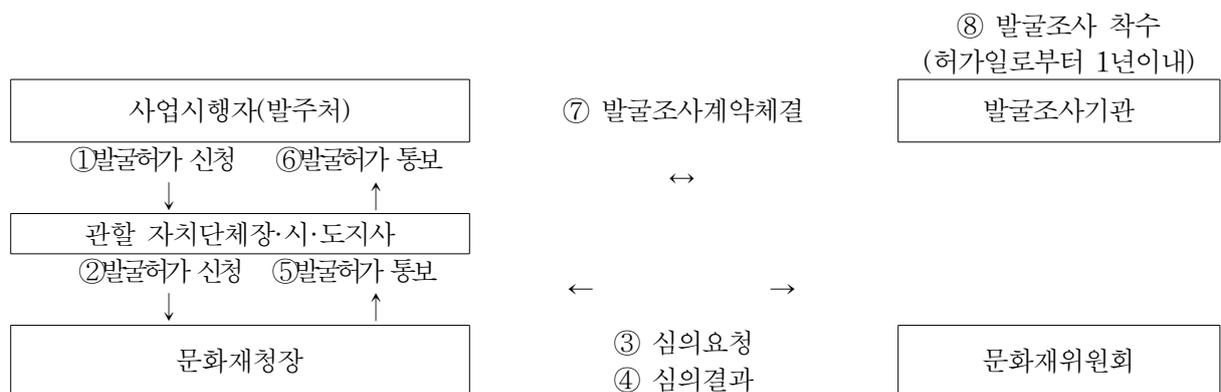
(뒷 면)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기재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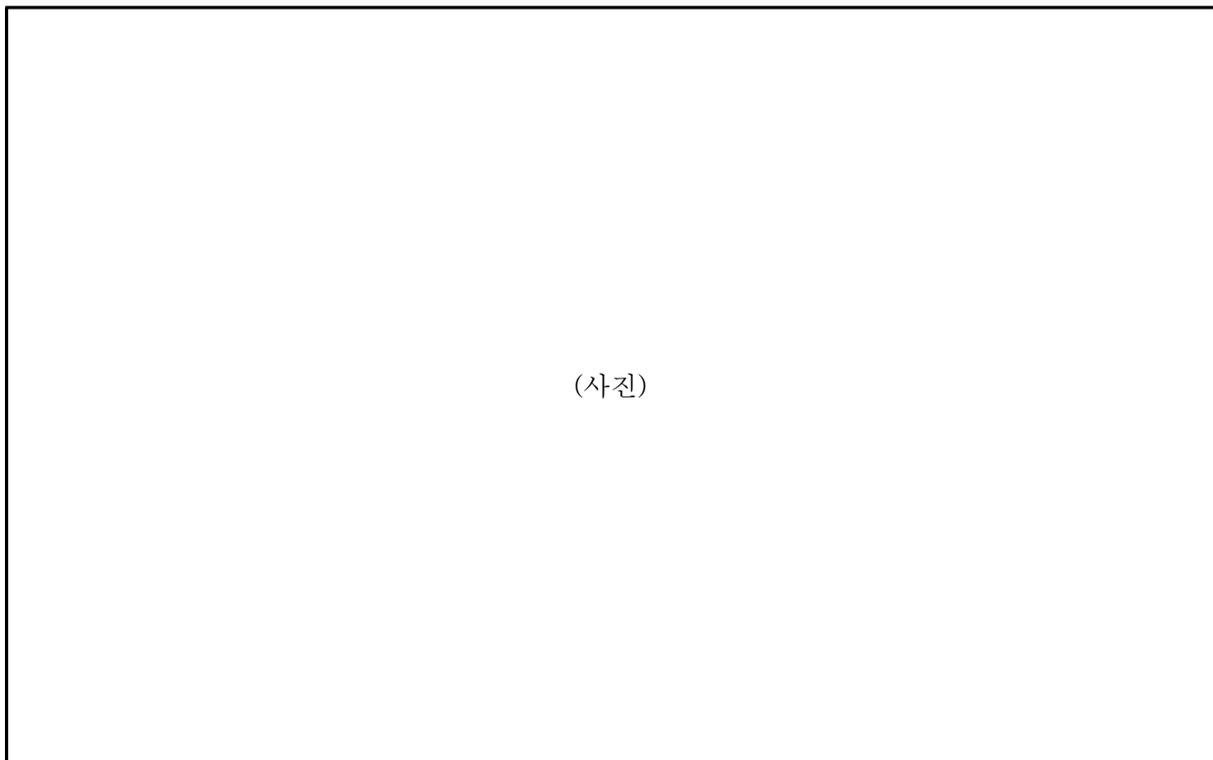
- ① 신청인
 - 실제 발굴조사 허가 신청자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조사 허가 신청자를 기재하되,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자 연락처를 함께 기재합니다.
- ② 유적명 : 유적명을 기재합니다.
 - (예)00-00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0000유적
 - (예)00시 000학교 건립예정부지내 유적
 - 조사면적 : 실제 조사면적을 기재합니다.
 - 소재지 : 조사대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 (예) 00시 0구 00동 000번지 외 00필지
- ③ 신청사유 : 해당사업명/사업시행기관을 기재합니다.
 - (예) 00-00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000000청
- ④ 사업대상면적 : 해당사업 전체의 면적을 말하며, 조사면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⑤ 기관명 :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대표자 : 조사기관의 총 책임자를 말합니다(대학 소속 박물관 또는 연구소의 경우 대학의 총장, 지방 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소속 조사기관의 경우 연구원장, 그 밖의 독립된 기관인 경우는 기관장을 말합니다.).
 - 주소,전화번호 : 조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합니다.
 - 단장 : 조사단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자를 말합니다.
 - 책임조사원 : 발굴조사 현장을 책임지고 조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⑥ 발굴조사기간은 현장조사일수를 기재하며, 현장조사일 외에 필요한 기간(계약기간)은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합니다.
- ⑦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기준(문화재청 예규)에 의하여 작성한 발굴비를 기재합니다.
 - 발굴비용은 유적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매년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⑧ 발굴비용 부담자
 - 발굴비용 부담자를 기재합니다.
 - (예)0000공사, 발굴허가 신청자 000 등
- 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발굴비 지원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V” 표시를 합니다.
- ⑩ 「문화재보호법」 제62조, 제91조에 따른 지표조사 사전협의 해당사업일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⑪ 구비서류 중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임야)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출토유물 대장

유물번호		유물명		수 량	(점)
분 류	재 질		시 대		
크 기 (cm)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출 토	출토지(유구)				
	출토연월일				
구조특징					
비 고	보존처리기간 및 내용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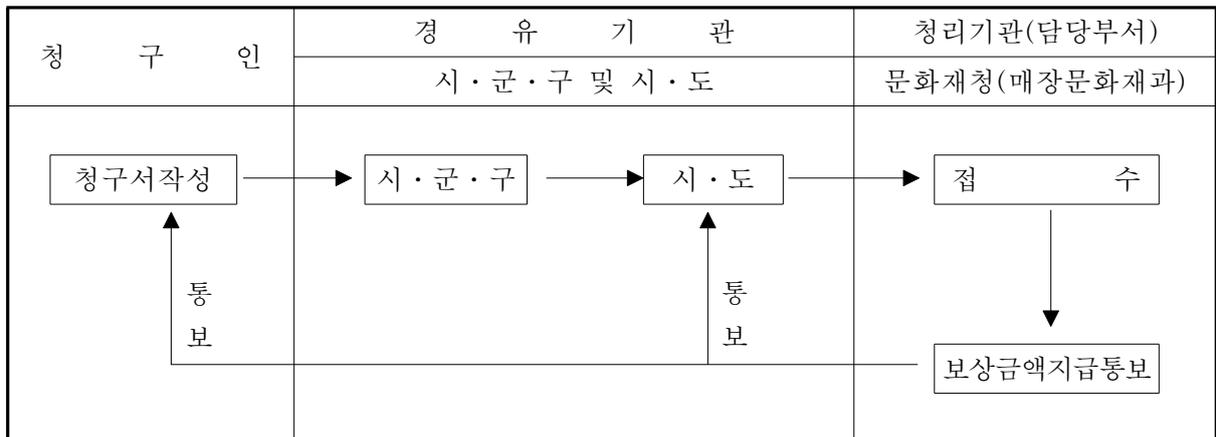


접수번호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25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원인	④ 발견 유물 명칭				⑤ 수량	
	⑥ 발견 장소	(소유자 :)				
원인	⑦ 발견자 또는 토지소유자	(청구인과의 관계 :)				
	⑧ 문화재위원회 평가 금액	원	⑨ 청구 금액	원		
	⑩ 보상금 수령 은행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인쇄용지 60g/m² (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국가 귀속 매장문화재 대장

건명 :

처리대장번호 :

①명 칭	②수 량	③규 격	④재 질	⑤연 대	⑥현 상
⑦발굴 또는 발견 연 월 일		⑧공 고 연 월 일		⑨국가귀속 연 월 일	
⑩발굴 또는 발견 장 소		⑪평가금액		⑫보관장소	
⑬발굴또는발견자 성 명 · 주 소				⑭기 타	
⑮발굴 또는 발견 경 위				⑯국가귀속 대장번호	

5001-25C
81.7.2 승인

268mm×190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뒷 면)

⑰ 관 리 내 용	
년 월 일	

⑱ 사 진 첩 부 란	
----------------	--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증	
1. 보관문화재 내역	
가. 명칭 및 수량	
나. 발굴장소	
다. 발굴기관	
라. 발굴기간	
마. 국가귀속 연월일	
바. 관련문서	
2. 보관사항	
가. 보관장소	
나. 위임·위탁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 귀속 발굴문화재를 정히 보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기 관 명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문 화 재 청 장 귀 하</p>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을지)

인 력 현 황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보유현황						
구 분	②직위	③성 명	④주민등록 번 호	⑤최종학력 (전 공)	⑥입사일	⑦조사경력
조사원 보유현황						
⑧구분	⑨직위	⑩성 명	⑪주민등록 번 호	⑫최종학력 (전 공)	⑬입사일	⑭조사경력

※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경력증명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지)

시 설 현 황			
시 설 현 황	총연면적	사무실	전시실
	m ² (평)	m ² (평)	m ² (평)
	연구·정리실	보존처리실	수장고
	m ² (평)	m ² (평)	m ² (평)
기자재 보유현황			
구 분	기자재명	수량	제원 또는 특기사항
항온항습 기 자 재			
촬 영 기 자 재			
보존처리 기 자 재			
도난방재 기 자 재			
수증조사 기 자 재			
기 타 기 자 재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본문 / 77

2. 별표 / 84

3. 서식 / 94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05-74호(2005.10.19.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07-29호(2007. 5. 4.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2조 및 제91조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에 관하여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 제43조의4에서 위임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2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지역 안에서의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2.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의4의 기준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상 또는 수중에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특정지역의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와 각종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요소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관련대책을 체계적으로 작성·수록한 것을 말한다.
4. “문화재 보존대책”이라 함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안을 말한다.
5. “저감”이라 함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사업계획”이라 함은 영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종 건설공사를 위해 당해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제3조(지표조사의 구분) 지표조사는 조사대상지역과 조사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육상지표조사와 수중지표조사로 구분한다.

1. 육상 지표조사 : 육상의 지표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2. 수중 지표조사 : 해양·댐·호수·하천 등의 수중저(수중의 지표와 그 하부 및 해양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연장된 해양수중의 지표와 그 하부) 유물이나 유구상태를 탐색 및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제2장 문화재 지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 ①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는 영 제43조의3 및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 91조의 시행일(1999.7.1) 이전부터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표조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1. 최종 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되었으나 1999.7.1 당시 착공전인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2. 1999.7.1 이전에 사업에 착수하여 공사 중인 장기 계속사업, 연차 또는 분할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사업계획 승인전인 사업 중 잔여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3.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성된 부지(택지, 공장용지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면적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1(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의 범위)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6호에 의한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요령) ①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적도, 사업승인·인가서 사본 등)
2. 문화재지표조사 기관 의견서 또는 토층조사 결과서

② 1항의 서류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서류를 지체없이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당해 사업부지내의 유적 존재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유적의 존재가 확실할 경우에는 발굴조사 허가 신청하도록 조치
2. 1호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유적의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 공사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입회 또는 토층조사 등 사전장치 마련 후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 판단

제5조(지표조사의 시기) ① 법 제62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는 사업계획 수립

을 위한 입지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의 및 제9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권자는 인·허가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의 실시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절차 등을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표조사의 비용 등) ① 법 제62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예산 중 일정금액을 지표조사비용으로 확보하여 지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 비용의 산출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기준’에 의한다. 다만,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사업의 규모, 종류, 입지,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지표조사기관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계약은 사실에 입각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수중지표조사 중 정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기관이 작성한 정밀조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육상지표조사 중 지질, 동굴 등에 관한 자연과학적 조사는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중 지표조사는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조사 자료,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자료로 조사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지표조사 실시기간) ① 조사기관은 조사대상면적,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기간을 산정하되, 30일 이내에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지역의 면적, 특수여건, 조사방법 등 위의 조사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표조사기간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일련의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제3장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등) ① 조사기관은 보고서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가급적 전문용어 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보고서는 인쇄단행본과 전산매체(PDF화일) 형태로 동시에 작성, 발간하여야 한다.
- ④ 보고서의 기본형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보고서의 수록내용 및 구성 등) 보고서에는 “별표 3”이 정한 조사항목과 다음 각호의 지역적·공간적 범위에 대한 조사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표(수중)의 현상변경 여부와 사업예정지역과의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공사 중 또는 공사완료 후 당해 사업목적물의 운용으로 인하여 구조적·경관적·환경적 훼손우려가 있는 영향권내의 문화유적(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 가설물 설치지역 포함)
2. 사업예정지역에 포함되는 유적과 연속되는 일련의 유적 전체
3. 사업 예정지 경계로부터 50m 범위(다만, 농업용수 시설, 하수관로 등 관내 수압이 높지 않은 관로 또는 BOX부설의 경우 터파기 어깨로부터 20m 범위)
4.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토사유출과 퇴적, 공사 중이거나 공사 후 유속과 유향변화 등으로 문화재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밀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정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제11조(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등) ① 당해 지표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장(조사단장과 책임조사원 포함)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호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업예정부지 중 시설물 설치지역, 지표의 형질변경 지역 등 일부 특정지역만 조사함으로써 사업예정부지 또는 주변의 중요문화재를 조사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2. 중요 유적, 유물산포지 등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조사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3. 조사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표본조사 또는 부분조사만을 실시하는 행위
 4. 정밀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행위
 5. 기타 불성실한 조사 등으로 문화재 보호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 ② 사업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첨가, 삭제 등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12조(보고서의 공개) 문화재청장은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문화재 지표조사의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지표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조사기관은 단독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1. 당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또는 출연한 기관인 경우
 2. 당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대학의 박물관 또는 부설연구기관인 경우
 4.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등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인 경우
- ② 제1항에 의하여 지표조사에 착수한 당해 조사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착수 신고서를 문화재청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공 등) ① 제13조에 의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지표조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자료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평·단면도(축척 1/5,000~1/10,000 지형도상에 그린 계획도면)
2. 사업계획서
3. 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지표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지표조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서 등의 제출 및 협의시기) ①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와 사업검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쇄단행본 및 전산매체(PDF 파일)로 작성된 보고서 각 3부(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2. 사업계획서 및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지형도상에 그린 계획 평면도 각 3부(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3. 문화유적분포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변형 관계를 알 수 있는 도면 각 3부(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②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련공문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현장 조사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고서 제출 당시의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의 보완조사 결과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서의 보완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보완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 ① 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사업예정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토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1항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통보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통한 당해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호
2. 원형 또는 현상보존
3. 이전복원
4. 발굴조사 또는 표본지역 선정 발굴조사
5. 유적의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토층 또는 분포조사
6. 공사시 문화재 전문기관 입회 확인
7. 공사 중 유구·유물 등 문화재 발견시 신고
8. 기타 당해 지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 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17조 제3항에 의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17조 제3항에 의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표본지역 선정 발굴조사는 조사대상지의 2% 내외의 범위에서 조사한다
2. 유적의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토층 또는 분포조사는 조사대상지의 1%내외의 범위에서 별도로 허가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3. 공사시 문화재 전문기관 입회 확인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인부 등을 사업시행자가 투입하고, 조사기관은 유구, 유물 출토여부를 확인한다

제19조(문화재 보존대책 등 재협의)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이 수립·통보한 문화재 보존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 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보존관련 조치사항 완료 시

“별지 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요구한 문화재 보존관련 조치사항 중 발굴조사의 경우는 법 제55조 제6항 및 제56조에 의한 발굴조사완료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로부터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를 받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 조치 이행완료 여부 확인 후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서의 활용 및 사후관리) 법 제62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지표조사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반드시 반영 또는 추록하여 향후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경우 매장문화재의 사전보호와 사업 시행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장 문화재 지표조사 발견 문화재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제22조(국가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및 절차 등)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의 국가귀속 범위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59조, 제61조, 시행령 제32조의3·제43조6의2,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8조의2, 제39조 내지 제40조의2 및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05.10.1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훈령·예규 등의 폐지) ‘매장문화재지표조사전문기관지정업무처리규정’ 과 ‘문화재지표조사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5.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사업면적의 정의 (제4조 관련)

구분	적용범위	비고
가. 일반사항	1) 지표(수중)의 원형변경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지 전체면적 2) 사업부지내에 형질변경된 지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의 처리요령은 아래와 같다. - 형질변경된 지역은 기형질변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되, 입증방법은 제4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잔여면적이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잔여면적이 시행령 제43조3에 규정된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의한 규정을 적용한다. 3) 연차시행, 분할시행, 단계별 시행 등 사업시행 방법에 관계없이 연속된 일련의 동일 사업일 경우 전체사업 면적 4)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표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은 사업면적에 포함	
나. 지하굴착이 추가 되는 사업	1) 수로터널, 채광, 준설, 골재채취 등 지하굴착이 사업의 주가 될 경우 평면상에 표시된 사업대상의 면적(사업 인·허가시 첨부된 사업계획 평면상의 전체면적) 2) 하(농)수관로 매설, 소규모영농기반개선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 등은 사업계획의 전체 면적을 사업면적으로 하되, 실제 형질되는 지역에 대해 지표조사를 실시	
다.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 저수지, 댐 등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수몰면적은 계획 홍수위의 만수면적으로 하여 사업면적에 포함하고, 신설 또는 개수되는 수로 등 수리구조물도 사업면적에 포함	
마. 계획변경 등에 따른 부지의 증감을 수반하는 사업	○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지표조사를 실시 - 다만, 변경된 사업예정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바.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	○ 전기설비와 부대시설이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해당 설비의 정상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공간의 지상면적도 사업면적에 포함	

【별표 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7조 관련)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가. 육 상 지표조사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1)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문화재관리대장, 기초조사자료 등의 확인 및 활용 (2)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2) 현장조사	○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1)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유적의 입지가능성, 지형변경 유무, 원지형 복원 여부 등 (2)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3) 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범위(지도에 기입) 및 특징에 관한 사항 (4)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편년)에 관한 사항 (5) 조사지역의 좌표값(경위도-GPS 활용) (6)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7) 자연단애면 등에서 확인 가능한 토층(유구층, 토양쇄기층, 토탄층 유무 등)에 관한 사항 (8) 수습유물의 종류(토기, 자기, 와전, 금속, 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9)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9) 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10)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문화재에 관한 사항 등
	3) 탐문 및 설문조사	○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내용
나. 수 중 지표조사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문화재 분포도와 비교하여 유적(물)의 부존 가능성 예측 ○ 각종 문헌, 전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 구역과 주변지역의 수장 문화재의 분포 여부를 확인 ○ 수중문화재 발견신고지역 여부 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2) 현장조사	① 위치측정 및 조사선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전 계획된 조사구역내 항적과 조사정점 수면위치를 고정밀의 DGPS로 확인함. ○ 조사선은 계획된 조사측선을 컴퓨터 모니터 상에 투영하여 이를 따라 운행함과 동시에 실제 항적과 정점의 위치좌표를 초 단위로 수신하여 전용 컴퓨터에 입력함. ○ 조사선은 조사장비에 대한 소음효과를 최소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시속 2~3노트(4~5km/시)로 운행함.
		1 단계 ② 수중지형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구역내 계획된 항적을 따라 위치 측정과 동시에 연속수심 측량으로 수중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형의 형성기작을 파악함. ○ 음파탐사장비의 수중 음속보정을 위한 Bar Check 또는 음속측정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 보정함. ○ 최종 지형(수심)도는 조사구역에 최대 근접한 지점의 기준항 조석자료를 참조하여 일반 해도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함. 다만, 사업시행자 제공의 수심도가 조사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중지형조사는 이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수중저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kHz 이상을 기본주파수로 하는 측면주사음향영상 탐사기(Side-Scan Sonar)를 사용함. ○ 측선간격은 25m~50m 사이를 유지하며 수심에 따라 범위를 조절할 수 있음.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는 수중저면으로 부터 최적 높이를 유지하고 조사선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미(또는 선수)에서 일정간격을 두고 예인 케이블로 예인하여 수치 및 화상 자료를 저장매체에 입력·저장하여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조사수역의 전 수중저면을 주사할 수 있도록 수심에 따라 예인수심과 주사 범위를 조절하고 항적을 교차하여 중첩된 수중저면 음향영상도면을 획득하도록 함. ○ 현장에서 영상자료를 분석한 후 이상 물체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수치자료를 재처리하여 정밀분석 함.
		④ 지층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층조사는 주 주파수대가 3.5kHz 이상인 천부용 고해상의 탄성과 지층탐사기 (Sub-Bottom Profiler)를 사용함. ○ 조사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수중유물의 매몰가능성이 높고 조사수역의 퇴적율이 빠른 경우에는 매몰가능 유적의 특성에 따라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 지층조사 시에는 수치자료와 화상자료를 동시에 획득하여 화상자료는 현장 조사 시에, 수치자료는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지층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설계를 위해 최근 획득한 자료가 이용 가능할 경우 이를 활용하고 지표조사 목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⑤ 수중지자기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기 조사(Sub-Bottom Magnetic Profiling)는 그 간격을 5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 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금속성 유물의 매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기 조사는 수치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사전조사를 통해 철을 함유하는 금속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⑥ 퇴적물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매몰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점을 정하여 선상에서 채니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 퇴적물 일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적물 성분의 조성비(자갈:모래:실트:점토) - 조성비에 따른 퇴적물 상, 평균입도 및 입도특성 등
	<p style="text-align: center;">2 단 계 조 사</p>	<p style="text-align: center;">잠수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사(측심, 지층탐사, 수중저면음향영상) 자료를 대조 분석하여 유물과 유사한 물체 또는 이상물체가 존재할 경우, 잠수조사자를 투입하여 유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잠수조사자는 안전과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조사를 수행함(안전을 위해 대기 1개소를 편성함) ○ 잠수조사 시에는 유사 또는 이상물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TV가 부착된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자료를 획득하여 수중유물의 부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과 부존현황을 기술함. ○ 잠수조사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이상의 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함. ○ 잠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V가 장착된 예인용 카메라를 사용하여 필히 사진자료를 획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AUV(Autonomous Under Vehicle),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간접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3) 정밀조사	<p>○ 정밀수중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p> <p>① 수중저면 음향영상조사 및 퇴적지층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유사(이상)물체가 분포하는 수역 내에서 조사측선 간격을 10m로 설정하여 자료의 중첩율 (100%이상)을 높여 문화재와 유사(이상)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영상정보를 획득함. <p>② 수리물리적 환경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p>③ 퇴적물 특성조사</p> <p><표층 퇴적물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분포지역의 표층의 퇴적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점수를 정하여 채니기를 이용하여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퇴적물의 특성(입도, 구성성분)을 분석함. <p><주상(Core) 퇴적물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역의 퇴적물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하면 문화재 부근 부근의 정점을 선택하여 선상에서 Corer를 이용하여 주상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 주상퇴적물 시료는 퇴적물의 일반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적물 특성(표층퇴적물과 동일) · 퇴적물의 전단응력(剪斷應力, Shear Strength) · 함수율과 전밀도 · 퇴적물 : 방사성동위원소 ^{210}Pb와 C^{14}, 핵실험시기 지시자 ^{137}Cs중 퇴적물 특성과 문화재의 추정연대에 따라 선택하여 분석함. 퇴적물조사는 수중유물의 매몰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사함.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항 목	관련사항	비 고
		퇴적물 특성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퇴적물의 정량적인 함량분석	유물분포지역의 퇴적물 유형 분석 및 입도별 함량비 산출
		퇴적물의 전단응력	퇴적층의 굳기에 대한 정보	매장유물의 보존가능성 평가 및 추정 (특히 고선박의 보존 가능성)
		함수율, 전밀도, 공극율	목선의 부존가능성에 대한 기본정보	매몰되어 있는 선체의 부식 정도 및 보존 가능성 추정 (발굴 및 인양에 대한 기본 자료제시)
		퇴적율	유물 매몰깊이 추정	유물매몰 깊이 계산 → 주변해역 매장유물 부존 가능성 제시

【별표 3】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 (제9조 관련)

작성항목	세부 포함내용 및 작성방법
가. 조사개요	1) 조사명 - 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2) 조사경위 -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 3)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면적과 지역적·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사업계획 평면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사 대상 면적의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4) 조사기간 - 조사에 걸린 총 기간을 명시하되, 문헌조사 등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기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5) 조사단 구성 - 등급별·분야별 조사 참여자를 실명으로 명시 6) 조사의뢰기관 -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자를 기재하되, 계약자가 원발주처가 아닌 경우 원발주처를 병기함
나.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1) 사업 대상지역(수역) 및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 각각 구분하여 서술 2) 지도의 활용 - 수치 지형도, 정밀 토양도, 산림이용기본도, 녹지자연도, 식생도, 수치고도 자료 등 용도에 따라 사용 - 최근 대규모 현상변경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지도 등을 통해 현지형과 비교 - 주변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300m, 500m, 1km 반경호 표시
다. 조사내용	1) 공통사항 (1) 문헌조사 내용 (2) 사업구역(수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3)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자연문화재, 고유지명, 고건축, 성곽 등 각 분야별 조사내용 (4)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 - 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상세히

	<p>서술</p> <p>(5)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의 사진(칼라 3x5 크기 기준)</p> <p>(6) 조사범위(지역) 및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지형도 또는 해도(가능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에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유물산포지 등 문화재 분포범위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p> <p>(7) 확인된 유구나 유적을 도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대축적지도에 표현(방향과 축적을 반드시 표시)하고,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p> <p>2) 수중 지표조사</p> <p>(1) 조사장비의 기종 및 제원</p> <p>(2) 수중저면음향영상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영상기록</p> <p>(3) 지층(천부탄성과)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기록</p> <p>(4) 이상체 확인 칼라사진 및 종류, DGPS 위치자료</p> <p>(5) 조사단계별 진행과정 사진, 유구, 유물 등의 칼라사진</p> <p>(6) 유적과 유물의 노출상태, 규모, 인양·발굴 가능성 여부</p> <p>(7) 퇴적물 분석자료</p> <p>(8) 수중저면음향영상, 지층탐사 등 원시자료 전체</p> <p>(9) 조사수역의 범위와 조사항적, 이상체 분포 위치표시, 잠수조사 위치, 유물산포지 등을 도면에 표시</p> <p>3) 기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사내용</p> <p>(1) 댐 등 넓은 지역의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 공사, 간척과 같은 연안 및 개펄지역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분야별 관계전문가에 의한 조사의견과 대책(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공람을 필한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p> <p>(2) 석회암층, 퇴적암층, 자연동굴, 공룡화석, 해안사구, 해안단구, 사주와 같은 지질·광물·화석, 동·식물 등의 천연기념물과 명승지가 분포하는 주변지역에서는 자연과학적 조사</p> <p>(3)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조사토록 한 사항</p>
<p>라.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p>	<p>1) 사업대상 지역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고,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을 기술하고, 아래 표로 정리</p> <p>-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여 제시</p>

조사기관	유적번호	유적이름	행정구역(주소)	면적(m ²)	유적성격	조사기관의견	비고
							*이격거리
<p>*사업부지내 문화재, 주변 500m이내 지정문화재, 기타 사업의 영향권내 문화재는 반드시 포함</p> <p>2)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조사 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면적 산정 - 특히, 사업부지내에서 유구,유물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발굴조사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질환경,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련문헌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록 <p>3)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초록으로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p>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작성서식

I. 조사개요

- 조사명 : ○○○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
- 조사지역 및 범위
 - ○○도 ○○군 ○○면 ○○리 ○○번지 외 ○○필지
 - ○○도 ○○군 ○○면 ○○리 ○○번지 ~ ○○도 ○○군 ○○면 ○○리 ○○번지 / ○○km 구간
- 조사면적 : m²(평)
- 조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
 - 사전조사 ○○일, 현장조사 ○○일, 보고서 작성 ○○일
- 조사의뢰기관 :
 - * 원 발주처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와 원발주처를 동시에 기재함
-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 (○○○연구원 ○○실장)
 - 조사원 : ○○○ (○○○연구원 ○○조사팀장)
 - ※ 고고, 역사, 민속, 지명, 지질 등 조사 분야별 참여자가 다를 경우, 이를 구분하여 명시

II.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2. 고고·역사적 배경

III. 조사내용

1.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2. 고고·역사분야
3. 사회·민속, 지명유래 분야
4. 지질, 화석, 동굴 등 자연문화재 분야(*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
5. 기 타

IV.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 별표3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 참조

V. 참고자료(부록)

1. 조사지역,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등 조사수행 관련 각종 현황사진
2.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				
	사업지역	(도,시)		(시,군,구)		번지 외					
	면적	전체사업면적	m ²		지표조사면적	m ²					
	사업시행자	원발주기관			지표조사 의뢰기관	기관명 : 전화번호 :					
지표 조사	조사기관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조사기간	~ (현장조사일수 일)									
	조사비용 *계약금액 기준	고고·역사 분야	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전체 조사비용 : 원										
조사 결과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지정문화재	예) 000삼층석탑 (보물 제 호, 300m이격)								
		비지정문화재	예) 000고분군 (약 300m 이격)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지상문화재									
		매장문화재 건축물 민속자료									
조사기관 종합 의견	*문화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변유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관의 종합 의견을 기재 - 원형보존, 일부 보존 또는 설계변경, 이전, 발굴조사 (시굴,표본시굴,분포확인조사), 입회확인조사, 사업시행으로 구분 - 발굴조사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면적을 제시하고, 범위를 도면에 명시할 것.										
기타 특이사항	*지도위원회 개최, 사업추진관련 민원사항 등 기재										

년 월 일(보고서 제출일)

지표조사기관명 : (인)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협의관련 공문서식

○ ○ ○ ○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제출(①)

.....문화재보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업개요

- (1) 사업명 :
- (2) 사업지역 :
- (3) 사업면적 : m²(평)
- (4) 사업내용 :
- (5) 시행자 :

2. 문화재 지표조사

- (1) 조사기관 : (책임조사원 ○○○)
- (2) 조사기간 : (일간)
- (3) 조사의견 :

3. 검토의견(②)

- 붙임 1.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인쇄단행본 및 전산화일) 각 1부.(③)
2.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끝.

○ ○ ○ ○ 시장(군수, 구청장)

수신자 문화재청장(발굴조사과장), ○○○○지사(문화예술과장)

<비 고>

- (①)란은 반드시 해당 시·군·구와 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예시) 춘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 (②)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지표조사보고서에 대한 내용 검토 후 관련의견
을 명시
- (③)란의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중 전산화일(PDF화일)은 공문에 직접 첨부하고, 인쇄단행본
(책자)은 별송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서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지역 :
- 사업면적 :
- 사업내용 :
- 시행자 :

완료일자 :

문화재 보존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그 이행내용 :

※ 조치관련 도면 및 사진 첨부

현지 확인 및 결과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재(필요한 경우 사진 등 첨부)

위와 같이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보존조치를 완료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1. 본문 / 103
- 2. 서식 / 129
- 3. 자료 / 157

목 차

I. 제정 목적 및 관련근거	105
II.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의 행정절차	
1. 발굴허가의 대상	106
2.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106
3.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절차	109
4.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112
III. 발굴비용	
1. 발굴비용의 부담주체	113
2. 발굴비용의 산정	113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114
IV.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1.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116
2.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및 연장	116
3. 미제출에 대한 조치	117
4. 보고서의 발간 및 제출 부수	117
5. 발굴조사정보의 공개	118
V. 발굴 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1. 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118
2. 발굴 문화재의 분실·훼손시 처리	123
3. 과거 미귀속 문화재의 처리	124
VI. 발굴조사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	
1. 허가받은자(사업시행자 등)	125
2. 지방자치단체	125
3. 발굴조사기관	126
VII. 기타 참고자료	
1. 소규모 발굴지원단 구성·운영	127
2. 문화재가 아닌 매장문화재의 발굴	127
3. 발굴조사기관 등록	128
VIII. 서식	129

I. 제정 목적 및 관련 근거

1. 목적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허가 및 조사수행, 보고서 발간,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발굴허가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발굴조사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

2.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이하 “법”)
 -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1조
-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
 - 제29조의2 내지 제32조의3, 제43조제6의2호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 제36조의2 내지 제37조의2, 제38조의2 내지 제40조의2
- 문화재청 예규 제39호 (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 2005.9.12.)
- 업무처리 관련 지침 및 지시
 - 시·발굴통합, 소규모발굴지원단 운영 (매장문화재과-3927, 2005.4.15.)
 - 문화재위원회(매장분과)운영 개선 계획 (발굴조사과-495, 2005.9.6.)
 - 발굴조사 현장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적극 개최 (발굴조사과-471, 2005.9.6.)
 - 복권기금 집행지침(매장문화재과-1384, 2005.2.4.) / 교부절차 변경(발굴조사과-2902, 2006.3.16.)
 - 지침 변경사항 (발굴조사과-7487, 2006.6.30.)
 - 발굴조사 관련 유의사항 (발굴조사과-14012, 2006.11.29.)
 - 지도위원회 개최 관련 유의사항 (발굴조사과-18013, 2007.02.28.)
 -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 관련 (발굴조사과-117, 2007.04.11.)

II.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의 행정 절차

1. 발굴허가의 대상

- 문화재보호법 제55조의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¹⁾되는 토지 및 해저로서 단서 조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설공사시행 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굴허가 신청 절차

1) 조사기관 선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사업시행자”)

- 법 제55조 제1항 단서규정 각 호의 목적으로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²⁾는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법 제55조제3항, 시행규칙 제37조, 별표9의2]을 충족한 발굴기관을 섭외하여 선정(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마당 > 일반자료 > 조사.심사.발굴 참조)

2) 조사계획서 작성 제출(조사기관→사업시행자)

- <서식1>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 사업부지내 유물산포지가 광범위하거나, 유적 존재가 불확실한 지역의 경우 : 1차적으로 확인조사(*기존 시굴) 실시
- 유적존재가 확실하여 발굴대상면적을 명확히 획정할 수 있는 경우 : 처음부터 정식 발굴조사 실시

3) 발굴허가 신청(사업시행자→해당 지자체)

-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 서식] 작성(사업시행자)
- 발굴조사 계획서(조사기관 작성),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확인) 등 구비서류

4) 구비서류 검토 및 제출(해당 지자체→문화재청)

-
- 1)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란 객관적인 근거(문헌 등)와 조사, 또는 그에 따른 주변정황에 의하여 유적의 소재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함.
 - 2) 당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을 말하며, 시행자로부터 용역을 받은 시공사 등이 발굴허가 신청을 대행할 경우에도 신청자는 시행자가 됨

○ 구비서류[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36조의2]

-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47호의2 서식]
- 발굴조사 계획서³⁾ <서식1>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담당공무원이 발굴예정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확인한 토지조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임야)대장을 첨부)
-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 해당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임야)조서로 갈음할 수 있음
 - 필요시 대상지의 토지수용(동의)을 부족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 대책 첨부
-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조사갱의 배치 등이 표시된 도면(지형도))
 - 조사대상지역 전경사진 포함

※ 소규모발굴관련 구비(증빙)서류

- 지자체 건축인허가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 건설공사 행위자와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일치하여야 함
 - 건축연면적, 대지면적이 지원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지자체에서 검토
-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에서 소규모 발굴조사를 지시한 근거(관련공문, 인허가부서 협의내용 등)
- 「건축법」 제9조에 의거 “허가대상” 이 아닌 “신고대상” 인 경우
 - 발굴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도서에 의거 지원 가능
 - 건축행위 완료 후, 「건축법」 제29조에 의거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한 현황” 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을 반드시 제출

○ 필요시 해당 지자체 장(시·군·구청장)의 발굴필요성, 유적보존 의견 등 의견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5) 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문화재청장은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3) 발굴조사단은 법 제44조제3항, 시행규칙 제 37조, 별표9의2 규정에 의거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성

발굴허가(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 동일 사업목적으로 인한 발굴은 단일 조사계획에 의하여 검토(동일 목적 사업지역의 분리 발굴 금지)
 - 발굴결과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확인유적의 중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분리 조치
 - 발굴기관과 사업시행자간의 이해관계 여부(구제발굴시)
 -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의 부설 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조사기관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 다른 조사기관과 연합하여 발굴 수행
 - 발굴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
 - 조사계획의 적정성
 -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부합여부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제9의2관련)
 - 조사기관 및 대표자, 단장, 책임조사원 등의 보고서 미발간 현황
 - 조사기관의 발굴허가 조건 및 본 지침 위반여부
 - 문화재위원의 직접 발굴조사 참여 여부(학술 발굴은 예외)
 - 소규모민원성 발굴(시굴 10,000㎡, 발굴 2,000㎡) 실적
 - 대학발굴 참여 범위
 - 1대학 1기관이 발굴조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운영이 본교와 분교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기관 허용
 - 다만, 수중 발굴 및 자연사 발굴은 조사기관의 특성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인정 가능
 - 공사립박물관(전시관 등), 특수기관은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발굴에 한정
 - 시굴조사 후 발굴로 전환되는 경우 동일 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인력, 조사계획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기관 변경 가능
-
- 발굴허가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요청 사항
 - 지표조사 결과, 중요 유구 및 유물확인지역에 대한 발굴
 - 사적지, 고도지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유적의 발굴
 - 구제발굴 중 시대·종류별 복합유적이 분포하거나, 유적보존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조사기간 200일 이상의 발굴(변경허가의 경우도 동일)

6) 발굴허가 통보(문화재청→해당 지자체→사업 시행자)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서식2>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에 허가 통보
- 허가서를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 문화재청장은 허가할 때 발굴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법 제55조 제5항]

3.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 절차

1) 발굴조사 착수

- 발굴허가서를 접수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서식 3>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및 문화재청에 동시 제출
(조사기관→해당 지자체, 문화재청)
 - 2개 기관 이상 연합발굴조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고
- 발굴허가 후 1년 이내에 착수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장의 재허가를 받아야 함.
- 시행령 제31조의2규정에 의한 소규모발굴 또는 실조사일수 20일 미만의 발굴조사는 완료 신고서(착수일 기재)로 갈음할 수 있음. 단, 변경허가(기간연장 등)의 경우 신청서에 당초 착수일 기재.
- 조사기관은 발굴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장, 책임조사원 등 조사단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해당 지자체 및 문화재청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

2) 지도위원회의 개최

- 발굴조사기관은 조사의 원활한 수행 및 조사방향,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발굴지역 및 유적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개최시기
 - 시굴⁴⁾ 완료단계에서 발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할 때
 - 발굴과정상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
 - 유구 및 유물의 학술적 검토 및 조사진행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때
 - 발굴완료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
 - 기타 조사구역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부지의 경우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고자 할 때
- 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유적의 존재 유무, 분포 범위 확인 조사

- 지도위원회는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해당 유적 전문가 중 유적의 성격, 보존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자로 구성
 -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문화재보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해당 유적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현직 교원
 -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이상의 연구직 공무원
 - 전·현직 국·공립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유적의 성격 및 발굴유적의 성격에 걸맞는 적정인사
- 지도위원회는 발굴상황(유적규모 및 성격)을 고려, 2~5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과다 구성 자제)
- 지도위원회 구성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발굴조사기관에 지도위원 1인 추천할 수 있음
- 지도위원 의견은 <서식4>로 작성하되, 검토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반드시 개별 의견서 작성
- 지도위원회가 특정 기관, 학맥, 동일 이해관계집단 관계자 등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 발굴조사기관 관계자간 지도위원회 구성 및 상호 참여 억제
- 유구 처리 등 현안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개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 논의
- 지도위원회의 검토사항
 - 발굴 유구 및 유물의 학술적 평가
 - 발굴·확인된 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의견
 - 유적·유구의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복토방법 등에 대한 의견
 - 발굴유물의 국가귀속 대상 및 미대상 분류에 대한 의견
- 다음의 경우 관계전문가 1인 검토 가능
 - 조사결과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거나 경미한 유구가 확인된 경우
 - 소규모 발굴(2,000㎡이하 발굴) 등
- 회의개최 및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최시 언론 및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한 대국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최일 3일전 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
 - 제출자료 : 회의개최 요약본<서식5>, 회의자료, 연락처, 관련사진, 현장약도 및 교통편 등
 - 조사기관은 회의종료 후 7일이내 지도위원 의견 등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문화재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보고
 - 제출방법 : 문서 또는 담당자 e-mail, FAX

- 지도위원회 개최시점에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학계 및 관련자 등이 함께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적극 개최, 매장문화재에 대한 대국민인식 제고

3) 발굴조사 변경허가

- 변경 신청 사유
 - 발굴허가시 유물산포지가 광범위하거나 유적의 부존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시굴에서 발굴로 전환)
 - 동일 발굴허가 면적내에서 유구 중첩, 유물다량 출토 등으로 인해 부득이 발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동일 사업구간내에서 조사지역의 추가로 인해 조사면적과 발굴기간이 동시에 늘어나는 경우 등
- 변경 신청 절차
 - 사업시행자는 시굴에서 발굴로 전환되는 유적 등의 경우 조사완료 시점(지도위원회 개최 직후, 조사 완료이전)에 변경허가 신청서<서식6>를 해당 지자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 제출서류
 - 변경허가 기간·면적·사유 등 기재
 - 발굴조사계획서(추가조사계획, 소요예산내역서 등 포함)
 -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사진, 조사갱의 배치 등이 표시된 도면(지형도))
 - 발굴결과가 포함된 조사기관의견서, 지도위원회 개최자료 의견서 등
 - 발굴 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장신청 시점을 적절히 조절
- 변경허가 통보
 - 문화재청장은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처리(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장(시군구 및 시도)에게 허가 통보
 - 허가서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4) 발굴조사 완료 보고

- 사업시행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굴완료신고서 등 아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를 통해 문화재청에 제출
 - 단, 첨부물의 신속한 송부를 위하여 발굴조사기관은 제출서류 중 약보고서, 출토유물 현황, 발굴기관 의견서 등 첨부서류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문화재청에 직접 송부할 수 있으나, 완료에 따른 행정조치의 근거는 아님.

- 제출서류
 -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서식7>
 - 약보고서
 - 발굴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 발굴된 유적 전체 현황, 주요 유적의 평·단면도, 유구 배치도 등 관련 도면 및 사진
 - 출토유물 현황(목록 총괄표, 세부목록, 사진) <서식8>
 -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여부가 포함된 유적보존에 대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 유적보존 의견서 보존대상 유적의 규모(면적, 수량, 소요비용 등 기재), 도면 제시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도위원회, 해당 지자체 의견서 첨부
 - 보존대상 유적에 대한 지자체의 향후 관리계획 포함
- 조사구역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부지 중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완료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함
 - 문서 제목은 ‘00유적 내 00구역 부분완료신고’ 또는 ‘부분공사시행 협조요청’ 등 사용
 - 요청사항(대상구역, 면적, 사유 등) 기재
 -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여부가 포함된 발굴조사기관 의견서(필요시 지도위원회 의견 첨부)
 - 사업시행자 의견서

4.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법 제55조제6항]
- 유적의 보존관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굴조사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 발굴완료 보고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발굴완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에 통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검토가 필요한 유적
 - 해당유적을 보존할만한 역사적·학술적 중요성이 관련전문가 등에 의해 인정된 유적
 - 국내 발굴사상 처음 확인되었거나 최고, 최대의 유적 또는 학술적인 중요성이 매우 높은 유물이 출토된 유적
 - 동일유구 군집의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유적
 - 발굴과정에서 유적성격 등 그 중요성이 밝혀져 더 이상 발굴을 진행할 사유가 없는

유적

- 조사기관(지도위원),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보존의견을 개진한 주요유적
- 조사기관(지도위원),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자 의견 등이 상충되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주요유적
-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의 동일내용 재심의 제한
 - 위원회 1차 상정되어 부결 혹은 보류된 안건은 별도 의견(대안) 제시 등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재심의
-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 보존조치사항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도면 및 사진 첨부)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조치결과를 보고
 - 유적보존, 이전복원, 전시관 건립
 - 기타 당해 지역의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사항
- 사업시행자로부터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보존조치 이행완료 여부 확인(필요한 경우 사진 첨부) 후 시도와 문화재청에 이를 제출

Ⅲ. 발굴비용

1. 발굴비용의 부담주체

-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법 제55조 제7항]
 - 문화재정책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에 있는 만큼 개발로 매장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보존 및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경우, 최소한의 기록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채택
- 단, 법 제55조 제7항 단서규정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한 발굴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범위내에서 발굴비 부담

2. 발굴비용의 산정

- 발굴비용은 구체적으로 유적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함
- 단, 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및 매년 공고되는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르도록 함
 -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및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문화

재청에서 매년(인건비의 경우에 한함) 관보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 2007년의 경우 문화재청 공고 제2007- 4호(2007.1.11) 참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1) 소규모 발굴비용의 지원

가. 지원 대상[시행령 제31조의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
-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 법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⁵⁾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 2,644제곱미터 이하)
-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나. 발굴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당해 회계연도 내 동일인에 대한 동일 목적의 발굴비 지원은 1회에 한함

① 준비	- 신청인(민원인)의 소규모주택 등 건설관련 발굴조사 대상여부를 지자체가 판단, 조사 필요시, 민원인에게 발굴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발굴조사기관 안내 - 민원인은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현황([자료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참고하여 지역
------	--

5)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이룸

	<p>별 주관기관에 발굴조사 의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발굴 주관기관은 우선적으로 조사 추진하되, 자체 추진 어려울 경우 지역내 다른 조사기관 선정 협조, 민원인에 통보 - 민원인은 발굴조사기관 선정 - 해당 발굴기관은 민원인에게 발굴계획서(발굴비 견적 포함) 제출 - 민원인은 발굴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지자체는 검토후 문화재청 송부
②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은 발굴허가사항을 지자체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인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 요청 - 발굴기관은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와 조사계약 체결(관련 서류 첨부) - 발굴기관은 발굴 착수 및 신고
③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기관은 민원인에 조사결과 완료신고 <p><조사결과 행정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완료신고 (민원인→지자체→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발굴결과 완료신고에 따른 조치통보 (문화재청→지자체→민원인) - 민원인은 문화재청의 조치내용 이행 <p><발굴조사비 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기관은 협회에 정산서 제출, 복권기금 청구 · 협회는 정산서에 대해 검토후(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 후) 발굴기관에 기금 교부, 문화재청에 정산보고(분기별)

2) 긴급 조사비용의 지원

- 지원대상 :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일반적 지원 기준
 - 수해, 사태, 도굴 및 해저유물 발견신고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유적의 긴급발굴조사
 - 새로이 확인된 중요 유적에 대하여 정비 또는 지정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유적의 범위 확인 및 성격규명 등 종합 학술조사
 - 발굴조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유적에 대한 최소한의 보존조치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기준의 적용
 - 지원 예산의 규모와 문화재의 원형보존 원칙을 고려하여 지원여부의 신중한 검토 및 제한적 적용

IV.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1.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 발굴경위 및 경과, 조사지역 주변의 역사적(고고학적) 환경, 발굴조사 내용(유구 및 유물의 설명 등), 조사성과 및 의의, 도면, 사진 등을 포함하여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토록 발간
- 아래의 경우에는 약보고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발굴로 전환된 시굴조사의 경우
(단, 조사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굴조사 기관은 시굴조사보고서 제출)
- 법 제55조에 의한 발굴조사 중 연차발굴의 경우 연도별 발굴조사 완료시 약보고서 제출로 대체하되, 2년 단위로 합본하여 중간 보고서를 발간
 - 필요한 경우 전체 조사가 완료된 후 종합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연차발굴 조사 후 약보고서 제출로 대체하고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은 2008.12.31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및 연장

- 책임조사원, 조사원 등 발굴 참여자는 해당유적의 조사보고서가 기한 내 발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⁶⁾로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법 제56조]
- 법 제55조에 의한 발굴조사 중 연차발굴의 경우 연도별 발굴조사 완료시 약보고서 제출로 대체하되, 2년 단위로 합본하여 중간 보고서⁷⁾를 발간
 - 필요한 경우 전체 조사가 완료된 후 종합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연차발굴 조사 후 약보고서 제출로 대체하고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은 2008.12.31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발굴조사기관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 승인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란 발굴조사 결과,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성격규

6) “발굴을 완료한 때”란 실질적으로 현장 발굴조사가 종료된 때를 이르는 것으로, 발굴기간이 2004.10. 1부터 2005. 9. 30일인 경우, 발굴완료한 때는 2005.9.30을 의미하므로 보고서 제출기한은 2007.9.29까지를 의미함

7) 2005-2012년간 진행되는 연차발굴의 경우, 2006년 발굴기간이 2006.10.30일 완료한 경우 2005-2006년 중간보고서 제출기한은 발굴완료일 기산후 2년이 경과한 2008. 10. 30일이며, 그후 중간보고서는 2년 단위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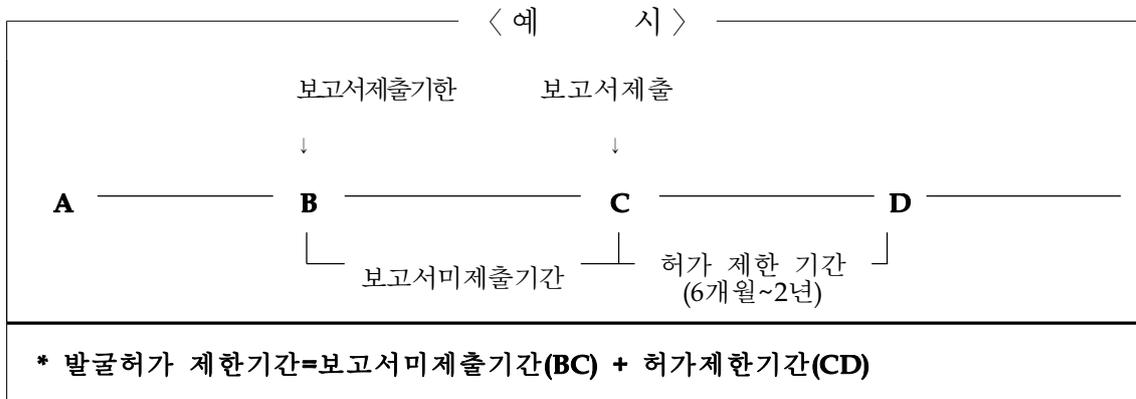
명에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와 보존처리 유물의 과다로 유물의 분류·정리·분석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임.

- 단순한 유물의 과다, 인력의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연장승인신청을 할 경우 제출기한 완료일 최소 1개월 이전에 신청

3. 미제출에 대한 조치

- 허가받은 자와 발굴조사기관이 다른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보고서의 발간 및 미제출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발굴을 직접 수행한 발굴조사기관에 있음.
 - 다만, 허가를 받은 자도 발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조속히 발간토록 하여 제출할 책임이 있음.
-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은 미제출일 이후부터 발굴허가 제한
 - 단,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소규모 민원성 발굴은 예외
- 동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6개월~2년간 추가로 허가 제한을 받게됨

[시행령 제31조 별표8]



4.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및 제출 부수

- 문화재청에 제출하는 보고서 부수는 인쇄단행본 10부, CD-rom 등 전산매체 2부로 함
 - 보고서 제출공문 내용<서식 9>
 - 보고서의 전산파일 형태 : PDF파일
- 보고서 발간부수는 필요한 적정 부수로 하되, 500부 발간을 기준으로 함

5. 발굴조사정보의 공개

- 문화재청은 아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임
 - 발굴조사 보고서 및 약보고서,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 발굴허가사항 (허가내용, 조사기관, 조사단 구성 등)
 - 발굴조사기관 현황, 보고서 미발간 기관 현황
- 발굴조사기관에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자료 작성 시 유의

V.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1. 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1) 발굴조사 완료 및 유물현황 제출 (발굴조사기관)

- 발굴완료시 20일 이내에 발굴매장문화재 공고를 위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출토유물현황<서식8>을 발굴조사 완료신고서에 기록 후 약보고서에 첨부
 - 이 때 유물목록 및 사진은 출토유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를 위한 유물목록 및 사진이므로,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의한 출토유물대장을 말하는 것은 아님.

2) 공고단계(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에서는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및 약보고서 접수 즉시 7일간 게시판, 인터넷 등에 유물의 출토사실을 공고
 - 공고문 표준문안<서식10>
 - 시도(시군구)에서는 해당 공고사실을 출토유물 공고 관리기록부에 작성·관리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 서식](국가귀속대장은 아님)
- 시도(시군구)에서는 7일간 공고 후 9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공고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 소유자(유무) 확인서<서식11>
 - 소유권 주장자가 없을 경우 대상유물, 공고기간, 공고방법, 소유권 주장자 없음을 명시하여 보고.
 - 공고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문화재청).
 - 소유권 주장자가 없을 경우 대상유물, 공고기간, 공고방법, 소유권 주장자 없음을

명시하여 보고

- 시도지사는 발굴문화재 공고업무를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필요시 시군구로 위임

3)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의 분류 및 신고 (조사기관)

- 조사단에서는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평가회의』 개최(필수절차)
 - 분류평가회의는 출토유물의 국가귀속을 위한 가치평가 절차이므로 출토유물 수량이 적거나 전체를 국가귀속하는 등의 사유로 생략 불가
- 분류평가회의 구성
 - 유물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되 다음과 같이 “동산문화재 감정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함

국가귀속대상문화재분류평가회의 평가위원 자격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 ②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③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④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또는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 ⑥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⑦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자

구 분	분류기준 및 제출사항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① 분류기준(시행규칙 제38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ii)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업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귀속으로 결정한 심의서 사본을 임시보관증, 유물 목록 및 대장과 함께 제출
학술자료	① 분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나 학술적으로 연구필요가 있는 자료 ii) 학술자료로 분류 후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귀속신고가 가능한 자료

	② 제출사항 - 활용기관, 활용방법 등을 심의한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 (원본은 조사단에서 보관)
매물자료	① 분류기준 i) 보고서 발간 등 학술목적에 활용 가능성이 없을 것 ii) 매물시 유물의 성격규명 및 가치평가에 지장이 없을 것 ② 제출사항 - 매물장소 및 위치, 매물방법 등을 심의한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원본은 조사단에서 보관) - 매물장소는 가능한 유물이 발굴된 당해 유적지로 함. (※ 당해 유적 매물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인근 적합지로 하되 향후 보존방법 및 사유서 첨부) - 매물시에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장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석과 함께 매장하고 시·군·구의 확인을 받을 것

○ 출토유물의 분류기준 및 제출사항

○ 국가귀속대상문화재의 신고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음 서류를 전산화일로 변환 후 CD-ROM 각 4부로 제작하여 시·군·구로 제출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신고시 제출서류

- ① 유물(임시) 보관증
- ② 유물 목록 및 대장
- ③ 국가귀속대상문화재분류평가회의 심의서 사본
(학술자료·매물자료 등 관련 사항 표기)
- ※ 전산화일 제출 형태
 - 유물 임시보관증, 대장, 목록 : excel 또는 한글 file
 - 사진 : JPG 형태의 file, 각 사진당 1MB 내외로 할 것

○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 출토유물 및 유구의 과다 또는 유물 및 유구의 가치규명 등으로 인하여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시행규칙 제38조의2)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주의 사항

※ 문화재청은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신고의 지연 방지를 위해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입니다

-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이 인정하는 경우 **동 발굴조사 보고서는 제출기한인 2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他발굴조사 보고서와 달리 기한연장 불가
-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은 전체를 국가귀속하며 보고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유물은 학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고 매물은 불가함
-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유물의 학술자료 활용을 위한 활용기관, 활용방법 등을 심의한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가귀속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국가귀속 신고일정을 명기한 사유서를 시·군·구청장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후 별도 승인을 득할 것
- 1차 6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하나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기간 초과 불가
- 기간 연장된 경우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 불가

○ 시·군·구에서는 제출받은 CD-ROM 4부 중 1부는 자체 보관하고 2부는 문화재청으로, 1부는 시·도로 제출함

4) 국가귀속 요건심사 후 귀속조치 요청(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요건이 완비된 경우 7일 이내 국가귀속을 요청함

구 분	구 비 서 류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① 소유권 유·무 확인서 ②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평가회의 심의서 ③ 임시보관증 ④ 유물 목록 및 대장
학술자료	① 소유권 유·무 확인서 ② 활용기관, 활용방법 등을 결정한 심의서 사본
매물자료	① 소유권 유·무 확인서 ② 매물장소 및 위치, 매물방법 등을 결정한 심의서 사본 ③ 매물 후 매물확인서

- 보고서에 수록하여 국가귀속하는 경우

보고서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사항

- ① 문화재청장이 보고서로 수록하여 신고토록 결정한 공문
- ② 보고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유물을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활용기관, 활용방법을 결정한 심의서 사본(※ 이 경우 매물은 불가함)

5) 국가귀속 및 보관·관리 조치(문화재청)

- 문화재청장은 발굴문화재를 국가귀속하고 보관·관리관청에 보관·관리 조치
- 발굴문화재의 임시보관
 - 발굴조사기관은 국가귀속된 발굴문화재를 보관·관리기관이 인수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
 - 발굴문화재의 보관기관은 국가귀속시까지 해당문화재가 도난·망실되지 않도록 필요 시 도난경비시스템의 설치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금속철제 또는 목재 등 쉽게 형상이 변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보존처리 및 보관에 유의
 - 문화재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수장시설 및 보존처리기자재의 단계적인 확충
 -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학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도 보관관리에 철저
- 발굴문화재의 대여금지
 - 임시보관된 문화재는 보존처리, 보고서 작성, 국가귀속 절차 이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타기관에 대여 금지
 - 다만, 발굴문화재에 대한 신고 및 공고가 이행완료 되었고, 그 결과 소유권주장자가 없는 유물에 한하여 임시보관기관동의서, 미귀속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6) 보관조치(보관·관리관청)

- 보관·관리관청은 국가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고, 아래 각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9조]
 -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 국립민속박물관
 - 국·공·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 지방자치단체 관할 박물관 및 전시관
- 위탁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문화재청 예규 제39호]

구 분	항 목		고 려 사 항
문화재 보존시설 의 적부성	시 설	전시시설	○ 전시실 면적, 규모, 전시유물 수량 등
		유물수장고	○ 수장전용공간 여부 ○ 금속·지류 등 별도 수장 여부
		보존처리	○ 보존처리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여부
	인 력	전시인력	○ 전시 및 사회교육 담당 인력 확보 여부
		유물관리 전담직원	○ 유물관리 전담직원 확보 여부 ○ 보존처리 요원 확보 여부
		방호인력	○ 자체 방호 또는 외부 용역 의뢰 여부 ○ 방호 인력, 주·야간 및 경비 방법 등
	보안관련 시설 및 장치		○ CCTV, 방범창 시설여부, 비상연락체계 확립
항온항습장치		○ 전시실 및 수장고 내 항온항습장치 설치여부 ○ 금속유물에 대한 별도 보관장치	
문화재의 활용도	연간 예산현황	○ 관리 및 전시예산 현황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포함)	
	사회교육 실적 등	○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실적 ○ 특별전 개최 계획 및 실적 여부 등	

- 보관·관리관청은 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문화재를 인수하고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송부[시행규칙 별지 제48조의2서식]

7) 출토유물 관리현황 제출

- 보관·관리관청은 매연도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현황을 <서식12>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연도 1월까지 제출
- 문화재청장은 보관·관리현황 제출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관·관리관청의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발굴 문화재의 분실·훼손시 처리

1) 적용 범위

- 발굴현장 보관 중 분실

- 발굴허가를 받아 발굴 시행 중 발굴 현장 및 유물에 대한 보안관리 불철저 및 부주의로 인하여 유물이 분실된 경우
- 발굴 후 임시보관 중 분실
 - 발굴유물이 국가귀속되어 최종 보관기관에 인계되기 전까지 유물 보관관리 불철저로 분실된 경우
- 기타 발굴업무의 제반 진행과정에서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출토유물을 국가귀속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경우

2) 적용 대상유물

- 시행규칙 제38조의2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 의한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기준으로 하며, 형태상 완형, 또는 부분(파편)이라도 학술적 가치가 있어 국가귀속 대상인 유물

3) 제재 조치

- 발굴유물을 도난·분실·훼손·망실하거나 동 사항 미신고시에는 발굴허가를 제한(최고 6개월)하며, 분실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분실유물에 대한 변상 처리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유물 도난·망실·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발굴법인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검토
- 발굴유물을 미신고 또는 은닉시에는 법 제103조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발굴기관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발굴허가를 제한(최고 6개월) 또는 발굴법인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
- 분실 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사·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유물 회수에 적극 대처한 경우, 또는 평소 안전관리지침 철저 준수 등의 경우에는 필요시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 내용을 신축적으로 적용함
-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를 분실한 기관에서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문화재청(또는 보관·관리관청)에 보고
 - 국가귀속 이전 : 문화재청에 보고
 - 국가귀속 이후 : 보관·관리관청에 보고
- 분실 문화재의 처리
 - 최종 확인된 분실유물에 대한 평가 (문화재청/보관·관리관청)
 - 평가금액에 따라 변상금 부과 조치 (문화재청/보관·관리관청)
 - 해당 조사기관 발굴허가제한 등 제재조치 (문화재청)

3. 과거 미귀속 매장문화재의 처리

- 출토유물로서 미신고 또는 누락으로 국가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는 분류·정리작업을 실시하여 조속히 국가귀속 조치
- 발굴조사기관에서는 이 지침 시행일 현재 출토유물로서 미신고 또는 공고누락으로 국가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를 국가귀속 절차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신고할 것

- 시도에서는 국가귀속 대상문화재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공고(7일간)하고 공고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체없이 공고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

Ⅵ. 발굴조사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

1. 허가받은자(사업시행자 등)

- 유적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
-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되며 발굴조사기관의 원활한 발굴조사에 최대한 협조
-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의무자로서 기간내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조사기관과 동일한 자가 아닌 경우 발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기간내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토지보상, 수목벌채, 지장물철거 등 사전 발굴여건 조성에 적극 협조
- 발굴 완료 후 발굴지역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의 철저 이행
- 유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의 완료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지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함.
- 발굴조사기관에서 제출하는 발굴조사계획서,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약보고서 등 관련서류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빠른 시일내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발굴허가의 신청, 발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발굴완료에 따른 유적보존 등 조치,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 등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극 조치하여야 함.
- 발굴허가의 신청 등 관련업무의 수행 및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자 또는 발굴조사기관에 대해 계획의 보완 지시 및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문화재청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행정 체제의 정비, 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 시책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함
- 발굴완료 후 발굴지역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
- 발굴조사 결과를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반영 또는 추록하여 향후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 경우 매장문화재 사전보호와 사업시행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발굴조사 관련 공문은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되, 관계기관(사업시행자, 문화재청 등)에 신속한 처리
- 발굴조사 관련 구비서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과 함께 제출(별도 송부 지양)

3. 발굴조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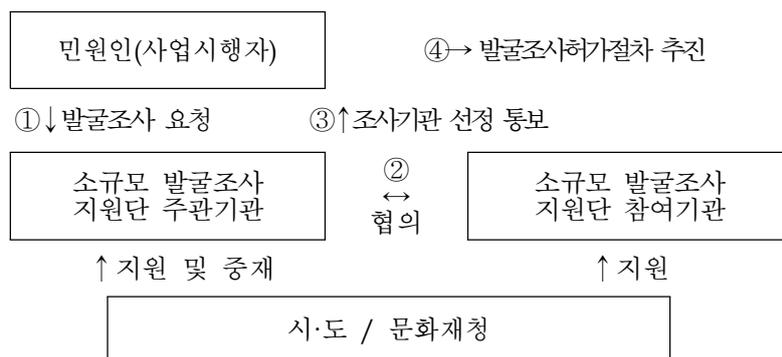
- 원활한 발굴조사,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사업과의 조정 등에 있어 매장문화재 보호의 취지를 사업시행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추진
-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계획서 및 발굴비용 내역서 등 발굴비용의 산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고 집행시 관련 회계규정, 발굴조사 정보의 공개 원칙을 준수
- 허가를 받은자(사업시행자 등)와 협조, 발굴착수 및 완료 신고,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신고,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 등 발굴조사에 따른 의무 이행
-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유물보관증, 발굴조사보고서의 유적명은 당초 허가 받을 당시의 유적명 및 허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
- 발굴조사보고서의 경우, 지역명을 사용한 유적명을 병기할 수 있음
- 발굴조사된 유적에 대한 보존 의견을 제시할 경우 타 유적 분석 등 학술적인 비교자료 제시
- 동일 유적의 시굴조사 기관과 발굴조사 기관이 다른 경우, 발굴조사의 진행,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등에 있어 발굴조사기관간 조사결과 및 기록, 기타 자료의 제공 협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조사 현장 점검시 관련 자료 제공
- 발굴조사 착수시에는 조사구역의 범위를 안전선 또는 펜스 등으로 확보하고 안내판, 안내문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에게 조사지역, 조사기간 등 허가사항을 공시하며, 고의 또는 무의식적인 발굴대상지역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발굴 결과 유구·유물에 대한 사진촬영·실측 등 정밀 기록보존 유지
- 발굴조사일지를 작성·비치하되, 특히 수습되는 모든 발굴 문화재에 대하여는 명칭·규격·상태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
- 출토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발굴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보존처리 시설에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
- 발굴조사지역에 상시 체재하여 발굴기간중 유적 훼손 및 유물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책임조사원은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
 - 특히, 중요 발굴조사 현장의 야간 경비에 유의하여 도난이나, 유적훼손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발굴조사 및 공사 시행시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및 주변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조치를 취할 것

- 필요시 발굴 완료 후 발굴지역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의 철저 이행
- 발굴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당초 발굴 기간(또는 계약기간) 준수
- 발굴기간의 변경허가 신청이 당초 발굴 허가기간 완료이전에 문화재청에 접수되도록 협조
- 유적에 대한 성격규명, 특수기자재의 운용, 유물분석 등을 위하여 부득이 발굴조사에 외국인이 참여할 경우 문화재청에 사전 통보
- 발굴로 얻는 학술적 자료를 사전에 국외로 유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유물의 국가귀속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유물관리에 따르는 의견(보존처리 여부, 처리상태 등) 등을 통하여 원활한 유물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 발굴완료서류는 공문 첨부가 용이하도록 전산자료를 함께 제출, 용량 최소화
- 3D 제작은 지도위원 등의 검토를 받아 중요유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
- 발굴조사단 구성시 책임조사원 이상은 발굴실무 및 조사전반(보고서 발간시까지)에 걸쳐 책임을 질 수 있는 발굴요원이 참여

Ⅶ. 기타 참고자료

1. 소규모 발굴지원단 구성·운영

- 사업시행자가 개인이거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로서, 조사기관 선정이 어려운 면적 2,000㎡ 이하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소규모 발굴 지원단 운영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절차



- 지원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락처 : [자료 1] 참조

2.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

- 특히, 해저에 매장되었다고 추정되는 단순한 금괴, 선박 등의 탐사나 인양의 경우 학술적으로 문화재가 포장되었다고 인정된 유적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의 적용은 곤란
 - 실체가 확인되고 문화재가 분명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여 처리
- 단, 매장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지정구역)인 경우, 그에 대한 현상변경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리

3. 발굴조사기관 신청 및 공고

-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구비하고 발굴조사기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신청서<서식 13>에 해당기관의 인력, 시설 및 기자재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제9의2]
- 발굴조사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기관명과 주소를 게재
-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시행규칙 제37호에 의한 별표 제9의2 지정요건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
- 문화재청장은 기준 및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4. 시행일자 등

- 이 지침은 2007. 5. 7부터 시행함

VIII. 서 식

1. [별표8] 발굴허가 제한기간의 범위(시행령 제35조)	131
2. [별표9의2] 발굴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시행규칙 제52조)	132
3. [별지47호의2]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서(시행규칙 제36조의2)	135
4. [별지47호의3]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	137
5. [별지47호의4] 매장문화재임시보관증,출토유물대장(시행규칙 제38조의2)	138
6. [별지48호의2]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시행규칙 제40조의2)	139
7. <서식1>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예시)	142
8. <서식2>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	144
9. <서식3> 발굴조사 착수 신고서 (예시)	145
10. <서식4> 지도위원 의견서 (예시)	146
11. <서식5> 발굴조사 지도위원회(현장설명회) 개최계획 (예시)	147
12. <서식6> 발굴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148
13. <서식7>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149
14. <서식8> 출토유물 현황 (예시)	150
15. <서식9>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공문내용 (예시)	151
16. <서식10> 발굴 문화재 공고문 (예시)	152
17. <서식11> 발굴 문화재 공고결과 보고 (예시)	153
18. <서식12>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예시)	154
19. <서식13>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신청서	155
20. [자료1]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주관기관,활동기관 연락처	158
21. [자료2] 국가귀속 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 (예시)	161

[별표 7]

발굴허가 제한 기간의 범위 (시행령 제35조 관련)

구 분	행위의 정도	발굴허가 제한기간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2년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의 명령이나 그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2년
법 제56조에 따른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1개의 발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2개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3개 이상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행위	1년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관련)

1. 대상 기관

가. 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법인 이외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 「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2. 인력 기준

등 급	임 무	확보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 고
		법인	법인 이외 기관		
가.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1명	○발굴조사기관의 장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책임조사원과 겸임가능
나.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1명 이상	1명 이상	○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 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 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다. 조사원	○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 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 조사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 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라. 조사보조원	○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	3명 이상	1명 이상	○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 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마. 보조원	○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자	3명 이상	1명 이상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바. 보존처리 요원	○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법인 이외기관은 다른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3. 시설 기준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법인 이외 기관은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4. 기자재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발굴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법인이외기관은 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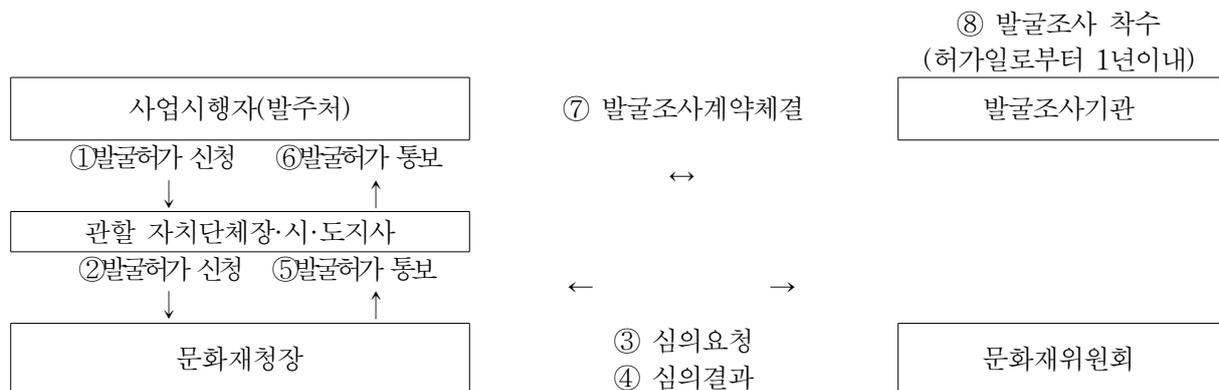
5. 기타

-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기재요령

- ① 신청인
 - 실제 발굴조사 허가 신청자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조사 허가 신청자를 기재하되,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자 연락처를 함께 기재합니다.
- ② 유적명 : 유적명을 기재합니다.
 - (예)00-00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0000유적
 - (예)00시 000학교 건립예정부지내 유적
 - 조사면적 : 실제 조사면적을 기재합니다.
 - 소재지 : 조사대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 (예) 00시 0구 00동 000번지 외 00필지
- ③ 신청사유 : 해당사업명/사업시행기관을 기재합니다.
 - (예) 00-00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000000청
- ④ 사업대상면적 : 해당사업 전체의 면적을 말하며, 조사면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⑤ 기관명 :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대표자 : 조사기관의 총 책임자를 말합니다(대학 소속 박물관 또는 연구소의 경우 대학의 총장, 지방 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소속 조사기관의 경우 연구원장, 그 밖의 독립된 기관인 경우는 기관장을 말합니다.).
 - 주소,전화번호 : 조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합니다.
 - 단장 : 조사단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자를 말합니다.
 - 책임조사원 : 발굴조사 현장을 책임지고 조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⑥ 발굴조사기간은 현장조사일수를 기재하며, 현장조사일 외에 필요한 기간(계약기간)은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합니다.
- ⑦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기준(문화재청 예규)에 의하여 작성한 발굴비를 기재합니다.
 - 발굴비용은 유적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매년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⑧ 발굴비용 부담자
 - 발굴비용 부담자를 기재합니다.
 - (예)0000공사, 발굴허가 신청자 000 등
- 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발굴비 지원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V” 표시를 합니다.
- ⑩ 「문화재보호법」 제62조, 제91조에 따른 지표조사 사전협의 해당사업일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⑪ 구비서류 중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임야)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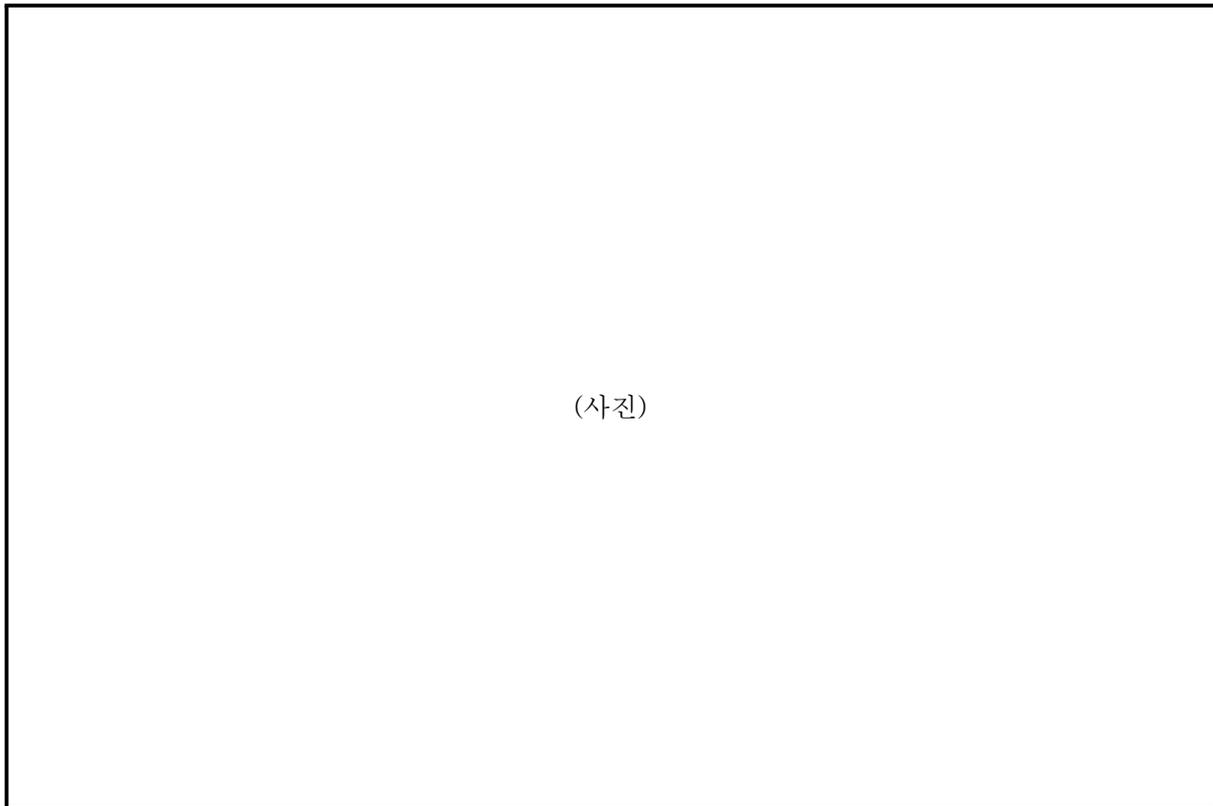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을지)

출토유물 대장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류	재질			시대	
크기 (cm)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출토	출토지(유구)				
	출토연월일				
구조특징					
비고	보존처리기간 및 내용				
	기타				



<서식1>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예시)

<○○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 계획서>

- 조사명칭 : ○○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
- 유적위치 :
- 조사목적
○○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구에 있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중요한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과 보존범위를 파악하여 개발과 문화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조화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조사경위 :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의 과정·결과 포함 기술
지정문화재 인근 여부 / 현상변경 허가 여부
- 대상유적 : ㎡(면적 단위는 ㎡로 통일)
(유적의 성격, 연혁, 현황 및 고고학적 환경을 기술)
 - 고인돌·선돌 : 수량, 위치
 - 고 분 군 : 위치, 종류
 - 유물산포지 : 추정유구, 연대
 - 와 요 지 : 위치, 크기
-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간 (*실작업일수)
- 발굴기관 :
- 발굴조사단의 구성
 - 단 장
 - 책임조사원
 - 조 사 원
 - 조사보조원
 - 보 조 원
 - 지도위원

※ 위 발굴요원 이외의 별도인원(조사위원 등)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조사방법

- 조사대상유적은 수몰에 의하여 파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면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이전복원을 염두에 두고 상석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굴조사를 수행한다.
- 고분과 유물산포지의 경우, 유적의 범위와 성격이 분명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시굴조사를 선행 한다.
- 와요지는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 소요예산 : 천원(○○○ 부담)

□ 발굴보고서 : 발굴조사 완료후 20일이내에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

□ 기타

- 출토유구(유물)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시굴조사에서 당초 계획된 발굴의 범위를 벗어나는 유적이 확인될 경우 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굴조사기관에서 발간, 배포한다.

-첨부-

<사진 및 도면> 위치도, 현황사진(전경,근경), 지표 채집 유물 등 기타 필요사항
<예산내역서>

매 장 문 화 재 발 굴 허 가 서

1. 허가받는 자 : 000

2. 허가사항

- 가. 발굴을 필요로 하는 사유 : 000
- 나. 발굴 유적명 : 000 유적
- 다. 발굴대상지역 : 00도 00시 00동 00번지
- 라.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00㎡
- 마. 발 굴 기 간 : 착수일로부터 00일간 (* 실조사일수)
- 바. 발굴조사기관 : 000
- 사. 허가일 : 허가문서 발송일

3. 허가조건

- 가. 문화재보호법 내 다른 조항 및 다른 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 나.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5항(발굴의 제한 등), 동법 제55조제6항(발굴 문화재의 보존, 관리 지시 등), 동 법 제56조(발굴조사보고서 2년 내 간행, 제출 등) 및 동법 제59조(발굴유물 국가귀속 조치 등) 등 관련 법규 철저히 이행
- 다. 발굴허가내용(변경허가 등 포함)을 확인 후 발굴 착수하도록 하고, 착수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받아야 함
- 라. 발굴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신고서류를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의 완료조치 통보를 받은 후 대상지의 현상변경 실시
- 마.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바. 발굴조사 후 유적·유구에 대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복토 등의 안전, 보호대책 철저히 이행
- 사. 기타사항은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참조)

2007년 00월 00일

문 화 재 청 장
(관 인 생 략)

<서식3> (예시)

발굴조사 착수신고서

수신자 문화재청장 (발굴조사과장)

(경유)

제목 00시 000유적 발굴조사 착수신고

1. 00도 00시 000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기 신고합니다.

가. 유 적 명 : 000 유적

나. 허가번호 : 제2007-000호

다. 발굴장소 : 00시 00동 00번지 外 일원(000m²)

라. 착수일 : 2007.00.00

마. 완료예정일 : 2007.00.00.(실조사일수 00일)

바. 기타사항 : (조사원, 조사보조원 변경 등 변경사항 기재). 끝.

조사기관 ○ ○ ○ (인)

<서식4>(예시)

지도위원 의견서

유적명 :	허가번호 : 2007-000
발굴결과 : 주요 유구·유물에 대해 간략히 설명	
지도위원 :	전공 :
지도위원 :	전공 :
조사기간 : 2007.00.00-2007.00.00 회의일자 : 2007.00.00 00:00	
자 문 의 견	유적 성격 :
유적 보존 :	
기타 의견 :	
지도위원 : 홍길동 (서명) 지도위원 : 홍길동 (서명)	

조사기관 ○ ○ ○

* 조사기관 작성 : [유적명, 허가번호, 발굴결과, 지도위원명단, 전공] 란

* 지도위원 작성 : [자문의견] 란

<서식5> (예시)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현장설명회) 개최

□ 개최 계획

- 일 시
 - 지도위원회 : 2007. 00. 00(화) 11:00
 - 현장설명회 : 2007. 00. 00(화) 14:00
- 장 소 : 00도 00시 00동 발굴현장
- 참석대상 : 지도위원 000, 000
조사기관·사업시행사·문화재 관계자 등
- 회의안건 : 유구 및 출토유물의 성격과 편년검토
유적의 향후 처리방안 등

□ 발굴개요

- 허가번호 : (년도)-000호
- 발굴사유 : 선사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 실시
- 허가받은 자 : 000
- 조사기간 : 2007. 00. 00 - 2007. 00. 00
- 조사기관 : 000
- 조사범위 : 약 15,000m²
- 조사결과
 - 유구확인 :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 삼국시대 이후 석곽묘 2기, 고려시대이후 토광묘 6기, 석열유구 1기, 수혈유구 3기 등 총 00기
 - 출토유물 :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등 60여점

□ 발굴성과

- 조사된 유적의 성격 및 학술적 의미 기술
- 특히 주목 받는 유구나 유물에 대해 기술

□ 기타 참고사항

- 유적 보존관련 참고사항을 기재
- 연락처 : 단장 000(전화 : 000-000-0000) / 책임조사원 000(전화 : 000-000-0000)

발굴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 대상 유적	유적명				
	유적의 종류		조사면적	m ²	
	유적의 현상				
	소재지(발굴장소)				
③신청사유(사업명/ 사업시행기관)		/	④사업대상 면적	m ²	
⑤ 허가 사항	허가번호				
	발굴면적	m ²	발굴비용	원	
	발굴기간	2000.0.0.~2000.0.0.(00일간(현장 실조사일 수))			
	조사기관	(전화번호)			
	발굴조사단	단 장			
책임조사원					
조 사 원					
⑥변경사유					
⑦ 변경 사항	변경 발굴면적	m ²	추가 발굴비용	원	
	변경 발굴기간	재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조사기관	(전화번호)			
	발굴조사단	단 장			
		책임조사원			
조 사 원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 서류
1. 변경 발굴조사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 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를 포함) 2. 발굴조사기관 의견서 등 그 밖의 참고서류

<서식7>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허가번호	(년도)-000호	유적명				
발굴형태	발굴, 시굴, 시·발굴 등	발굴사유	구제(도로건설 등), 학술(정비, 순수) 등			
유적소재지		발굴면적	m ²	발굴비용	천원	
발굴기관		조사단	단장			
			책임조사원			
발굴기간	(실조사일 00일)		조사원			
			조사보조원			
현장조사일			보조원			
유구	종류	시대	수량	중요유물	비고	
출토유물	○ “출토유물 총 00점 (00상자)” 또는 “없음”명시 ○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 보고서 제출시 신고(사유 명시), 6개월이내 신고 중 택일					
보고서	2년이내 발간예정, 약보고서로 대체 중 택일					

위와 같이 ○○ 유적의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기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문화재청장 귀하

<서식8> (예시)

출토유물 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 량	비 고
1. 금 속		50점	
2. 옥석유리		30점	
3. 토 도		15점 (5박스)	
4. 골 각			
5. 목죽초칠			
6. 기 타			
계		00점 (00박스)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2. 출토유물 사진

--	--	--	--

1.

2.

3-1.

3-2

--	--	--	--

3-3.

4.

5.

6.

* 사진은 유물 전체가 보이도록 직상방향에서 촬영

<서식 9> (예시)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수신자 문화재청장 (발굴조사과장)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경유)

제목 00시 00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1. 00도 00시 00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발굴 개요

- 유 적 명 : 00유적
- 허가번호 : 제0000-000호
- 발굴장소 : 00시 00동 00번지 외 일원(000㎡)
- 발굴기간 : 00년 0월 0일~00년 0월 0일

나. 보고서 개요

- 보고서 제목 :
- 발행기한 :
- 연기기한 : (* 연장승인 받은 경우 기재)
- 제 출 일 :
- 전체 발행수량 : 00부
- 제출부수 : 00부(CD 0장). 끝.

기 관 명

(인)

발굴문화재 공고문 <예시>

제 2007 -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3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3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7조의2

2. 부산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지역에서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과수부호 등 75건 75점

나. 조사지역

부산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다. 조사기간

2006. 11. 01 ~ 2007. 03. 17

라. 조사기관

(재)00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00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07. 00. 00.

부 산 광 역 시 장

발굴문화재 공고결과 보고 <예시>

발굴 문화재 소유자 (유·무)확인서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3, 동법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의
해 발굴 문화재 공고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공고 사항

- 가. 기간 : 2007. 03. 1 ~ 3. 7(7일간). 소유권확인기간 90일
-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시판 게시

2. 공고 내용

- 가. 유 물 명 : 과수부호 등 75건 75점
- 나. 조사지역 : 부산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00필지
- 다. 조사기간 : 2004. 11. 01 ~ 2005. 05. 17
- 라. 조사기관 : (재)0000문화재연구원
- 마. 보 관 처 : (재)0000문화재연구원

3. 공고 결과

- 위 기간 중 소유권 주장자가 없었음을 확인함.
- 위 기간 중 소유권 주장자가 있었음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식12>(예시)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예시>

2007년도 / 충청남도

1. 국가귀속 발굴문화재 총현황

(단위:점, 2006.12.31 현재)

기관명	보관 수량	보 관			임시보관	기 타	비 고
		인수	위임	위탁			
전년도 누계	500,000	200,000	100,000	50,000	150,000		
금년도 현황	50,000	20,000	10,000	5,000	15,000		
전체 계	550,000	220,000	110,000	55,000	165,000		

* 인수는 해당기관이 직접 인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위임은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게 하는 경우, 위탁은 기타기관에서 관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함.

* 임시보관은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미인수된 유물의 수를 말함

2. 2006년도 기관별 처리 현황

(단위:점, 2006.12.31 현재)

구 분	인 수		위 탁		임 시 보 관		합 계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합 계								

3. 위탁관리 세부현황 (누계)

(단위:점, 2006.12.31 현재)

기관명	전년도 누계		금년도 위탁		합 계	
	건	점	건	점	건	점
00대학교 박물관	50	6,000	2	50	52	6,050
계						

인 력 현 황						
①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0년 0월(00년 졸업)
②조사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③조사보조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④보조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⑤보존처리요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경력증명서						

<서식13-2>

시 설 현 황			
시 설 현 황	총연면적	사무실	전시실
	m ² (평)	m ² (평)	m ² (평)
	연구·정리실	보존처리실	수장고
	m ² (평)	m ² (평)	m ² (평)
기자재 보유현황			
구 분	기자재명	수량	제원 또는 특기사항
실측·측량 기자재			
촬영 기자재			
발굴 기자재			
보존처리 기자재			
도난방재 기자재			
기 타 기자재			

[자료1]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락처

(2007. 12. 현재)

지 역	구 분	조사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인천, 경기	주관기관	기전문화재연구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031-898-7990
	활동기관	고려문화재연구원	서울 종로구 교북동 11-1 부귀빌딩 201호	02-720-4181~3
		중앙문화재연구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18 영춘빌딩 301호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81	02-537-3212 042-933-270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2-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02-3011-2173
		기호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592-1	031-675-0511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486-1 우암빌딩 5층	02-498-8773
		한백문화재연구원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671-48	02-465-6303
		명지대학교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38-2	031-330-6074
		수원대학교박물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	031-220-2341
		한신대학교박물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031-370-6594
		한양대학교박물관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02-2220-1390
		한양대문화재연구소	경기도 안산시 사1동 1271	031-400-5021
		용인대학교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70	031-8020-3001
		인하대학교박물관	인천시 남구 용현동 253	032-860-8260
부산, 경남	주관기관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 창원시 팔용동 6-37 동림빌딩 4층	055-264-1777
	활동기관	경남고고학연구소	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고리 851	055-744-4704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1-1	055-281-4436,9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빌딩 401호	055-265-9150~3
		우리문화재연구원	경남 창원시 소담동 159-15	055-297-8992~3
		동서문화재연구원	경남 창원시 봉곡동 174-9	055-237-3891
		한국문물연구원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0-5	051-206-4201~2
		동아대학교박물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	051-240-2671

지 역	구 분	조사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대구, 경북	주관기관	영남문화재연구원(정)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	054-971-8085~88
		경북문화재연구원(부)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240-4	053-854-8321
	활동기관	성림문화재연구원	경북 경주시 성건동 620-346	054-741-283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경북 경주시 용강동 1013-3	054-774-8167
		중앙문화재연구원	경북 경주시 충효동 2979-1	054-748-8901
		대동문화재연구원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1031-9	053-628-0047
		대경문화재연구원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25-3번지	053-851-8954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북 경주시 동방동 119-2	054-777-3101~2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159	054-972-9796
		동양대학교박물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교촌동 1	054-630-1264
울 산	주관기관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41	052-254-5451
	활동기관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센터 4층	052-289-8558
강 원	주관기관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4-9	033-249-5645~7
	활동기관	예맥문화재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11-5	033-263-6457~8
		중앙문화재연구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18 영춘빌딩 301호	02-537-3212
		한림대학교박물관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033-248-2851
충 북	주관기관	중원문화재연구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738	043-274-8865~6
	활동기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1	043-258-5813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90	043-264-4191~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2-2 충북 현도면 노산리 538	02-3011-2173 042-933-0010

지 역	구 분	조사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대전, 충남	주관기관	충남역사문화원(정)	충남 공주시 금홍동 산20-10	041-856-0672
		충청문화재연구원(부)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33	041-856-8586
	활동기관	백제문화재연구원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6-1	041-836-7211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208	041-860-1913
전 북	주관기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북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132	063-241-5897
	활동기관	호남문화재연구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698-2	062-954-3640
		전주대학교박물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200	063-220-2158
광주, 전남	주관기관	호남문화재연구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698-2	062-954-3640
	활동기관	전남문화재연구원	전남 나주시 죽림동 138	061-334-8364
		남도문화재연구원	전남 순천시 조례동 593-6 농협봉화지점 2층	061-727-8363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812	061-374-9300
		동신대학교박물관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061-330-4000
		조선대학교박물관	광주시 동구 서석동 375	062-230-6130
제주도	활동기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 제주시 삼서석로 11	064-720-8000
		남도문화재연구원	전남 순천시 조례동 593-6 농협봉화지점 2층	061-727-8363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호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국가에 귀속조치된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 라 함)의 위탁보관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협약당사자)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그 산하 국립지방박물관장을 “갑”이라 칭하고, 학교법인, 총장, 재단이사장 등 수탁기관의 장을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이 협약 당사자가 된다.

제 2 조(대장작성, 송부 및 출납부 비치) “을”이 “갑”으로부터 국유문화재를 수탁하였을 때는 국유문화재에 대해 매건별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대장(소정양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갑”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1부는 “을”이 비치하여야 하며,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 출납부를 비치하여 출납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3 조(대여전시) “을”은 수탁한 국유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대여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임시이관) “갑”은 필요시 위탁한 국유문화재를 다른 기관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시이관시킨다.

제 5 조(지시가능 사항) “갑”은 “을”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시설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 6 조(비용부담) “을”은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자체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 7 조(기술지도 요청) “을”은 수탁한 국유문화재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갑”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보고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는 “을”은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수탁한 국유문화재의 망실, 도난 또는 손상되었을 때

나. 수탁한 국유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 9 조(위탁문화재 실태점검) “갑”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위탁한 국유문화재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 10 조(위탁해지) “을”이 본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1 조(변상)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국유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관리 중의 국유문화재를 “을”이 손상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을”은 “갑”의 판정에 의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단, 변상액은 지정문화재일 경우 문화재평가심의위원회의,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 조(위탁보관 협약의 추가적 성립) 본협약서는 향후 “갑”과 “을”사이의 국유문화재 위탁시 기본협약이 되며, 국유문화재의 위탁은 공문(“갑”의 위탁대상 국유문화재목록, “을”의 수탁문화재 보관증)으로 한다.

제 13 조(기타) 위 협약내용 이외의 국유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령에 준하고, 동 협약사항은 해지 또는 별도 협약시까지 계속된다. “갑”과 “을”은 위의 사항을 준수키로 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갑”이나 “을”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함)하여 쌍방이 1부씩 보관하기로 하고 다음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인)

“을” 수탁자 (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동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조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굴조사”라 함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의 현상변경을 통해 해 당지역에 부존하는 유적의 성격을 밝히고 필요한 학술정보를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2. “지표조사”라 함은 지표에 드러난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매장문화재 부존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55조 및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시행자를 말한다.
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인건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제경비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4. 학술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의 인건비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을 포함하며, [별표 1]에 의한 조사요원별 참여인원수에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별표2]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중 인력기준을 적용하되, [별표1]에 의한 조사요원별 참여인원수는 문화재 지표조사에 한한다.

② 당해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통계법」 제4조에 의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③ 인건비 기준단가는 1일8시간(주40시간, 주휴수당 미포함), 1개월을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일8시간(주40시간), 월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 ④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다.
- ⑤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

제6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아래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3]에 따른다.

- 1. 여비
- 2. 현장운영비
- 3. 조사재료비
- 4. 위탁비
- 5. 임차료
- 6. 회의비
- 7. 유물정리비
- 8. 보고서간행비

②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세금과 공과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제5조 제1항에 의한 인건비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 수탁자가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및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요원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제5조 제1항에 의한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9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조사용역기관이 조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의 도입 또는 도입된 기술의 개량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으로 조사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절감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부 칙

- 1.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주하는 조사용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 2. 제5조 제1항에 의한 <별표2>는 현장조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1]

조사요원별 참여인원수 (제5조 관련)

1. 기준인력수

조사단계별		조사요원 등급별 기준인력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A	조사원B (또는 조사보조원)
사전조사		0.2인	0.2인	0.8인	0.5인
현장조사	육상	-	1.0인	1.0인	1.0인
	수중	-	0.1인	0.4인	1.2인
정리.분석		-	0.2인	1.0인	0.5인
보고서작성		0.3인	0.6인	1.2인	1.0인

* 기준인력수는 사업면적 10만㎡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 민속,건축물,지질·화석 등 기타 분야 조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조사요원을 추가할 수 있다.

2. 참여인력수 산정방법

가. 등급별 조사요원 참여인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요원 등급별 기준인력에 면적보정계수와 난이도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조사요원 참여인력수 = $\Sigma(\text{등급별 기준인력} \times \text{면적보정계수} \times \text{난이도보정계수})$

나. 면적보정계수 = $\left(\frac{\text{조사대상면적}(m^2)}{\text{기준면적}(10만m^2)} \right)^{0.6}$

다. 난이도보정계수 : 육상지표조사 대상지의 형태(단지형,선형) 및 입지(평지,산지)에 따라 구분

구분	단 지 형	선 형
평지(개발지)	1.0(기준)	1.2
산지A	1.2	1.4
산지B	1.4	1.6

* 단, 수중조사 전체 및 육상조사 중 3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은 난이도보정계수를 기준등급(1.0)으로 적용

* 단지형 : 단지(공단,아파트,산업단지,택지,공원,댐,저수지 등 집합구간), 토취(채석, 채토 등)

선 형 : 도로, 철도, 수로(하천개보수,송수관로 등)

* 평 지 : 산지가 30% 미만인 경우

산 지A : 산지가 30% 이상 70%미만인 경우

산 지B : 산지가 70% 이상인 경우

[별표2]

조사요원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08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 사 단장	201,355
책임조사원	137,547
조 사 원	112,526
조사보조원	82,030
보 조 원	66,472

주) 조사요원 외의 인부, 잠수부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별표3]

직접경비 산출방법(제6조 관련)

1.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되 국외여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일수만큼 계상한다. 또한 국내여비는 조사단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 책임조사원 등은 제2호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금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운영비는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현장 인력의 수송비용 등을 말한다.
3. 조사재료비는 당해 조사용역을 위한 각종 소모성 발굴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시중물가에 의한 실비를 적용한다.
4. 위탁비는 항공촬영, 측량, 현장자료 분석이나 유물의 분석과 보존처리 등을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실비를 적용한다.
5. 임차료는 각종 조사 장비를 외부로부터 임차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6. 회의비는 당해 조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표에 의해 산정한다.

구분	기준	금액	비고
회의비	1시간이내/1인	70,000원	
	1시간이상/1인	100,000원	
자문료	1회/1인	150,000원이하	회의자료 검토, 유적에 대한 차문의견서 첨부된 경우에 한함
전문가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7. 유물정리비는 각종 정리용품비, 보존처리 약품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8. 보고서간행비는 조사보고서 간행과 관련된 사진제작비, 보고서 인쇄비 및 발송비, 전산매체 제작비 등을 말하며 인쇄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1. 용어해설 / 173
2. Q&A / 177
3. 소규모 발굴비 지원 업무 / 205
4.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 215
5.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현황 / 230
6.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 231
7. 문화재위원회 규정 / 365
8. 공무원 여비규정 / 369

■ 용어 해설

개토제(開土祭)	땅을 파기 전에 토지신(土地神)에게 올리는 제사.
건물지(建物址)	건물이 있던 터.
경작유구(耕作遺構)	옛 사람들이 경작하던 논·밭 등의 농경지 유구.
고고학(考古學)	과거 인류들이 남긴 잔존물을 통해 과거 문화를 복원하고 그들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학문. 과거 인간들의 활동은 반드시 그 잔존물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유물, 유구, 유적 등의 고고학적 자료이고, 이 물질적인 잔존물을 통해 고고학의 연구가 이루어짐.
고상가옥(高床家屋)	바닥이 지표면에서 떨어져 지어진 집. = 고상식건물.
고토양층(古土壤層)	오래된 토양층. 통상 4기층을 말하며, 구석기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있음.
구제발굴(救濟發掘)	발굴을 하게 되는 계기의 하나. 건설공사에 앞서 훼손이 예상되는 유적을 조사하여 최소한의 문화정보를 구제하기 위한 발굴조사.
굴광선(掘墳線)	= 어깨선, 유구의 윤곽선
굴립주건물(掘立柱建物)	= 땅을 파서 기둥을 세우거나 박아 넣어서 만든 건물
국가귀속(國家歸屬)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출토유물의 소유권을 국가로 확정시키는 행위.
기록보존(記錄保存)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발굴조사를 거쳐 발굴내용을 철저히 기록토록 함. 기록 후 건설공사 진행 가능.
긴급조사(緊急調査)	자연재해·도굴 등 훼손요인에 노출된 중요 매장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발굴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함.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지하 및 해저에 묻혀 있는 무덤, 집터, 패총, 절터 등의 유적과 유물을 총칭. 문화재보호법에 보존·관리토록 규정.
매트공법(Mat-)	지하의 유적을 복토보존하고 지상식 구조물을 짓는 건축공법.
무문토기(無文土器)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표면에 아무런 무늬 없음.
문화유적분포지도(文化遺蹟分佈地圖)	전국의 문화재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군단위로 1/10,000 지형도 상에 유적이거나 유물산포지 등을 표시한 지도.
문화재보존대책(文化財保存對策)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제거, 감소, 완화) 또는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에 따른 여러 가지 안을 지칭.
문화재보호구역(文化財保護區域)	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설정한 구역.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에서 위촉한 관계전문가.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의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둠.
문화재전문위원(文化財專門委員)	문화재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에서 위촉한 관계전문가.
문화층(文化層)	퇴적층 중 유구·유물을 포함하여 옛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 층위.
발굴유물(發掘遺物)	발굴조사로 얻게 된 유물.
발굴조사(發掘調査)	시굴조사로 확인된 유구를 정밀조사 하기 위한 굴착조사. 광의적으로 시굴조사(試掘調査)도 발굴조사의 일부임. 문화재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함. 고고학사전 : 고고학적 자료를 가장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으로, 발굴의 목적은 고고학적 자료를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 자료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즉 유물의 경우 출토위치, 출토상태, 공반유물 등과 유구의 경우 출토상태, 유구간의 조합관계, 층서관계 등을 얻고자 함이다. 고고학적 자료가 갖고 있는 3차원적 위치를 최대한으로 파악하여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발굴조사기관(發掘調査機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의 기준에 이한 요건을 갖추고 발굴조사를 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

발굴조사단(發掘調査團)	개별 발굴조사를 수행하는 집단. 조사단장·책임조사원·조사원·조사보조원·보조원 등으로 구성됨.
발굴조사보고서(發掘調査報告書)	발굴조사의 내용을 사진·도면과 함께 상세히 펴낸 책.
발굴허가(發掘許可)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조사를 허가하는 행위.
발굴변경허가(發掘變更許可)	기간, 면적 등 발굴조사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일. 절차는 발굴허가와 같음.
보고서(報告書)	발굴(지표)조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도면, 사진 등과 함께 펴낸 책.
보조원(補助員)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자.
보존과학(保存科學)	물질적인 구조와 재질의 변화·노화·붕괴 등의 방지를 연구하는 과학. 주로, 문화재의 보존에 응용됨.
보존조치(保存措置)	발굴조사된 유구에 대하여 보존토록 하는 행정명령. 원형보존, 복토보존, 이전복원 등.
보존처리(保存處理)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적·유물의 산화·변형을 방지하는 일
보존처리요원(保存處理要員)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의 실질적 책임자.
복토(覆土)	파 놓은 흙을 되메우는 일.
봉토(封土)	고분의 무덤방을 덮기 위하여 쌓아 올린 흙.
복토보존(覆土保存)	발굴된 유구의 상부에 흙을 메워 유구를 보존하는 일.
부석유구(敷石遺構)	돌을 깔아서 조성한 유구.
부장품(副葬品)	무덤에서 시신과 함께 넣은 물건. 켜묻거리.
분구묘(墳丘墓)	미리 흙이나 돌로써 봉분과 같은 분구를 조성하고 그 위에 매장시설을 만드는 무덤양식.
분묘(墳墓)	사람의 시체나 유골을 땅 속에 파묻거나 일정한 형태로 처리하는 것. = 무덤.
분포확인조사(分布確認調査)	유적의 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지의 1%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실시하는 굴착 조사. 유) 토층조사, 분포조사
비지정문화재(非指定文化財)	문화재보호법상 국보·보물·사적·지방기념물 등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사업면적(事業面積)	지표(수중)의 원형변경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지 전체면적. 공원부지, 녹지지역도 사업면적에 포함됨.(사업 인·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면적)
사업부지(事業敷地)	= 사업면적.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	당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을 말하며, 시행자로부터 용역을 받은 시공사 등이 발굴허가 신청을 대행할 경우에도 신청자는 시행자가 됨.
석곽묘(石槨墓)	지하에 깊이 움을 파고 자연괴석이나 자갈돌로 직사각형의 덧널을 짠 무덤 = 돌덧널무덤. 내부를 돌로 쌓아 관과 부장품을 놓을 자리를 만든 무덤.
석관묘(石棺墓)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다른 시설 없이 관만을 판석형태의 돌로 만든 무덤. = 돌널무덤
석실묘(石室墓)	내부를 돌로 쌓아 방처럼 만든 무덤. = 돌방무덤(돌로 널을 안치하는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아올려 봉토를 만든 무덤. 널길이 달려있고 천장구조가 다양하다.
석열(石列)	가지런히 열을 지은 돌무더기.
소규모발굴(小規模發掘)	국가·지자체로부터 발굴비 지원이 가능한 문화재보호법상 규정된 일정면적 이하의 발굴조사.(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수혈(竪穴)	땅을 파서 만든 구덩이.
시굴조사(試掘調査)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및 유적분포 가능지역에 대해 유구의 분포 여부 및 범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굴착조사. 조사대상지의 10% 범위 내외의 면적에서 실시하며, 예비조사 성격으로 광의의 발굴조사에 포함됨. 토지의 원형이 변경되는 일이므로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시굴조사보고서(試掘調査報告書)	시굴조사 결과를 도면·사진 등과 함께 설명하여 펴낸 책.
약보고서(略報告書)	시·발굴조사 완료시 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한 보고서.
어깨선	유구의 윤곽선. 주거지의 윤곽선 = 굴광선.
연대측정(年代測定)	유적의 연대를 알아내기 위한 과학적 조사. 탄소연대측정, 고지자기측정 등.
연차발굴(年次發掘)	동일 유적에 대해 연도별로 여러 회에 걸쳐 실시하는 발굴조사.
옹관묘(甕棺墓)	관을 항아리로 만든 무덤.
와관묘(瓦棺墓)	관을 기와로 만든 무덤.
와요지(瓦窯址)	기와를 굽던 가마터. = 기와가마터.
요갱(腰坑)	부장품을 두기 위해 시신의 허리 아래에 판 구덩이.
원형변경(原形變更)	지표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 현상변경, 형질변경.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원형보존(原形保存)	문화재 분포지역 지표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행위.
유구(遺構)	유적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표를 변경(성토·굴착)하여 만든 옛 시설물. 주거지, 무덤 등.
유물(遺物)	옛 사람들이 쓰던 물건. 토기, 석기, 철기와 같은 생활도구와 각종 장신구 등.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	지표상에 유물편이 드러나 지하에 유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유적(遺蹟)	옛 인류가 남긴 유형물의 자취. 유적>유구>유물
입회확인조사(立會確認調査)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실시하는 굴착조사.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함.
이전복원(移轉復原)	유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복원하는 행위.
자문위원(諮問委員)	= 지도위원
자문위원회(諮問委員會)	= 지도위원회
저습지(低濕址)	옛 수로, 논 등의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 늪지대, swampy place.
전사(轉寫)	발굴조사된 유구나 토층을 그대로 본 떠 옮기는 일.
전시관(展示館)	발굴조사된 유구·유물을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
정비목적발굴(整備目的發掘)	유적의 복원이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발굴.
제토(除土)	발굴을 위해 유구 상부의 흙을 제거하는 작업. 전면 제토는 조사대상지역의 표면 혹은 전부 제거함(全面除土)
조사단장(調査團長)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조사보조원(調査補助員)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
조사원(調査員)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주거지(住居址)	옛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 주거의 자취.
주혈(柱穴)	건물, 울타리 등의 기둥을 꽂았던 자리. = 기둥구멍.
지도위원(指導委員)	발굴조사에 대한 조언도 하고 유적의 성격판단, 발굴성과 등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지도위원회(指導委員會)	발굴조사에 대한 조연도 하고 유적의 성격판단 발굴성과 등을 검토하기 위한 지도위원 회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국보·보물·사적·지방기념물처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어 보호·관리되는 문화재.
지표조사(地表調査)	지표에 드러난 문화재 또는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
지표조사기관(地表調査機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별표 15)의 기준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표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
책임조사원(責任調査員)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탄요(炭窯)	숯을 굽는 가마. = 숯가마.
토광묘(土墳墓)	땅을 파고 만든 무덤.
토기(土器)	흙을 구워 만든 그릇.
트렌치(Trench)	발굴조사에서 유적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땅을 일정 규격으로 길게 파놓은 도랑, 구덩이. 통상 피트는 점, 트렌치는 선의 개념임.
패총(貝塚)	옛 사람들이 버린 조개무지(쓰레기터). 신석기-삼국시대 주로 생성된 유적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출토됨.
편년(編年)	유적이나 유물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일.
표본시굴조사(標本試掘調査)	지표상에 유물은 확인되지 않으나, 지형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굴착조사.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조사 대상범위의 2%내외 면적을 굴착함.
피트(Pit)	유적의 존재 유무나 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땅을 수직으로 파놓은 구덩이.
학술발굴(學術發掘)	유적의 학술적인 성격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발굴조사.
현장설명회(現場說明會)	유적의 조사 결과를 관련 전문학자와 언론, 지역국민,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대외적으로 알리는 현장 공개행사.
현지보존(現地保存)	= 원형보존, 현상보존.
형질변경(形質變更)	= 원형변경.
환호(環壕)	집단거주지나 방어시설 등의 둘레를 파 놓은 도랑. 일종의 방어시설이며, 주로 청동기-삼국시대 유적에 나타남.
회곽묘(灰槨墓)	무덤관의 바깥을 회(灰)로 마감한 토광묘. 주로 조선시대에 많음.
3D스캔(3D-Scan)	유구·유물을 레이저스캐닝(Laser Scanning)하여 3차원영상으로 구현하는 일.

* 참고 : 『국어사전』, 『한국고고학사전』, [문화재보호법] 등

지 표 조 사

Q 지표조사보고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죠?

A 지표조사보고서는 작성 후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보고서에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는 보고서 작성 후에 지형의 변경을 고려한 것이며, 2년이 지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시의 문화재 재표조사기관의 보완조사결과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원형변경되는 면적이 3만㎡ 이하인 수목원사업이 지표조사 대상인가요?

A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3조의 제1호에 의해 지표조사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지역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6호에 의해 다음을 조건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산림청장이 고시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해 실시할 것.

○ 근거 :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1.

위에 의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라도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위에 의한 지역을 제외하고 지표조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 사유 :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2항 및 별표1에 의해 지표의 원형이 이미 훼손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지표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대상 부지로 판단하여야 함.

Q 지표조사보고서상 조사면적보다 실제 사업면적이 초과한 경우, 초과지역에 대해 추가 지표조사보고서를 별도 제출해야 되나요?

A 추가조사지역이 기 조사완료한 지역과 비교해 적은 지역인 경우, 당초 지표조사기관의 조사의견을 추가로 첨부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포함여부

질 의) {사업현황} 사업계획면적 30,993㎡(산지전용 허가 면적 29,945㎡, 도로점용허가 면적 1,048㎡)/ 사업계획 부지 여건 : 기존 도로에서 위 사업부지에 진·출입을 위해서는 지목상 도로(잡목지) 2필지를 통과하여야만 사업추진이 가능

- (감설)문화재 지표조사 대상면적 산정은 지목상 도로인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자가 신청한 산지전용 허가면적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 (을설)기존 도로에서 위 사업부지로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 연결공사를 시행하는 지목상 도로 (사실상 폐쇄, 잡목지)부분이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으로 산지전용허가면적에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포함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회 신) [2007. 6.]

지표조사는 토지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사항이 아니라 건설공사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임. 따라서 토지 이용관계를 불문하고 사업계획 전체면적은 지표조사 면적에 해당

■ 30,000㎡이하 건설공사는 지표조사 절차 생략하고 사업 인허가 가능여부

질 의) 전체 사업(신청)면적이 30,000㎡이상이므로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이나, 이미 채취가 이루어져 실제 채취예정면적이 1,237㎡에 불과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문화재지표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 인·허가의 가능여부

회 신) [2007. 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 규정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제2호부터(내지)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2. 절토(切土) 또는 굴착(掘鑿)으로 인하여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5.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 지역 또는 매장문화재분포예상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 1989년 지표조사 실시한 경우 현재 지표조사 대상 미포함 여부

질 의) 000관 신축공사는 사업면적이 30,000㎡이상의 건설공사로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43조의3 제1항제1호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대상이나, 00신도시개발 당시 **문화재지표조사(1989.0. 00대 박물관) 실시 근거**를 들어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3제2항1호에의거 이미 지표조사실시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로 **지표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회 신) [2007. 7.]

문화재 지표조사 제도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999.7.1부터 시행되어 그보다 선행된 광역 지표조사의 경우 동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재 지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현지조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의 보완조사 결과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에는 새로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표조사 대상 여부

질 의) 1997년 문화재 지표조사 기 실시 지역내에서 사업범위 축소하여 공사시행을 계획하는 경우 기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내용이 유효한지 여부

회 신) [2007. 1.]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완료)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1호에 의거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단,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의거 최종 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되었으나 1999.7.1 당시 착공전인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또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각호의 기준에 의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의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여부/연접개발의 법령 해석

질 의) 2002.4.18. 경기 00면 01번지 일대 29,364㎡의 공장설립 건설공사 승인받아 2002.12.경 공사완료 후, 2003.6.16. 경기 00면 02번지 일대 24,120㎡의 공장설립 건설공사를 처의 명의로 승인받아 2004.12.경 공사완료한 경우,

위 사업이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인지 여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1항의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의 구체적 의미

회 신) [2007. 2.]

○ 위 사업이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인지 여부

1) 2002.4.18. 승인받은 29,364㎡의 건설공사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 3(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2003.6.16 승인받은 24,120㎡의 건설공사

(1) 사업시행자가 다른 별도의 사업인 경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사항임.

(2)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동일 사업시행자로 확인될 경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1항의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30,000㎡이상이 되어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사업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1항의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의 구체적 의미 :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나누어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연차시행, 분할시행, 단계별 시행 등 사업시행 방법에 관계없이 연속된 일련의 동일 사업일 경우 전체 사업면적을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면적으로 판단함.

■ 30,000㎡미만 사업/인접지역 보고서로 대체 가능 여부

질 의) ○ 사업면적 30,000㎡미만 사업의 지표조사 실시 여부.

○ 인접한 00 제19구역에서 조사한 문화재 지표조사 자료로 00 제17구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회 신) [2007.01.]

○ 사업면적 30,000㎡미만 사업의 지표조사 실시 여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의 각호의 기준에 의거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인접한 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로는 당해 사업의 지표조사 보고서를 대신할 수 없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 표시여부

질 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시 문화재란에 매장문화재 해당지역 표시여부에 대한 질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시 문화재란에 매장문화재 분포여부는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도 되는지 여부

나.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5(문화유적분포지도)의 규정에 의한 열람만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여부

다. 매장문화재 해당지역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당사자들간의 분쟁으로 야기된 민원 제기시 관련 법령에 근거한 대처방안

회 신) [2006.10.]

가. 문화유적분포지도상에 표기된 매장문화재 확인여부에 관한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해당되지 않음.

나. 열람만으로 가능함.

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매장문화재의 확인등에 대한 기준은 없음. 다만 귀 시 관내는 매장문화재가 다수 분포된 지역으로 소규모 공사등으로 유물산포지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유적분포지도 열람등으로 건축인·허가시 신중을 기하고, 이에 대한 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주의

■ 사업부지를 분할하여 건축허가 득한 경우 지표조사 여부

질 의) 사업부지(79,002㎡)에 주거단지(57,206㎡)를 11개동으로 분할하여 개별 11개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일괄적으로 주거단지 및 단지내 시설 등(21,796㎡)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신) [2006.11.]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의 범위는 연차시행, 분할시행, 단계별 시행 등 사업시행 방법에 관계없이 연속된 일련의 동일 사업일 경우 전체사업 면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에 의거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사업입

■ 실시계획인가 조건부 협의 가능 여부

질 의)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 발굴조사 대상지역 중 미매입 필지는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토지수용을 통해 취득예정이나 실시계획인가전 발굴조사를 위해선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2.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토지수용 및 매입에 의한 토지 확보 후 공사시행전 시굴조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협의 요청에 대한 질의

회 신) [2007.09.]

1. 문화재보호법령상 문화재 발굴조사 시행시기와 건설공사의 인허가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의 시행으로부터 문화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실시계획인가는 문화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관련 인허가권자에 요청.

■ 시설공사 완료지역의 새 시설부지 공사시 지표조사 대상 여부

질 의) ○ 00대학교는 1999. 7월이전에 시설공사가 완료된 지역임. 2006.8월 학교시설 확충부지(기숙사 신축, 6개건물 증·개축)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 문화재청은 2006.9월“사업시행”의견을 회신

○ 기숙사 확충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주)00개발은 2006.8월 기숙사 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실시 계획변경 신청서를 00시에 제출하였으나, 00시는 00대학교 전체부지에 대해 지표조사 실시를 요구함.

○ 질의사항은 기숙사 부지는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설공사가 완료된 00대학교 전체부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추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인허가권에 대한 사항임

회 신) [2006.12.]

○ 00대학교 기숙사 시설 확충부지에 대한 지표조사는 문화재청 발굴조사과-00(2006.9)에 의거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므로 추가 협의는 불필요함.

- 다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3 및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이 있을 경우 00시의 의견에 따라 00대학교 전체부지에 대해 지표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실시설계 인허가권은 00시장의 권한이므로, 허가, 조건부 허가 등은 전적으로 00시에서 판단할 사항임

■ 문화재 지표조사 해당 여부

질 의) 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21,703㎡)을 제외한 원지형이 남아있는 추가부지 19,418㎡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미포함 여부

회 신) [2006. 8.]

○ 문화재지표조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는 사업부지 면적이 3만㎡ 이상의 건설사업 또는 3만㎡ 미만은 인·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 법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면적의 정의는 지표의 원형변경 유무와 관계없이 기존에 이미 형질이 변경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사업구역에 포함될 경우 사업부지 전체면적을 말하며 또한 연차시행, 분할 시행, 단계별 시행 등 동일 사업일 경우 전체사업 면적을 말함.

○ 따라서 질의한 사항은 위와 같이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해야하는 대상사업(3만㎡이상)이므로 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21,703㎡)을 제외한 원지형이 남아있는 추가부지 19,418㎡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 30,000㎡기준과 실제 사업시행면적과의 관계

질 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 전면개량이 아닌 현지개량시 단순히 지구면적이 30,000㎡ 이상이라고 해서 실제 사업시행면적과 관계없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되는지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면적이 30,000㎡ 이상이더라도 실제 사업시행면적(도로개설)이 기준 이하인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2006.02.]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동법시행령 제43조의 3(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 2(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의하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임

■ 실제 사업부지/전체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대상 여부

질 의) 00대학교 00동 신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변경 관련,

학교시설 중 실제 사업대상 부지만 지표조사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학교시설 전체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 기존의 지표조사가 실시된 지역은 제외 가능한지 여부, 전체사업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시점을 '00동 신축'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 신) [2006.01.]

○ 지표조사 협의는 실제적인 형질변경 부지 범위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전체(학교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늦어도 당해 사업의 승인 전까지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 첨부한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99.12.30 00대학교박물관)은 우리청과 협의한 사항이 아니므로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보고서상 대상사업지는 입지여건상 선사유적이 부존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지역도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지역에 포함되어야 함.

■ 공유수면 지표조사 대상 여부

질 의) 00시 공유수면 점·사용(1,500,000㎡) 민원 관련 질의

회 신) [2006.09.]

해양수산부 의견조회 결과 위도 36°02' ~ 36°03', 경도 125°45' ~ 125°46' 은 국내법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영해라는 답변을 받음. 따라서 동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제74조의2(문화재지표조사),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건설공사의 범위)에 규정에 의거 지표(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하는 대상사업임

■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단서조항에 의한 사업면적 제외 가능 여부

질 의) 「00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사업예정부지 중 유적분포 가능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이행과 관련,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2의 단서조항(개발 등에 의하여 이미 원형이 변경된 지역은 사업면적에서 제외)규정에 의한 사업면적 제외 가능 여부

* 00도 00군에서 추진하는 『00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지역은 00년도 00댐건설 이후 수몰 지역으로 수십년간 집중우기시 상류지역에서 흘러온 모래, 자갈, 기타 부유물질에 의한 두터운 퇴적층 형성

회 신) [2006.02.]

현행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은 i)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 ii) 절토 또는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 iii)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 등에서 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입증책임을 전제로 개발사업 대상면적에서 이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귀 군에서 추진 중인 「00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비록 사업 대상부지가 1937년에 건설된 00댐 영향권 내의 수몰지구(두꺼운 퇴적층 형성지역)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댐 건설 당시 문화재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층의 훼손 유무가 불분명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가항’의 적용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됨.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유적분포 여부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개발사업 면적에서 이를 일괄 제외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기 통보해 드린 문화재 보존대책에 의거 발굴조사 등이 빠른 시일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지표조사 “사업면적”의 정의

질 의) 다음의 경우 사업면적 30,000㎡이상으로 지표조사 대상사업 해당 유무

- 대지면적 78,054㎡(지적공부상 전체면적), 공장용지면적 10,226㎡, 진입로면적 5,638㎡, 건축면적 1,335㎡

회 신) [2007.09.]

사업면적은 지표의 원형변경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전체 면적임.([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따라서 위 사업면적엔 사업구역 내 녹지, 공원부지 등이 포함됨. 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은 해당 사업 인·허가시에 제시되는 전체사업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원형변경되는 면적이 3만㎡ 이하인 수목원사업의 지표조사 대상 여부

질 의) 수목원 사업부지의 총면적은 102,436㎡, 사업구역(형질변경면적) 4,957㎡, 나머지 97,479㎡는 지표의 원형변경을 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수목을 식재함. 수목원이란 산림과 수목을 보전, 육성하는 사업인 바 관목림, 교목림, 침엽수림 등으로 구획을 하지만 수목원 및 산림형태의 특성상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이식은 이루어지지 않음.

원형변경이 변경되는 면적은 사업구역내(4,957㎡)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6호를 적용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되는 지 여부

회 신) [2007.08.]

1. 실시하시고자 하는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3 1호에 의해 지표조사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함.

2. 다만,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지역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3 2항6호에 의해 다음을 조건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조건 : 산림청장이 고시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해 실시할 것.

○ 근거 :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1.

3. 위 2.에 의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라도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위 2.에 의한 지역을 제외하고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유 :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2항 및 별표1에 의해 지표의 원형이 이미 훼손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지표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대상부지로 판단하여야 함.

■ 문화재보호법 제43조의3제1항 제1호 ‘토지’의 개념

질 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제1호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임. 위의 시행령에서 “토지”의 범위

회 신) [2006. 6.]

‘토지’의 개념은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을 말하며,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관천지.염전.학교용지.잡종지 등임

■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지표조사 대상 여부

질 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여부

회 신) [2007.09.]

해당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업부지 중 기존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지역을 제외한 잔여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30,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할 것.

■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기존 지표조사 시행지역의 재시행여부

질 의) 하수관거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지표조사 대상범위에 해당되어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임.

1. 기존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했던 지역의 경우 다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지표조사보고서에 그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사업구역내 굴착을 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하수관을 보수시 문화재지표조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굴착을 하지 않으므로 원형 훼손 없음)
4. 포함된다면 지표조사보고서에 그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2006.01.]

- 1.2. 기존에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지표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성은 없지만, 기존 보고서 발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함. (일부지역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3. 4. 사업의 굴착여부에 관계없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그러나 공사방법에 따라 유적의 훼손가능성이 없다면, 문화재보존대책 수립시 이를 참고할 수는 있을 것임. 물론 이때는 공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 2,000평 이하인 토취장의 지표조사 대상 여부

질 의) 2000평 이하인 토취장 허가에서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인근마을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었는데 주변면적에 상관없이 인근지역이면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회 신) [2006.01.]

2000평 이하인 토취장 허가시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판단토록 하고 있으나,동 사업은 기 실시한 골재채취장(3만제곱미터 이상)을 복구하기 위한 토취장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질의사항은 주변문화재와 관계없이 2000평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므로 토취장에 대하여 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 골재채취 허가시 채취장과 토취장 구분하여 지표조사 대상 선정 여부

질 의) 골재채취허가시 골재를 채취하는 채취장과 복구할 흙을 공급하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허가신청을 하고 있음. 여기서 당해공사지역에 채취장과 토취장을 구분하여 면적이 3만이상일때 지표조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채취장과 토취장을 무조건 하나의 공사지역을 묶어서 3만이상이면 지표조사 대상인지

회 신) [2005.12.]

골재채취허가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건설공사의 범위)6호의 관련으로 동법시행령제43조의3(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제1항에 의거 동일한 목적으로 인한 사업일경우는 합한 공사면적이 3만㎡이상일때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함

▣ 벌채시 지표조사 실시 여부

질 의) 문화재보호법제74조의 2, 같은법시행령제29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의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입목.죽의 식재 및 벌채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게 되어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지표조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함

1. 산림법제9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85조, 제87조, 제94조 규정에 의한 벌채가 있는데
가.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벌채(예 어린나무가꾸기, 숲아베기, 천연림보육작업)도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벌채수량 및 재적에 관계없이 해당되는지 여부
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도 3만제곱미터 이상일경우 벌채수량 및 재적에 관계없이 해당되는지 여부
다. 수확을 위한 입목벌채(벌기령벌채, 골라베기)도 수량 면적에 관계없이 3만제곱미터이상일 경우 해당 여부

회 신) [2005.12.]

면적이 3만^m 이상의 조림사업을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제1항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으로 질문하신 모든 사항에 해당하며, 반드시 사업전에 시행하여야 함. 또한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9조의2(건설공사의 범위)5호의 관련으로 동법시행령제43조의3(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제1항에 의거 동일한 목적으로 인한 사업일 경우는 합한 공사면적이 3만^m이상일때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 조림사업의 경우 ‘연접’의 의미

질 의) 문화재보호법제74조의2,동법시행령제29조의2,제43조의3규정에 따르면 30,000^m이상일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게 되어있고,이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하는경우도 포함되게 되어있으나, 연접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1. 동일한목적의 사업(조림)이 4필지에 걸쳐 각필지마다 지번경계선을 경계로 2.9ha를 조림하는경우 연접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동필지에 2.9ha를 두군데 일정거리를 두고 조림하는 경우 연접에 해당되는지 여부?
3. 2의경우 연접일 경우 어느정도의 거리까지 연접으로 봐야하는지

회 신) [2005.12.]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3(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및 범위)제1항은 동일한 사업 내용을 분할, 분리하여 법적용을 회피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질의하신 1항은 지번이 연접되어 있는 경우이며, 또한 2항은 같은 지번에 행하는 사업으로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적용 받음

■ 원래 지표를 훼손하지 않고 복토 건설행위시 지표조사 제외 여부

질 의)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범위표시유적내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이 지역이 이미 복토가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시행령43조의 2항 4호에 의거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개념이 원래의 지표 이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래의 지표를 훼손하지 않고 복토된 범위에서만 건설행위를 한다면 발굴을 하지 않고 건설행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2006.03.]

복토된 지역으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음.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포괄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야 판단할 사항임. 아울러 복토가 되어 있더라도 복토층이하에 파일(기초)및 지하층이 설치될 경우에는 대부분 지표조사대상이며, 유물산포지에 포함될 경우에는 건설공사 전에 발굴등이 선행되어야 함.

■ 기 절토된 재경지정리지구도 지표조사 시행 여부

질 의) 대구획(재)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700,000m² - 1,300,000m² 입니다. 금년 뿐이 아니고, 매년 이정도 규모의 경지정리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사업대상 지구는 80년대 전후 아니면 그 이전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절토 또는 굴착이 이루어진 지구로서, 영농편익을 도모코자 경지면적을 대규모화하고,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3 조항에 따르면 "절토또는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는 지표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기 절토 또는 굴착이 실시되었던 재경지정리지구도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지?
2.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식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회 신) [2006.06.]

문화재보호법제43조의3(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의 제②항2호 및 4호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예정지역은 절토 및 굴착등으로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으로 판단하고, 이에대한 객관적 입증 내용(정도)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절토 및 굴착이란 지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로 기존의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시 이미 원지형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문화재보호법제43조3의제②항4호(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사항이 귀하가 행하는 사업내용에 포함되므로 80년대 경지정리시 도면 및 관련서류등을 첨부하여 입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절토 및 굴착지역도 동일함)

■ 일반사업과 지표조사를 공동수급계약 가능 여부

질 의) 종전의 문화재지표조사는 발주처에서 문화재지표조사를 일반사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발주처와 문화재지표조사기관 간에 직접 용역계약체결하여 수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00에서는 상기용역을 발주하면서 일반사업과 문화재조사를 함께 하여 공동수급방식으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2. 이러한 방식의 지표조사를 할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회 신) [2005.12.]

문화재 지표조사는 방법및 절차 등에 대해서만 매장문화재 조사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2005.10.13)하였으며, 계약에 관한사항은 지표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의 사인간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지침 등 관련사항을 고시한 경우는 없습니다.

■ 사업승인 전 문화재 보존대책의 시기

질 의) 본 사업시행지역은 2004년 발굴조사기관에서 기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라 개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두번째 접수되어 문화재관련 협의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표조사 결과 사업지역내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시행부서에 확인한 결과, 발굴조사 대상지역의 대부분이 공원지역으로 인가시 결정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로 발굴조사 시점을 잡고 계획중에 있다고 하는데,

1. 개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협의시 발굴조사 지역만 해당되지 않으면 승인에 문제가 없는지?
2. 지표조사의 완료시점은 발굴조사까지 끝나는 시점이 되는건지?
3. "별도의 공원조성계획 수립시로 발굴조사 시점을 잡고 계획중에" 이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에 재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등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회 신) [2006.07.]

1. 사업승인은 시.도및 해당 지자체 권한으로 우리청과 관계없음. 다만 발굴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유적의 중요도에 따라 일부 지역이 보존될 수도 있어 그에 따른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도 있음

2.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는 다름. 단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보존대책이 통보되며, 그결과 발굴조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발굴허가를 받아야함.

3. 공원조성계획이 발굴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발굴허가를 득한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함.

■ ‘사업계획수립시’의 공사착공전 또는 건축허가전 여부

질 의) 문화재보호법제74의2제1항에서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1) 사업계획수립시라는 것은 당해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전까지만 지표조사 및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전에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하는지요?

질의2) 사업계획수립(건축허가)시에는 지표조사만 실시하고 지표조사에 대한결과조치는 당해공사를 시작하는 공사 착공전까지만 하면 되는지요?

회 신) [2007.01.]

1) 문화재 지표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 수립) 수립을 위한 입지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지표조사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음

2)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토록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및 협의시기가 규정되어 있음

발 굴 조 사

Q 발굴기관 좀 구해주세요.

A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제발굴은 사인간 계약에 의한 용역입니다. 허가를 하는 정부기관이 용역 계약에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며, 이는 건축허가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건설업자를 소개시켜주는 것과 유사한 경우입니다.

Q 토지 수용이 다 되지 않았는데, 발굴허가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발굴허가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시행자의 사업진행 편의 측면에서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를 80~90% 이상 확보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검토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모자라는 부분은 이행 각서(확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Q 문화재청의 조치 전이라도 발굴 끝난 부분 먼저 공사하면 안되나요?

A 발굴한 유적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공식적 조치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현장 발굴기관이나 지도위원회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문화재청의 완료조치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받고 그 조치내용에 따라 시행하셔야 합니다.

Q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결과 발굴지역이 아닌 지역은 공사해도 되나요?

A 공사를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사로 인해 사업지구와 인접한 문화재와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Q 발굴 후 현장복구비를 사업시행자가 내야 하나요?

A 사업시행자는 발굴을 허가받은 자이므로 유적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현장복구 주체를 별도 명시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Q 산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A 별도의 법령에 의한 허가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Q 발굴이 안 끝났는데, 분양(아파트, 택지 등)해도 되나요?

A 토지·건물의 분양은 지자체 인허가권자의 권한이므로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 분양하는 경우 발굴 결과로 유적이 보존되면 분양받은 자의 재산상 손실이 우려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Q 매장문화재의 이전복원이 필요할 경우, 이전복원을 시행할 업체는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해야 하나요?

A 현행법에 이와 관련하여 시행기관자격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전복원할 때 설계도 서작성 및 조정계획, 보존처리 등이 수반되므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포함한 적정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소규모발굴을 지원받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해야 하나요?

A 소규모 발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근거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6조를 보면, 각각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규모발굴비 지원대상>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공장(㎡)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792	264	2,644	1,322	792	264	2,644	1,322

- 그러므로 발굴비를 지원받고자 하시면 위 표에 의한 지원면적에 해당됨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제1조건으로 대지면적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우선 토지대장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면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지분할은 가능하지만, 「건축법」 제49조(대지의 분할제한)에 의해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의해 분할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자체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면, 관련법에 근거하여 토지분할하면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에서 정한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은 토지가 소규모발굴비 지원대상 면적이 되어야 합니다.
- 다시 정리해 보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지원대상면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토지분할을 해서 “대지” 또는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인정받은 대지면적이 지원대상면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Q 발굴할 시점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나, 발굴 완료 후 건축물이 완공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임을 이유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A 소규모발굴은 건축인허가신청시의 기재내용을 우선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에 건축물 용도가 개인사업의 범주에 해당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 임대업자로 등록할 사람이 건물 임대를 위해 발굴하고자 할 경우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A 임대업(주택임대, 건물임대)도 개인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신청시 소규모 발굴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지원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소규모 발굴 사업면적 근거를 어떻게 증명하죠?

A 「건축법」에 의해 인허가신청시 제출한 도서 또는 인허가를 받은 도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서에는 대지면적, 건축면적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대장이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인정받았을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건축법」 제9조에 의해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건축물의 설계)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허가대상”과 같이 사전에 건축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작성한 도서를 먼저 제출하여 지자체에서 소규모발굴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완료한 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 발굴허가 신청시의 사업면적과 일치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민원회신 예

■ 문화재 발굴조사 실시시기 및 공장승인 처리 여·부

질 의)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유적이 확인될 경우 이의 처리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할 것”회신과 관련, 공장 설립승인 절차의 시기

갑론) 공장승인 등 인·허가 처리 후 토지 형질변경 전 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는 동안 개별법 개정으로 공장설립이 불가할 수도 있는 바 민원편의를 위하여 조건부로 공장승인 처리

을론) 공장승인 등 인·허가 전 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 공장승인후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 문화재가 발굴되어 공장설립 등의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발굴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에 따라 공장승인 처리

회 신) [2007. 7.]

문화재보호법상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발굴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다만, 조사 본연의 목적(개발사업으로부터 매장문화재의 사전보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착공 전에는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인허가 혹은 조건부 인허가 여부는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등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발굴조사용역 학술료 지급 여부

질 의)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학술료 지급 여부

회 신) [2007.11.]

발굴조사의 용역사항은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 국세심판원 판결은, 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발굴조사용역이 포함되는 지를 가리기 위한 유권해석으로 판단됨.

따라서 위의 국세심판원 판단만으로 현재의 발굴조사 담당기관(재단)이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거나, 그 발굴조사 행위가 학술행위가 아니라는 식의 단순 확대 해석은 현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그러므로 발굴조사를 위한 조사용역대가기준 상의 학술료는 위의 국세심판원 판결과는 별개로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됨

■ 개발사업지구 내 원형보존지역에서의 문화재 발굴조사 여부

질 의)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지구내에서 지표의 원형이 보존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시·발굴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이나 녹지로 토지의 원형을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발굴 조사를 하도록 하면 시·발굴을 위한 벌목 등으로 공원이나 녹지를 훼손하게 되므로 불합리함.

회 신) [2007. 8.]

○ 사업시행자는 각종 건설공사(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해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이 조사하여 제출한 지표조사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 문화재청에서는 지표조사 결과 중요한 유적이 있는 경우 보존대책을 통보하면서, 사업계획서상 보존지역이 아닌 유물산포지나 유적 등의 경우에는 발굴조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이 경우, 타법령에 의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으로 원형보존되는 경우에는,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전제하의 공원이나 자연녹지로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 원형보존 원칙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발굴조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다만, 해당 지역에서 지표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도로,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발굴조사 경비 항목별 질의

질 의)

1. 문화재 발굴시 조사요원 단가외에 여비, 식비, 일비 까지도 포함하여 지급하는지
2. 200-300명 규모의 발굴에도 반드시 항공촬영을 하여야 하는지
3.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발간하여야 하는지, 발간시 형태의 기준, 의무주체, 발간부수 등 법적 기준은
4. 학술료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 법적근거는
5. 현장인부 중 특별인부란, 인건비 단가 및 반드시 투입하여야 하는지
6. 현장보통인부의 1일 단가는
7. 발굴소요경비의 분석비용이 필요한지 이에 따른 의무주체, 법적 규정 등
8. 개인사업장 설치를 위한 공사 중 발굴된 유물의 처리 규정은
9. 기 발굴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한 발굴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사업장 선정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 내용을 오인하고 추진한 사항에 대한 사후 법적 처리 방법은

회 신) [2007. 2.]

1. 조사요원 단가외에 여비, 식비, 일비 포함 여부 : 문화재 발굴시 여비, 식비, 일비의 계상 등은 문화재보호법 제45조2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매장문화재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항목중 「직접경비」에 명시되어 있음
2. 항공촬영 여부 : 발굴조사에 필요한 항공촬영 등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대가의 기준 「직접경비」 4항의 위탁비 항목에 명시되어 있음
3. 결과보고서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후 간행되는 발굴조사 보고서는 동 법 제 44조의2항에 의거 법적으로 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발간 형태는 통상적으로 책자로 발간하고 있음.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굴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같이 허가받는자가 간행하여야 하고, 발간부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500부를 기준으로 발간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4. 학술료 : 발굴조사에 따른 비용은 문화재보호법 제45조2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매장문화재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참고
5. 현장인부 중 특별인부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대가 기준에 의거 직접경비 항목에 현장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할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특별인부의 고용은 해당기관과 협의할 사항
6. 현장보통인부의 1일 단가 : 물가정보지를 참고
7. 발굴소요경비의 분석비용 : 문화재보호법 제45조2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매장문화재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참고
8. 발굴된 유물의 처리 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의거 발굴조사 허가를 득한 후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출토된 유물에 대하여는 동 법 제48조에 의거 관련 규정을 거친 후 국가에 귀속하고 있음
9. 사후 법적 처리 : 정확한 내용(관련 자료 등)이 없어 답변드리기는 어려움

■ 발굴허가신청서상 법령 등 해석

질 의)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발굴허가신청 가능 여부 등

회 신) [2006.01.]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발굴허가신청 가능 여부 : 불가함
- 승낙서 없이 신청하였을 경우 허가 가능 여부 : 불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발굴허가 신청 반려 권한 여부 : 계획을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법 또는 규칙 등에 정해진 사항이나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반려할 수 있을 것임
- 군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신청을 하는지 여부 : 승인사항 아님
- 당해지역 공장 건설시 3자의 발굴요청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발굴허가의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해야함(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발굴조사 불가)

■ 건물 철거 30% 상태에서 발굴조사 가능여부

질 의) 지상가옥 철거가 30% 가량 완료 (850동 중 260동)된 상태에서 시·발굴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2007.09.]

문화재보호법령상 지상가옥 철거여부는 발굴허가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굴허가 여부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발굴허가는 가능하나, 실제 발굴현장에서 조사기관의 조사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발굴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발굴허가는 취소되고 재허가를 받아야 됨.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시굴조사 실시 여부

질 의) 2003년 ○○대학교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대학원관 증축)에 따라 학교 전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원 건물과 대강당 동편 대지에 대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금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기숙사 증축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기숙사부지에 대하여도 별도의 시굴조사를 또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신) [2006.12.]

당초 ○○대학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상 대학원관, 대강당부지, 대강당 동편과 청과동 2가 00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구조물 철거가 끝난 후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기통보(03.10)한 바 있음.

따라서 기숙사 증축 위치가 상기 지번에 포함될 경우 유적의 분포 확인을 위해 문화재보호법령이 정한 별도의 절차에 의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중요 유적 확인시 이의 처리방안을 우리청과 사전 협의토록 함.

출 토 유 물

Q 매장 문화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발 사업에서 굴착행위 도중 지표면 또는 지하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단하고 지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상을 보존하고 가까운 관공서 (해당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 또는 경찰서)에 습득한 매장문화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받은 기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견신고자에게는 문화재의 가치를 감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닉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견이란 우연한 기회에 드러난 문화재를 찾은 것을 말하며 땅속에 있는 것을 일부러 파내어 신고하는 것은 도굴에 해당됩니다.

Q 출토유물 소유자 입증기간은 공고기간 7일과 별도인가요?

A 소유자를 입증하는 기간은 공고 시작일로부터 산정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산정되지 않고 출토유물 소유자 입증기간은 공고기간인 7일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Q 출토유물 국가귀속을 보고서로 신고할 때 기한연장할 수 있나요?

A 현재 발굴조사보고서는 조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간하도록 되어 있고 사유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 승인 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귀속을 위한 보고서 제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Q 국가귀속 완료후 유물보존처리 중에 수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추가신고 해야 하나요?

A 유물 보존처리를 임시보관기관(발굴조사기관)이 하는 경우, 국가귀속 완료 후 유물보존처리 중 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수량으로 파악하지 말고, '수량 정정 신고'를 문화재청에 하고, 문화재청은 보관관리기관에 '수량 정정 통보'합니다.

Q 국가귀속 되기 전 유물은 대여할 수 있나요?

A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에는 국가귀속 완료 후의 유물 대여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귀속 조치 되기 전 임시보관중인 문화재는 보존처리, 보고서 작성, 국가귀속 절차 이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타기관에 대여를 금지합니다.

다만, 발굴 문화재에 대한 신고 및 공고가 이행되고, 그 결과 소유권 주장자가 없는 유물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대여한 유물은 반드시 국가귀속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국가귀속 문화재 위탁기관의 범위 질의

질 의) 현 도립박물관이 민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국가귀속문화재의 위임위탁기관으로서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적격인지 여부

(갑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로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 속한 박물관 및 전시관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임

(을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뜻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님

회 신) [2007. 9]

도립박물관은 도에서 직접 설립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인 반면, 신설되는 기관은 민법에 의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되기는 하나 국립 또는 공립 기관이 아닌 사립박물관 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됨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 (“관리”)하는 기관에 한하여 국유문화재를 위임,위탁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사립박물관인 신설 법인은 위임 위탁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신설되는 법인은 도립·공립박물관이 아닌 사립 박물관이므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국유문화재 위임,위탁기관이 될 수 없음. 다만, 신설되는 법인에게 국유문화재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령에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자기 소유 토지 내 발견문화재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질 의) 민원인이 지난 2007년 4월 18일 밭갈이를 하던 중 옹관동체부가 함몰되어 지하에 매장된 옹관을 발견하고 우리시에 유선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긴급수습조사를 실시하였음

민원인은 유선신고를 근거로 문화재보호법 제54조 및 동법 제61조 및 유실물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볼 때 보상금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문화재청 확인 결과 담당자로부터 발견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 민원인의 발견신고가 문화재보호법 제54조규정에 의거한 발견신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해당될 경우 적절한 조치 방안.

○ 문화재보호법 제67조규정에 의거한 포상금 지급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 및 해당될 경우 적절한 조치 방안.

회 신) [2007.10.]

○ 민원인의 발견신고가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의한 발견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문화재보호법 제61조 제4항은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발견 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56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57조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민원인의 발견신고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법 제57조에 기하여 발굴하게 되었으므로 “발견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 당해사항이 문화재보호법 제67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문화재보호법 제84조 제2항은 “문화재청장은 제6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 행위는 발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기 타 사 항

Q 대가기준에서 '대가의 조정'이 국가계약법을 따르도록 한 조항이 조사용역대가의 계약 방법을 국가계약법에 한정된 것인지 여부(갑을간 도급계약체결을 봉쇄하는지 여부)?

A 계약자유 원칙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 가능하며 문화재보호법 제58조는 문화재청장은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대해서만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대가기준 제9조가 계약의 방법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만 일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의도였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문제 발생합니다.

※ 참고로, 계약자유 원칙 제한은 계약의 성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서 계약의 효력을 제한할 경우, 법률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이 별도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제9조는 계약자유 원칙에 따르되, 정산계약으로서 대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를 수 있는 예시조항으로 조사기관이 신기술을 도입, 조사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조사기관 보호를 위해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조사기관 보호의 측면이 있습니다.

Q [별표2]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가 4대보험 등을 반영한 것인지 여부?

A 조사용역대가 기준은 조사기관과 조사원간 근로관계를 규율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 용역대가의 기준에 불과합니다(*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 용역계약과 근로계약간 1:1의 대응관계는 불성립).

- 따라서 조사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비용총량(lump sum) 근거이지 조사원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아니므로 4대보험을 반영했다거나 반영하지 않았다거나의 논리는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 보고서 발간기준

질 의)

1. 지침에 의한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및 제출 부수(500부)에 대한 근거
2. 기준부수(500부)를 초과하는 보고서발간비의 사업 시행자 부담원칙 적용의 적정성 여부와 보고서 발간에 따르는 비용의 처리방법
3.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5-74호(2005.10.19))상에는 지표 조사 보고서 발간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 V-7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2006. 9.]

1. 제출 부수(500부)에 대한 근거 : 보고서의 발간부수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지침서에 그 기준을 500부로 한 것은 보고서의 공공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며, 2005년 당시의 공공도서관 수(487개, 통계청)를 근거로 하였음.
2. 보고서 발간비용의 처리방법 : 보고서 발간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그 부수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보고서 발간부수·비용 등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결과의 학술적 이용 등을 감안하여 계약 당사자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3. 지표조사 보고서 발간 기준 :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 V-7은 발굴조사보고서에 대한 지침이므로 지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의무는 없음.

▣ 발굴조사 통합보고서 발간 방안

질 의) 00읍성 00정비 발굴조사(장기간 진행)의 통합보고서 발간방법

- 1안) 현재의 발굴조사기관에서는 발굴조사자료만을 제공하고 최종 발굴조사기관에서 조사 내용을 취합 통합보고서 제출
- 2안) 발굴조사기관에서 당초대로 각각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발굴조사기관에서 통합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각각의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시 소요예산 중복지출)

회 신) [2006.04.]

보고서 발간은 제시한 1안대로 최종조사기관에서 조사내용을 취합하여 통합보고서 발간. 통합보고서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기존의 조사기관이 최종조사기관에 자료 제공을 성실히 하도록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여 추진함

■ 연차발굴 보고서 적용여부 및 개념 정의

질 의) 00사지 발굴조사(1차 2004-2005, 2차 2005-2006)가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상 연차발굴 적용 여부, 발간 기한은

회 신) [2007. 5.]

연차발굴은 일반적으로 유적정비·복원 또는 순수학술자료 확보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발굴을 의미하며, 동 지침에서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한 발굴조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해 발굴은 연차발굴에 해당됨.

2007.5.7 개정된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처리지침상 당해유적 발굴조사보고서는 2008.12.31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화재 발굴조사, 시굴조사의 의미

질 의) 학술적인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정밀시굴조사의 의미

회 신) [2006.04.]

○ 학술적인 시굴조사와 발굴조사의 의미 : 시굴조사는 시굴구덩이(트렌치)를 구획·설치하여 유구·유물의 정확한 분포범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통 선단위로 이루어짐. 발굴조사는 유적분포지역에 대하여 전면제토하여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고 유물을 수습하는 것으로 보통 면단위로 이루어짐.

○ 학술적인 표본시굴조사 및 정밀시굴조사의 의미 : 이 사항은 시굴조사 방법상의 차이를 의미할 뿐 목적은 동일함. 일례로 유적 분포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밀시굴 방법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표본시굴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문화재 조사 관련용어의 의미

질 의) 문화재 조사(유적지 유물조사, 지표지질조사) 용어의 해석

회 신) [2007.08.]

문화재보호법령에서는 지표지질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특정지역 안에서의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적용

질 의)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 기준 제7조(제경비) 및 제8조(학술료) 적용기준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30~50%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비율의 산정근거 및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조사기관 의견 : 50%, 우리청 의견 : 30%)

○ 학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30%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비율의 산정근거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조사기관 의견 : 30%, 우리청 의견 : 10%).

회 신) [2007.09.]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발주청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경비 및 학술료는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하여 적용하면 될 것임. 다만, 수의 계약인 경우 당해 계약상대자로부터 관련 자료(최근 수년간 급여, 손익계산서 등)를 제출받아 제경비 및 학술료 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유적분포지도 및 CD제작 지침

질 의) 군사지역에 따른 국토지리원 발행 축적1/5,000 지도가 없을 경우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추진 방법은

회 신) [2006. 9.]

○ 위의 축적 지도에 의한 제작을 원칙으로 하나, 없을 경우 지적도를 사용하고, 지적도가 없을 경우에는 그외에 축적 1/5000 지도 표기와 병행하여 참고적으로 1/25000 또는 1/50000지도 사용가능함. 위와 관련하여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 지침을 각시도에 통보하였음

■ 문화유적분포지도 구입 가능 여부

질 의) 문화재위치가 자세하게 나온 지도와 지적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지, 구입이 가능한 지

회 신) [2006. 1.]

우리청에서는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234개 지자체중 112개 지역이 완료된 상태임. 구입과 관련하여 분포지도는 비매품으로 구입은 불가능하며 열람은 문화재청 자료실(042-481-4770) 및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가능함.

■ 문화유적분포지도 데이터 프로그램

질 의) 분포지도가 작성되고 DB가 완료된 후 발주처에 납품을 하게 되면 발주처에서는 분포지도 책자는 책자대로 이용을 하게 되지만 데이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볼 수 있는지요?
실제 데이터는 문화재청으로 보내져 문화재청의 개발 시스템에서 구동이 되겠지만 발주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데이터를 보기위한 어떠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DB구축 부분의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자체에 프로그램을 배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회 신) [2006. 7.]

우리청은 1996년부터 문화재 분포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각 지자체에 국고교부금을 완료하였음.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완료된 자료를 우리청에서 취합및 보완 수정하여 매장문화재 지리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임시적으로 2006년 7월 말경에 공주시및 창녕군 등 5개 시군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을 추진중이며, 향후 전국적 모든 지자체를 공개할 예정임.

소규모발굴비 지원업무

1.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1조2(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매장문화재조사업무처리지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1) 소규모 발굴비용의 지원

시행령 제31조의2	참고사항
<p>○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u>단독주택</u>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u>대지면적</u>은 792제곱미터 이하).</p> <p>-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p>	<p>※ “<u>단독주택</u>”의 범위 「건축법시행령」 [별표1] <u>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u></p> <p>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p>

시행령 제31조의2	참고사항
	<p>(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p> <p>(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p> <p>라. 공관</p>
	<p>※ “대지”의 정의</p> <p>「건축법」 제2조 제1항(정의)</p> <p>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p> <p>「건축법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p> <p>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30, 2002.12.26, 2003.11.29, 2005.7.18, 2006.5.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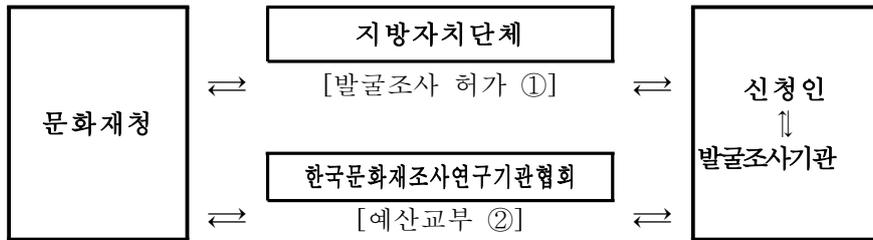
시행령 제31조의2	참고사항
	<p>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p> <p>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p> <p>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p> <p>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4.30, 2002.12.26, 2003.9.29, 2005.7.18></p> <p>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가 있는 부분의 토지</p> <p>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p> <p>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p> <p>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p> <p>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p>

시행령 제31조의2	참고사항
<p>○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u>농업인 또는 어업인</u>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p>	<p>※ “<u>농업인 또는 어업인</u>”의 정의</p> <p>「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 등의 기준)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삭제 <1999.12.28> 3.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개정 1995.6.23] <p>「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1995.6.23]
<p>○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p>	

시행령 제31조의2	참고사항
<p>○ 법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p> <p>-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p>	<p>“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이룸</p>
<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 2,644제곱미터 이하)</p>	<p>※ “공장”의 범위</p>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장의 범위)</p> <p>②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7, 1996.7.19, 1997.7.10, 1999.8.9, 2003.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전문개정 1994.7.4]제3조 (과밀억제지역)
<p>○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p> <p>-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p>	

나. 발굴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당해 회계연도 내 동일인에 대한 동일 목적의 발굴비 지원은 1회에 한함
-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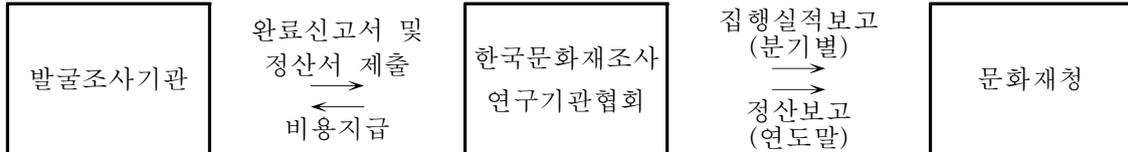


①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민원인)의 소규모주택 등 건설관련 발굴조사 대상여부를 지자체가 판단, 조사 필요시, 민원인에게 발굴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발굴조사기관 안내 - 민원인은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현황([자료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참고하여 지역별 주관기관에 발굴조사 의뢰 - 소규모발굴 주관기관은 우선적으로 조사 추진하되, 자체 추진 어려울 경우 지역 내 다른 조사기관 선정 협조, 민원인에 통보 - 민원인은 발굴조사기관 선정 - 해당 발굴기관은 민원인에게 발굴계획서(발굴비 건적 포함) 제출 - 민원인은 발굴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지자체는 검토후 문화재청 송부
②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은 발굴허가사항을 지자체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인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 요청 - 발굴기관은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와 조사계약 체결(관련 서류 첨부) - 발굴기관은 발굴 착수 및 신고
③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기관은 민원인에 조사결과 완료신고 <p><조사결과 행정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완료신고 (민원인→지자체→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발굴결과 완료신고에 따른 조치통보 (문화재청→지자체→민원인) - 민원인은 문화재청의 조치내용 이행 <p><발굴조사비 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기관은 협회에 정산서 제출, 조사비용 청구 · 협회는 정산서에 대해 검토후(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 후) 발굴기관에 비용 지급, 문화재청에 정산보고(분기별)

[집행절차]



[정산절차]



※ 기타사항은 한문협 홈페이지(http://kcpia.or.kr/sub04/sub04_01.aspx)참고

2)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참 고 사 항
○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 서식]
○ 발굴조사 계획서	업무처리지침 <서식1>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담당공무원이 발굴예정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확인한 토지조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임야)대장을 첨부)
○ 지원대상 증빙서류(단, 「건축법」 제9조에 의거 “건축신고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지자체 건축인허가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 건설공사 행위자와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일치여부 확인 →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검토 ※ 단순 도면첨부는 의미가 없음. 허위서류작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반드시 지자체에 인허가신청시의 도면을 첨부토록 함
-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의 경우,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 비 서 류	참 고 사 항
<p>- 지자체에서 소규모발굴조사를 지시한 근거(관련공문, 인허가부서 협의내용 등)</p>	<p>※※ 「건축법」 제9조에 의거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인 경우(아래 참조)</p> <p>→ 이 경우, 「건축법」 제19조(건축물의 설계)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허가대상”과 같이 사전에 건축연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검토 불가</p> <p>→ 그렇지만, 건축행위 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29조(건축물대장)에 의해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한 현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완료조치 시 차후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제출토록 사후관리가 필요함.</p> <p>※ 「건축법」 관련조항</p> <p>「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p> <p>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 삭제 <2005.11.8>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p>② 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p>

구 비 서 류	참 고 사 항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 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07.1.3></p> <p>「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p> <p>① 삭제 <2006.5.8></p> <p>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3.8.9, 1994.5.28,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2.12.26, 2005.7.18, 2006.5.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 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 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 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 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 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 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 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 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의 축사·작물재배사 <p>③ 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구 비 서 류	참 고 사 항
○ 기타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임야)조서로 같음할 수 있음 · 필요시 대상지의 토지수용(동의)율 부족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 대책 첨부
-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조사갱의 배치 등이 표시된 도면(지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지역 전경사진 포함
○ 필요시 해당 지자체 장(시·군·구청장)의 발굴필요성, 유적보존 의견 등 의견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지표, 발굴 기관)

(2007. 12월 현재)

연번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1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02)961-0141	(02) 961-9222
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40-71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8번지	(02)709-2185-6	(02) 792-4258
3	동국대학교 박물관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02) 2260-3462	(02) 2260-8783
4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156-74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11번지	(02) 820-0752	(02) 823-4733
5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02) 3277-3152	(02) 3277-3153
6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2-2번지	(02)3011-2170~3	(02) 566-6314
7	한양대학교 박물관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02) 2220-1390	(02) 2220-1836
8	서울대학교 박물관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번지	(02) 880-8091	(02) 874-3999
9	육군박물관	139-79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사서함 77-1호	(02)2197-6450-2	(02) 976-6454
10	(재)불교문화재연구소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21번지	(02) 735-9944	(02) 735-9974
11	(재)중앙문화재연구원	137-0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95-18번지	(02)537-3212 (042)933-2700	(02) 537-3238
12	(재)고려문화재연구원	110-09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11-1번지 부귀빌딩 202호	(02) 720-4181	(02) 720-4185
13	세종대학교 박물관	143-74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02) 3408-3412	(02)3408-3075
14	연세대학교 박물관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02) 2123-3335	(02) 365-2667
15	국립중앙박물관	140-0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번지	(02) 2077-9000	(02) 2077-9479
16	(재)한백문화재연구원	133-1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71-48번지 서진빌딩 2층	(02)465-6300~2	(02) 465-6303
17	서울역사박물관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번지	(02) 724-0101	(02) 724-0246
18	건국대학교 박물관	143-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02)450-3881~2	(02) 452-3095
19	(재)한강문화재연구원	131-2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486-1번지 우암빌딩 5층	(02) 493-8770	(02) 493-8773

연번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20	(사)한국미술사연구소	10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0-10호	(02) 2260-3426	(02) 3673-3425
21	동아대학교 박물관	602-714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051)240-2671~2	(051) 240-2673
22	동의대학교 박물관	614-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번지	(051)890-1741~4	(051) 890-1747
2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608-812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48-1번지	(051)624-6341~4	(051) 624-6368
24	부산대학교 박물관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051) 510-1838	(051) 581-2455
25	북천박물관	607-020	부산광역시 동래구 북천동 50번지	(051) 554-4264	(051) 554-4265
26	(재)한국문물연구원	604-829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10-5번지	(051) 206-4201	(051) 206-4203
27	경성대학교 박물관	608-73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314-79번지	(051) 620-4472	(051) 627-8875
28	경북대학교 박물관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3동 1370번지	(053)950-6536-7	(053) 950-6746
29	계명대학교 박물관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053) 580-6993	(053) 580-6995
30	국립대구박물관	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0번지	(053) 768-6052	(053) 763-0668
31	(재)대동문화재연구원	704-75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031-9번지	(053) 628-0046	(053) 628-0047
32	인하대학교 박물관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032) 860-8260	(032) 876-8260
3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406-0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25번지	(032) 832-2152	(032) 834-0391
34	국립광주박물관	500-150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83-3번지	(062) 570-7020	(062) 570-7015
35	전남대학교 박물관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번지	(062) 530-3584	(062) 530-3589
36	조선대학교 박물관	507-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062) 230-6130	(062) 232-4006
37	(재)호남문화재연구원	506-458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823-1번지	(062) 943-3640	(062) 943-3641
38	국립문화재연구소	305-380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472번지	(042) 860-9114	(042) 861-4924

연번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39	국립중앙과학관	305-70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2-2번지	(042) 861-0496	(042) 601-7862
40	대전보건대학교 박물관	300-711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77-3번지	(042) 670-9120	(042) 670-9124
41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	(042) 629-7697	(042) 629-8254
4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042) 821-6301	(042) 822-0212
43	대전대학교 건축문화연구소	300-716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번지 대전대학교건축학과	(042) 280-2717	(042) 280-2719
44	울산대학교 박물관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산29	(052) 259-2634	(052) 259-2634
45	(재)울산발전연구원	683-80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번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52) 289-8558	(052) 289-8668
46	(재)울산문화재연구원	689-805	울산광역시 울주군 연암읍 반천리 241번지	(052)254-5451-2	(052) 254-5453
47	경기문화재단부설기전문화재연구원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번지	(031) 898-7990	(031) 898-7991
48	명지대학교 박물관	449-72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38-2번지	(031) 330-6074	(031) 330-6674
49	수원대학교 박물관	445-7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번지	(031) 220-2341	(031) 220-2198
50	토지박물관	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공사 1층	(031) 738-7870	(031) 738-8895
51	한신대학교 박물관	447-791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번지	(031) 370-6594	(031) 372-1882
52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426-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번지 한양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내	(031) 400-5021	(031) 438-5073
53	용인대학교 박물관	449-714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470번지	(031)330-3001-2	(031) 336-8778
54	(재)세계도자기엑스포 조선관요박물관	464-873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산26-9번지	(031) 797-0623	(031) 797-0740
55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번지	(031)980-7801-2	(031) 980-7781
56	(재)기호문화재연구원	456-831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92-1번지 현대빌딩 2층	(031)675-0511-2	(031) 675-0514
57	경기도박물관	449-90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번지	(031) 288-5300	(031) 288-5379

연번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58	주택도시박물관	463-7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내	(031)738-3107 (031)738-3903	(031) 738-3669
59	(재)한국국방문화재연구원	483-030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55-4번지 2층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646번지 금강리 빈스텔 332호	(031) 859-2552	(031) 859-2562
60	(재)한울문화재연구원	440-85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7-2번지 영림프라자 2층	(031) 271-5190	(031) 271-5199
61	강릉대학교 박물관	210-70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번지	(033)640-2594-6	(033) 640-2593
62	(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0-9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11-5번지 3층	(033)263-6457-8	(033) 263-6459
63	한림대학교 박물관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번지	(033)248-2851~3	(033) 252-1826
64	(재)강원문화재단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	200-02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봉의산길 33번지 (구 봉의동 4-9번지)	(033)249-5645~7	(033) 256-5648
65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20-710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34번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033) 760-2732	(033) 760-2733
66	강원대학교 박물관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번지 (효자2동 192-1번지)	(033)250-8075-8	(033) 242-4464
67	관동대학교 박물관	210-701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522번지	(033) 649-7850	(033) 649-7550
68	국립춘천박물관	200-93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산27-1번지	(033) 260-1537	(033) 260-1529
69	충북대학교 박물관	361-7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043)261-2901-2	(043) 273-0009
70	충주대학교 박물관	380-702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123번지	(043) 841-5095	(043) 841-5697
71	충청대학교 박물관	363-792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330번지	(043)230-2551-2	(043) 230-2559
72	(재)중원문화재연구원	361-8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738번지	(043) 274-8865	(043) 274-8867
73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360-03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1번지	(043)258-5811~3	(043) 258-5814
74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361-81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북명동 890번지	(043)264-4191~3	(043) 264-4194
75	국립청주박물관	360-19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87번지	(043)252-0710 (043)255-1632	(043) 255-1633
76	국립공주박물관	314-020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041) 850-6300	(041) 850-6329

연번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77	공주대학교 부속박물관	314-701	충청남도 공주시 신광동 182번지	(041) 850-8733	(041) 854-2744
7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302-80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28-4번지	(041) 833-0305	(041) 832-1384
79	국립부여박물관	323-806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16-1번지	(041) 833-8563	(041) 834-3193
80	(재)충청문화재연구원	314-92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33번지	(041) 856-8586	(041) 856-8587
81	(재)충청남도역사문화원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산20-10번지	(041)856-8662 (041)856-0672	(041) 856-0675
82	한서대학교 박물관	356-706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번지	(041) 660-1248	(041) 660-1309
83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323-812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041)830-7151~2	(041) 830-7195
84	(재)백제문화재연구원	323-805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6-1	(041)836-7211~2	(041) 836-7272
85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336-708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번지 선문대학교고고연구소	(041) 530-2434	(041) 530-2911
86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339-700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 서창리 208번지	(041)860-1913 (041)860-1269	(041) 865-8910
87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323-806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경림사길 36번지	(041)832-1721	(041) 837-1721
88	군산대학교 박물관	573-701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68번지	(063)469-4191~3	(063) 469-4194
89	전북대학교 박물관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번지	(063)270-3488~90	(063) 270-3487
90	국립전주박물관	560-8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900번지	(063) 223-5652	(063) 224-0799
91	전주대학교 박물관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장동3가 1200번지	(063) 220-2158	(063) 220-2466
92	(재)전북문화재연구원	566-823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132번지	(063) 241-5897	(063) 241-5896
93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570-749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34-2번지	(063) 850-5567	(063) 850-5557
94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520-714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061) 330-4000	(061) 330-4001
95	목포대학교 박물관	534-729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번지	(061) 450-2934	(061) 450-2933

연번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96	순천대학교 박물관	540-742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315번지	(061) 750-5041	(061) 753-1329
97	국립해양유물전시관	530-380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8번지	(061)270-2000 (061)270-2013	(061) 270-2080
98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520-952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147-1번지	(061)337-9960~1	(055) 337-9962
99	(재)마한문화연구원	540-964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593-6번지 동협봉화지점 2층	(061)727-8362~3	(061) 727-8361
100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519-832	전라남도 화순군 도고면 천암리 812번지	(061) 374-9300	(061) 374-9399
101	(재)전남문화재연구원	520-090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동 138번지	(061)334-8364-5	(061) 333-8367
102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712-90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240-4번지	(053)602-5433	(053) 602-5435
10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780-410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931번지	(054)777-8830	(054) 777-8893
104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053)850-5622~3	(053) 850-5629
105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박물관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054)770-2461	(054) 770-2464
106	영남대학교 박물관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번지	(053)810-1706-7	(053) 810-4716
107	(재)영남문화재연구원	718-912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번지	(054)971-8085	(054) 971-8083
108	위덕대학교 박물관	780-71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525번지	(054)760-1250~3	(054) 760-1259
109	대구한의대학교 박물관	712-715	경상북도 경산시 유곡동 290번지	(053)819-1148	(053) 819-1275
110	경북과학대학교 박물관	718-852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159번지	(054)972-9796	(054) 972-9795
111	동양대학교 박물관	750-711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1번지	(054)630-1264	(054) 630-1281
112	(재)성림문화재연구원	780-944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620-346번지	(054)741-2832	(054) 741-2834
113	(사)대경문화재연구원	712-837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25-3번지	(053)851-8954	(053) 851-8955
114	대가야박물관	717-801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460번지	(054)950-6070~3	(054) 955-1148

연번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115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780-230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119-2번지	(054)777-3101~2	(054) 777-3103
116	경주대학교 박물관	780-712	경상북도 경주시 효현동 산42-1번지	(054) 770-5082	(054) 748-7921
117	안동대학교 박물관	760-749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388번지	(054) 820-5248	(054) 820-6129
118	국립경주박물관	780-150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6번지	(054) 740-7518	(054) 740-7545
119	(사)경남고고학연구소	660-911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851번지	(055) 744-4704	(055) 744-3705
120	경남대학교 박물관	631-701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449번지	(055) 249-2924	(055) 243-9321
121	(재)경남문화재연구원	641-832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6-37번지 동림빌딩 5층	(055) 264-1777	(055) 264-1797
122	경상대학교부속박물관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055)751-5120~5	(055) 751-6220
123	국립김해박물관	621-900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230번지	(055)325-9333	(055) 328-2468
124	(재)경남발전연구원	641-060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1-1번지	(055)281-4436	(055) 281-4454
125	통도사성보박물관	626-861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055)382-1001	(055) 384-0030
126	(재)우리문화재연구원	641-836	경상남도 창원시 소담동 159-15번지	(055)297-8992	(055) 297-8994
127	함안박물관	637-80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748번지	(055)580-3621~2	(055) 580-3629
128	(재)동서문화재연구원	641-823	경상남도 창원시 봉곡동 174-9번지	(055)237-3891~3	(055) 237-3894
12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641-729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8-4번지	(055) 285-1315	(055) 285-1305
130	창원대학교 박물관	641-773	경상남도 창원시 소나무 5길 65번지 (사림동 9번지)	(055) 279-7816	(055) 279-7819
131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641-811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96-20번지 동문빌딩	(055)265-9150~3	(055) 265-9154
132	국립진주박물관	660-03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9-17번지	(055) 742-5952	(055) 748-6117
133	(재)아시아문화재단	641-851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195-13번지	(055)299-9061~4	(055) 252-3985

연번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134	국립제주박물관	690-782	제주도 제주시 삼사석로 11번지	(064) 720-8000	(064) 720-8150
135	제주대학교 박물관	690-756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산1번지 제주대학교박물관	(064) 754-2241	(064) 702-0645
136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062)530-0577	(062) 530-0578
13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690-830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996-1	(064)753-8771	(064) 752-2465
13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	(042)868-3045	(042) 861-9734
139	부산대학교 지질재해산업자원연구소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051) 510-1771	(051) 514-3602
140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840번지	(051) 200-6487	(051) 200-6488
141	(재)영해문화재연구원	540-964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099-7번지 상우빌딩 7층	(061) 930-2345	(061) 930-6789

지방자치단체 매장문화재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시 청	문화재과	02-2171-2582
	종로구	문화진흥과	02-731-1170
	중 구	문화체육과	02-2260-4168
	용산구	문화체육과	02-710-3322
	성동구	문화공보과	02-2286-5211
	광진구	사회문화과	02-450-1320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02-2127-4708
	종량구	문화체육과	02-490-3410
	성북구	문화체육홍보과	02-920-3048
	강북구	문화공보과	02-901-2091
	도봉구	문화체육과	02-2289-1152
	노원구	공보체육과	02-950-3088
	은평구	문화체육과	02-350-1621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02-330-1115
	마포구	문화체육과	02-330-2506
	양천구	문화체육과	02-2560-3410
	강서구	문화공보과	02-2600-6071
	구로구	문화체육과	02-860-3416
	금천구	문화공보과	02-890-2410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02-2760-3131
	동작구	문화공보과	02-820-1261
	관악구	문화체육과	02-880-3172
	서초구	문화행정과	02-570-6809
	강남구	문화체육과	02-2104-1265
송파구	문화체육과	02-410-3412	
강동구	문화체육과	02-480-1766	
부산광역시	시청	문화예술과	051-888-3484
	중 구	문화공보과	051-600-4061
	서 구	문화관광과	051-240-4065
	동 구	문화체육과	051-440-4062
	영도구	문화체육과	051-419-4062
	진 구	문화체육과	051-605-4065
	동래구	문화공보과	051-550-4081
	남 구	문화체육과	051-607-4062
	북 구	문화공보과	051-309-4062
	해운대구	관광문화과	051-749-4062
	사하구	문화공보과	051-220-4082

	금정구	문화공보과	051-519-4082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820
	연제구	문화공보과	051-665-4064
	수영구	문화공보과	051-610-4048
	사상구	문화공보과	051-310-4061
	기장군	문화관광과	051-709-4062
대구광역시	시청	문화예술과	053-803-3751
	중구	문화관광과	053-661-2172
	동구	문화공보실	053-662-2172
	서구	복지사업과	053-663-2172
	남구	문화공보과	053-664-2172
	북구	문화공보실	053-665-2174
	수성구	문화체육과	053-666-2172
	달서구	문화체육과	053-667-2171
	달성군	문화체육과	053-668-3163
인천광역시	광역시	문화예술과	032-440-4035
	중구	문화관광과	032-760-7134
	동구	문화홍보과	032-770-6103
	남구	문화홍보실	032-880-4298
	연수구	문화체육과	032-810-7076
	남동구	문화홍보실	032-453-2132
	부평구	문화공보과	032-509-6411
	계양구	문화공보과	032-450-6802
	서구	문화공보과	032-560-4343
	강화군	문화관광과	032-930-3637
	옹진군	관광문화과	032-899-2262
	광주광역시	시청	문화예술과
동구		평생학습문화추진단	062-608-2223
서구		주민생활지원과	062-360-7225
남구		문화체육과	062-650-7535
북구		문화정보실	062-510-1226
광산구		문화관광팀	062-940-8225
대전광역시	시청	관광문화재과	042-600-3433
	동구	문화공보과	042-250-1225
	중구	문화공보과	042-606-6283
	서구	문화공보실	042-611-6474

	유성구	관광공보실	042-611-2078
	대덕구	문화관광과	042-608-6593
울산광역시	시청	문화예술과	052-229-3732
	중구	문화체육과	052-290-0224
	남구	문화체육과	052-226-5411
	동구	문화체육과	052-230-9223
	북구	문화체육과	052-219-7553
	울주군	문화관광과	052-229-7633
	경기도	도청	문화정책과
제2청사		문화관광과	031-850-2622
수원시		문화관광과	031-228-3085
성남시		문화예술과	031-729-3013
의정부시		문화체육과	031-828-2156
안양시		문화예술과	031-389-2473
부천시		문화예술과	032-320-2572
광명시		문화체육과	02-2680-6142
평택시		문예체육과	031-659-6004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031-860-2064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659-6004
고양시		문화예술과	031-961-4184
과천시		문화체육과	02-3677-2065
구리시		문화관광과	031-550-2546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031-590-4721
오산시		문화공보담당관실	031-370-3064
시흥시		문화진흥과	031-310-2961
군포시		문화체육과	031-390-0663
의왕시		문화공보과	031-345-2065
하남시		문화체육과	031-790-5506
용인시		문화관광담당관실	031-324-2148
파주시		문화관광과	031-940-4354
이천시		문화관광과	031-645-3274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031-678-2478
김포시		문화예술과	031-982-2472
화성시		문화홍보과	031-369-3129
광주시		문화체육과	031-760-4822
양주시		문화체육과	031-820-2126
여주시		문화재관리사업소	031-887-3582

	포천시	문화체육과	031-538-2064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031-839-2567
	가평군	문화관광과	031-580-2064
	양평군	문화관광과	031-770-2473
강원도	도청	문화예술과	033-249-2793
	춘천시	문화예술과	033-250-3076
	원주시	문화관광과	033-741-5226
	강릉시	문화예술과	033-640-5119
	동해시	문화체육과	033-530-2382
	태백시	관광문화과	033-550-2556
	속초시	문화공보과	033-639-2345
	삼척시	문화공보실	033-570-3723
	홍천군	경제관광과	033-430-2323
	횡성군	기획감사실	033-340-2225
	영월군	문화관광과	033-370-2648
	평창군	문화관광과	033-330-2745
	정선군	관광문화과	033-560-2549
	철원군	관광경제과	033-450-5007
	화천군	문화관광과	033-440-2846
	양구군	문화관광과	033-480-2544
	인제군	문화관광과	033-460-3081
	고성군	문화관광과	033-680-3365
	양양군	문화관광과	033-670-2225
충청북도	도청	문화정책과	043-220-4632
	청주시	문화관광과	043-220-6164
	충주시	문화체육과	043-850-6632
	제천시	관광팀	043-640-5432
	청원군	문화공보과	043-251-3057
	보은군	문화관광과	043-540-3374
	옥천군	문화홍보과	043-730-3084
	영동군	문화공보과	043-740-3212
	진천군	문화체육과	043-539-3624
	괴산군	문화관광과	043-830-3445
	음성군	문화공보과	043-721-3065
	단양군	문화관광과	043-722-3543
	증평군	복지문화홍보과	043-835-3533

충청남도	도청	문화예술과	042-2200-3685
	천안	문화관광과	041-550-5155
	공주	문화관광과	041-840-2226
	보령	문화공보담당관실	041-930-3225
	아산	문화관광과	041-840-2546
	서산	문화관광과	041-660-3023
	논산	문화관광과	041-730-3226
	계룡	문화공보과	041-840-2542
	금산	문화공보관광과	041-750-2382
	연기	문화공보과	041-861-2293
	부여	문화관광과	041-830-2243
	서천	문화관광과	041-950-4225
	청양	기획감사실	041-940-2225
	홍성	문화관광과	041-630-1228
	예산	경영문화관리실	041-330-2859
	태안	문화관광과	041-970-2762
당진	문화관광과	041-350-3134	
전라북도	도청	문화예술과	063-280-3314
	전주시	한브랜드과	063-281-2168
	군산시	문화체육과	063-450-4225
	익산시	문화관광과	063-859-5791
	정읍시	문화체육과	063-530-7177
	남원시	문화관광과	063-620-6173
	김제시	문화관광과	063-540-3884
	완주군	문화관광과	063-240-4026
	진안군	문화관광과	063-430-2322
	무주군	문화관광과	063-320-2542
	장수군	문화관광과	063-350-2538
	임실군	문화관광과	063-640-2542
	순창군	문화관광과	063-650-1724
	고창군	문화관광과	063-560-2227
	부안군	문화관광과	063-580-4361
전라남도	도청	문화예술과	061-286-5443
	목포시	문화예술과	061-270-8291
	여수시	문화예술과	061-690-2222
	순천시	문화예술과	061-749-3226
	나주시	문화공보실	061-330-7823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실	061-797-2227

	담양군	문화관광과	061-380-3155
	곡성군	관광홍보과	061-360-8252
	구례군	문화관광과	061-780-2430
	고흥군	문화관광과	061-833-5924
	보성군	문화관광과	061-850-5226
	화순군	문화관광과	061-370-1226
	장흥군	문화관광과	061-860-0228
	강진군	관광개발팀	061-430-3172
	해남군	문화관광과	061-530-5252
	영암군	문화관광과	061-470-2225
	무안군	관광문화과	061-450-5317
	함평군	문화관광과	061-320-3249
	영광군	문화관광과	061-350-5224
	장성군	문화관광과	061-393-1983
	완도군	문화관광과	061-550-5254
	진도군	문화관광과	061-540-3137
	신안군	문화관광과	061-240-8354
	도청	문화재팀	053-950-3459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054-270-2263
	경주시	문화재과	054-779-6392
	김천시	문화공보담당관실	054-420-6063
	안동시	문화재과	054-840-6392
	구미시	문화공보담당관실	054-450-6065
	영주시	문화관광과	054-639-6395
	영천시	문화관광공보과	054-330-6354
	상주시	새마을문화관광팀	054-537-7217
	문경시	문화관광과	054-550-6061
	경산시	새마을문화과	053-810-6093
	군위군	새마을과	054-380-6064
	의성군	새마을과	054-830-6065
	청송군	문화관광과	054-870-6248
	영양군	문화관광과	054-680-6068
	영덕군	문화관광과	054-730-6511
	청도군	문화관광과	054-370-2062
	고령군	문화체육과	054-950-6105
	성주군	새마을과	054-930-6064
	칠곡군	새마을과	054-979-6063
	예천군	문화관광과	054-650-6902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	054-679-6377	

	울진군	문화관광과	054-785-6922
	울릉군	문화관광과	054-790-6395
경상남도	경남도	문화예술과	055-211-4836
	창원시	문화관광과	055-212-2186
	마산시	문화공보과	055-240-2043
	진주시	문화관광과	055-749-5074
	진해시	문화관광과	055-548-4064
	통영시	문화예술과	055-650-4523
	사천시	문화관광과	055-831-2716
	김해시	문화시설관리과	055-330-6892
	밀양시	문화관광과	055-359-5637
	거제시	문화체육과	055-639-3226
	양산시	문화관광과	055-380-3824
	의령군	문화체육과	055-570-2403
	함안군	문화관광과	055-580-2323
	창녕군	문화공보과	055-530-2246
	고성군	문화관광과	055-670-2225
	남해군	문화관광과	055-860-8633
	하동군	문화관광과	055-880-2365
	산청군	문화관광과	055-970-6441
	함양군	문화관광과	055-960-5522
	거창군	문화관광과	055-940-3568
합천군	문화공보과	055-930-3177	
제주도	도청	문화재과	064-710-3422
	제주시	문화체육과	064-728-273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064-760-2505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번호	이름	현 직	비고
1	이인숙(李仁淑)	부산시립박물관장	
2	김세기(金世基)	대구한의대 교수	
3	박영철(朴英哲)	연세대 교수	
4	정징원(鄭澄元)	부산대 명예교수	
5	이강승(李康承)	충남대 교수	
6	이건무(李健茂)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7	이청규(李清圭)	영남대 교수	
8	조영제(趙榮濟)	경상대 교수	
9	나선화(羅善華)	(사)생명과평화의길 상임이사	
10	박강철(朴剛澈)	조선대 교수	(민속경임)

문화재전문위원

번호	이름	현 직	비고
1	강봉원(姜奉遠)	경주대 문화재학부 조교수	
2	임학중(任鶴鐘)	국립김해박물관 관장	
3	신중환(申鍾煥)	대가야박물관장	
4	곽장근(郭長根)	군산대 사학과 교수	
5	김길식(金吉植)	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6	박광춘(朴廣春)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7	박보현(朴普鉉)	대전보건대학 박물관과 교수	
8	박순발(朴淳發)	충남대 고고학과 교수	
9	송의정(宋義政)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	
10	심광주(沈光注)	토지박물관 학예실장	
11	이기길(李起吉)	조선대 사학과 교수	
12	이남규(李南珪)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13	이상길(李相吉)	경남대 사학과 교수	
14	전옥년(全玉年)	부산박물관 학예실장	
15	최태선(崔兌先)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부교수	
16	하문식(河文植)	세종대 역사학과 교수	
17	이한상(李漢祥)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18	김주용(金周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재해연구부 부장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국가지정문화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지정</p> <p>제1조(지정 등의 기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p>	<p>제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p> <p>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p> <p>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p> <p>4.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p> <p>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p> <p>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p> <p>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p> <p>③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p> <p>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p> <p>제4조(문화재위원회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 		<p>제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 지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각각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거, 이전 등의 명령</p> <p>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p> <p>8. 매장문화재의 발굴</p> <p>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10.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p> <p>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 문화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장 국가지정문화재</p> <p>제1절 지정</p> <p>제5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p>		<p>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6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p> <p>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으면 그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36조 제2항에 따른 기능과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제7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p>		<p>제3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2. 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한다. 3.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 <p>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6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8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검토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가 3명 이상에게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p> <p>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과 영 제1조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p> <p>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0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p> <p>①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官報)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제2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p> <p>「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고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 고시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지정이나 인정의 해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p>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여건 <p>②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는 지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1조(지정서 등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나 제8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p>	<p>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p> <p>5. 지정·인정 또는 해제 이유</p> <p>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 필요한 문화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조(지정에 관한 자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문화재의 작자, 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문화재의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특징)</p> <p>7. 문화재의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p> <p>8.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p> <p>9.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의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장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p>제7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문 화 재 보 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p> <p>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p> <p>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p> <p>제8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8호 서식, 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2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p> <p>제13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p>		<p>따른다.</p> <p>② 제1항의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보유단체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명예보유자 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p> <p>제9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p> <p>⑥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10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p>		<p>요무형문화재 지정의 해제</p> <p>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및 범위의 조정</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⑦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과 제10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4조(가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p>	<p>제4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을 하는 경우, 법 제7조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또는 법 제8조의 중요민속자료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절 관리와 보호</p> <p>제15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p>	<p>제2절 관리 및 보호</p> <p>제5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의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 안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시·도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0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면 별지 제12호 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④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p>		<p>며, 별지 제13호 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이를 부담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p> <p>제17조(수리 등) ①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제22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p>제6조(수리) 법 제17조의 “수리”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p> <p>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제1항의 수리기술자는 별표 3 제11호의 실측·감리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를 할 수 있다.</p> <p>제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별표 2와 같다.</p> <p>제9조(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별표 3과 같다.</p> <p>제10조(수리기준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 및 그 대가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이</p>	<p>제11조(경미한 수리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수리”란 문화재의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5.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6.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7.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8. 보호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9.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10.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는 행위 11. 성곽, 건물지 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2.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3. 도난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實測), 설계 및 그 대가 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14.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보수하는 행위</p> <p>15.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및 거름주기</p> <p>16.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p> <p>17.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제12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17조 제2항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말한다.</p>
<p>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p> <p>②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술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및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p>	<p>제11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제16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p>	<p>제1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경력증명서를 첨부(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에 한한다)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로 1만원의 수입인지를 응시</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p> <p>④ 문화재 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p> <p>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에 따라 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3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 교부기간, 교부장소 및 접수기간, 접수장소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③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법 제1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필기시험 방법 및 과목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리기술자 종류별 필기시험과목 및 과목별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p> <p>③ 법 제18조제4항의 필기시험과목 중 일부면제과목은</p>	<p>원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④ 법 제18조제4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및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 유효기간의 산정은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p> <p>제14조(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영 제12조에 따른 해당 기술 분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술 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문화재보</p>

문 화 재 보 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별표 5와 같다.</p> <p>제13조(면접시험) ①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면접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술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p>제14조(합격자 결정 및 공고)</p> <p>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p> <p>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해당</p>	<p>호단체나 관련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이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제20조(수리기술자자격증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재청장은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 	<p>시험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p> <p>16조(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청장은 기술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p>	<p>제15조(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은 별지 제16호</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 (이하 “수리기술자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p> <p>② 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p> <p>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p>	<p>제17조(자격취소의 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의 자격을 취소하면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1. 성명</p> <p>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p> <p>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p>	<p>서식에 따르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하면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리기술자 자격명부와 별지 제18호 서식의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p> <p>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라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2조(수리기술자의 등록 등)</p> <p>① 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가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기술자가 제2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는 수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수리기술자는 제1항의 등록 사항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수리기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 및 변경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수리기술자의 등록) ①</p> <p>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하려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수리기술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리기술자자격증 2. 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리기술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리기술자 등록명부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리기술자 등록대장에 수리기술자의 성명, 주소 및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문</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3조(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 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7.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p>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수리기술자에 한한다)를 적고, 수리기술자자격증에 해당 사항과 등록일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리기술자의 주소 2.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자의 영업소재지 3. 수리기술자의 소속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등록된 수리기술자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 등록명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8.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p> <p>9.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면 수리기술자자격증에 처분 내용과 처분 사유를 적어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정지 기간이 지나면 반납된 수리기술자자격증을 해당 수리기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리기술자가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4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아래 국</p>		<p>제17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문</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p> <p>②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능 분야별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p> <p>③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이하 “기능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수리기능자의 자격 및 자격취소 등)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p> <p>제26조(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p> <p>제27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등) ① 문화재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 사항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p>	<p>제18조(수리업자의 등록요건)</p> <p>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기능자 및 상시 근무하는 수리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수단청업자, 실측·설계업자, 조정업자, 실측·감리업자 또는 박제 및 표본제</p>	<p>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수리기능자의 수급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16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실기시험은 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③ 수리기능자의 응시원서·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영 제13조를,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수리기능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리기술자”는 “수리기능자”로 본다.</p> <p>제1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가 보유하여야 할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수는 별표 6과 같다.</p> <p>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 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8조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p>작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단청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실측·설계업자: 제7조제1항의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조경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자 실측·감리업자: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한 자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 <p>제19조(등록취소 등의 공고)</p> <p>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수리기능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자격종목 및 번호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p>②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p>	<p>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보유 현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 공사업의 등록증 사본(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한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증명서 사본(실측·설계업에 한한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박제업등록증 사본(박제 및 표본제작업에 한한다) 소속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리업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및 업종 상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받으면 수리업자에게 별지 제27호 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증</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⑤ 수리업자의 등록 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업종 및 등록번호 4. 소재지 5.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p>및 별지 제28호 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교부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증(등록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p> <p>⑤ 법 제27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리업자의 상호 2. 수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보유현황 <p>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보수 단청업 또는 조경업에 한한다) 2. 건축사업무신고증명서 사본 1부(실측·설계업에 한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⑦ 제5항제4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는 수리업자</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2. 해당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⑧ 시·도지사는 수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수리업자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p> <p>⑨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수리업자 등록현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에 따라 수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때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 3. 제8항에 따라 수리업자 등록대장을 이송 받은 때 <p>제19조(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3조, 법 제26조,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 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경우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p> <p>8.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사용한 경우</p> <p>9.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下都給)한 경우</p> <p>10.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나 제30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p> <p>11.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수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비의 1할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p> <p>13. 수리업자가 등록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수리를 한 경우</p> <p>② 수리업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기간 동안 해당 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p> <p>2. 「건축사법」 제28조제1항</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에 따른 업무정지처분</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수리업자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면 관련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른 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항 각 호의 처분을 받은 수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결한 도급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p> <p>제29조(문화재 수리 용역과 시공 평가 등) ①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수리업자의 기술 수준과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p>	<p>제20조(평가대상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등)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 및 문화재 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역사업: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수리공사: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수 있다.</p> <p>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발주청은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할 때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 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p> <p>④ 발주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 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과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21조(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발주청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소속 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 하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p>	<p>제20조(문화재청장 소속 문화재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두는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수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6명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p>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③ 기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p> <p>⑤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평가대상이 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는 문화재수리 용역사업(이하 이 조에서 “용역사업”이라 한다) 및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수리공사”라 한다)의 선정</p> <p>2.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 등의 평가</p> <p>3.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우수용역업자 및 우수수리업자의 지정</p> <p>⑥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p>⑦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정한다.</p> <p>제21조(문화재수리용역사업의 평가 등)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의 평가는 해당 용역사업이 완료된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용역사업의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표 및 제34호 서식의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용역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p>

문 화 재 보 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야 한다.</p> <p>제22조(문화재수리공사의 평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의 평가는 해당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수리공사의 평가는 별표 9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공사 평가표 및 제36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공사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p> <p>③ 수리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인 때에는 수리공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인 때에는 수리업자가 분담하는 수리공사별로 평가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수리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3조(우수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우수용역사업자(이하 “우수용역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상위 20퍼센트 안에 드는 자가 없는 경우에도</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지역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1명의 용역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려는 날(이하 “지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용역사업을 1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2.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용역사업을 2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3.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용역사업마다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5.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p>② 우수용역업자는 평가대상 용역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우수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라 우수용</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역업자의 지정공고를 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p> <p>④ 발주청은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우수문화재 수리 용역업자 지정결과 통보서에 지정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주청 2. 우수용역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3. 우수용역업자의 소재지 <p>제24조(우수 문화재 수리 공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리공사업자(이하 “우수수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상위 20퍼센트 안에 드는 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역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1명의 수리공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수리업자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수리공사를 1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2.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수리공사를 2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3. 지정일이 속하는 직전 해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시행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수리공사마다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p> <p>4.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p> <p>5.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p> <p>② 우수수리업자는 평가대상 수리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지정한다.</p> <p>③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우수수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라 우수수리업자의 지정공고를 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p> <p>④ 발주청은 우수수리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우수 문화재 수리 공사업자 지정결과 통보서에 지정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0조(수리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리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p> <p>② 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하는 도급 계약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을 따른다. 다만,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하면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보고,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면제하도록 정하면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본다.</p> <p>제31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p>	<p>제22조(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6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주청 2. 우수수리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3. 우수수리업자의 소재지 <p>제25조(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문화재청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3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p>⑤ 동물치료소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또는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p>②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39호 서식의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40호 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41호 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동물치료소</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2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2.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p>제26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3호 서식의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 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 경비를 지급할 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로서 천연기념물의 치료나 보호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관리단체를 지정·고시하여 해당 법인 또는 관리단체에 적정한 치료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43</p>

문 화 재 보 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호 서식의 치료경비 지급 청구서에 조난동물의 사진과 치료경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법인 또는 단체에 청구하여야 한다.</p> <p>제27조(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국가지정문화재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는 별지 제44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른다.</p> <p>③ 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p> <p>제28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46호 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2조(권한의 위탁) ①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기능자격시험과 제20조·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과 자격증 관리 등을 위탁하면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제33조(기록의 작성·보존)</p> <p>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p> <p>제34조(허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p>	<p>제23조(현상변경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p>	<p>류별 목록 및 별지 제47호 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p> <p>제29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4조제1호와 영 제23조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p> <p>2.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p> <p>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p>	<p>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p> <p>1.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p> <p>2.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p> <p>3.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는 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그 밖의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4조제2호와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른다.</p> <p>③ 법 제34조제3호와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른다.</p> <p>④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다.</p> <p>제30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p> <p>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p> <p>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p> <p>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p>

문 화 재 보 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p> <p>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p> <p>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p> <p>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p> <p>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p> <p>바.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p> <p>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p> <p>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p> <p>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p> <p>②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p> <p>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p> <p>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p> <p>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p> <p>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p> <p>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p> <p>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p> <p>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5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③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1조(국외반출허가) ① 법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이나 중요민속자료의 국외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52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53호 서식의 반출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고,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④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p> <p>제36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게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 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전수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 이수증 교부를 위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5조(전수교육 조교) ① 문</p>	<p>제32조(전수교육)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54호 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 심사기록은 별지 제55호 서식에 따른다.</p> <p>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 결과를 알리는 때에는 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른다.</p> <p>제33조(전수교육 조교) ① 중</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6조(전수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 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중요무형</p>	<p>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가 되려는 자를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 해제 등으로 전수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57호 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58호 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조교가 되려는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려는 전수교육 조교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하려면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p>

문 화 재 보 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p> <p>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p> <p>④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p> <p>⑤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교육기간,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하면 전수교육 조교에게 별지 제59호 서식의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p> <p>⑥ 전수교육 조교가 제5항에 따른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면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p> <p>제34조(전수장학생)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60호 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천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사진 3장 첨부) 2. 별지 제58호 서식의 서약서 <p>②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자 <p>③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10과</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7조(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와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 <p>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p>		<p>같다.</p> <p>④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32조제3항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5조(수리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부담으로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수리 또는 조치의 내용, 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8조(신고 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經緯)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규소유자가 각각 연서(連書)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가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p>제27조(관리자선임 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안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6조(신고서) ① 법 제38조제1호와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38조제2호와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다.</p> <p>③ 법 제3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및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른다.</p> <p>④ 법 제38조제6호와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의 멸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p> <p>⑤ 법 제38조제7호와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신고서는 별지 제65호 서식에 따른다.</p> <p>⑥ 법 제38조제8호와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7. 제34조제1호나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p> <p>8. 제34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를 현상변경(現狀變更)하거나 그 밖의 행위에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p> <p>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제39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p> <p>2.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p> <p>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p> <p>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p>		<p>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66호 서식에 따른다.</p> <p>⑦ 법 제38조제9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별지 제67호 서식에 따른다.</p> <p>제37조(보조금)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9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③ 법 제39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70호 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제</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0조(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p>제41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제42조(준용)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3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40조를 준용한다.</p>	<p>제28조(손실보상) ① 법 제40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p>	<p>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공개</p> <p>제43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p>		<p>38조(공개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과 지역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 <p>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의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p>④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개제한의 해제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44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p> <p>제4절 조사</p>	<p>시행령</p> <p>제3절 조사</p>	<p>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p> <p>제39조(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제한지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재의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45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 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 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9조(정기조사 등의 위탁)</p> <p>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p>제40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72호 서식부터 별지 제79호 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p> <p>제41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80호 서식에 따른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⑥ 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 때 문에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p> <p>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6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 <p>제3장 등록문화재</p> <p>제47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p>		<p>제42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p> <p>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p> <p>3.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p>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건설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p> <p>③ 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p> <p>제43조(등록의 신청) 제4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8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48조(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취지 2. 문화재의 종별, 명칭, 연혁(역사적 사건·유래 등), 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점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및 주소 4. 문화재의 현재의 용도 및 수리·구조변경내역 등 현상에 관한 설명 5. 문화재의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 6. 문화재의 사진, 도면, 위치도 및 관련 기록물 7.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문화재를 만든 자의 인적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 <p>제44조(등록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82호 서식의 등록문화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1조에 따른 특별 적용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제45조(기술지도) ① 법 제48조 제3항에서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란 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49조(신고 사유)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p>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p> <p>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3호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요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6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별지 제61호 서식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신고: 별지 제62호 서식 3.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신고: 별지 제63호 서식 4.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 또는 훼손신고: 별지 제64호 서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견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별 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 조언, 권고 등을 할 수 있다.</p>	<p>제2장 등록문화재</p> <p>제3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후단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제47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문화재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 해당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p>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p> <p>③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별지 제50호 서식,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51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제52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p> <p>제53조(준용 규정) ①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p>	<p>제31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48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대상 통보) 법 제5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의 장에게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p> <p>제49조(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5호 서식의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86호 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p> <p>②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 제39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41조, 제46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p> <p>제4장 매장문화재</p> <p>제54조(발견 신고)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하면 그 발견자 또는 토지·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장 매장문화재</p> <p>제32조(발견신고)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부터 7일 안에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신고가 해당 기관에 접수된 날을 법 제5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국가경찰관서의 장 <p>③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p>	<p>제50조(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별지 제87호 서식에 따른다.</p> <p>②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경찰서장의 공고문 사본 2. 현품이나 보관기관의 매장문화재 보관증 3. 보관기관 또는 제84조에 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55조(발굴의 제한) ①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굴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등”이라 한다)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p>	<p>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3조(건설공사 범위)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입목(立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및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형변경(절토, 복토, 굴착, 골재채취, 광물채취, 준설, 수몰 및 매립 등을 말한다) <p>제34조(발굴허가신청) ① 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8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p>	<p>른 동산문화재의 감정자격이 있는 자의 예비평가서</p> <p>4. 사진 4장(74밀리미터 × 90밀리미터 이상)</p> <p>제51조(발굴허가 신청서)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88호 서식과 같다.</p> <p>제52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11</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굴기관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면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가. 제5항에 따른 발굴 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p> <p>나. 제5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발굴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p> <p>다. 제56조에 따른 제출 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p> <p>2.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당한 방법으로 행하여 제91</p>	<p>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1.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과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 내역서를 포함한다)</p> <p>2.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조서</p> <p>3.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p> <p>4.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굴예정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발굴대상지,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p>	<p>과 같다.</p> <p>② 영 제36조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6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p> <p>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이나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할 때 발굴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면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p> <p>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드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p>	<p>한다.</p> <p>제35조(발굴허가의 제한기간)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발굴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 7과 같다.</p> <p>제36조(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5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p> <p>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만 발굴경비를 지</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p> <p>⑧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p>	<p>원한다.</p> <p>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p> <p>4.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p> <p>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p> <p>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56조(발굴조사보고서) ①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57조(국가에 의한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발굴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p> <p>③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제1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p> <p>제58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p>	<p>사를 제외한다.</p> <p>제37조(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주는 발굴통지서를 발굴착수 2주일 전까지 내주어야 한다.</p> <p>제38조(매장문화재 조사용역</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p> <p>제59조(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54조에 따른 발견 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55조와 제57조에 따른 발굴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로 문화재가 발견되면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굴이나 발견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후 30</p>	<p>대가의 기준(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9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문화재의 발굴 또는 발견사실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5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절차)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를 발견·발굴한 기관은 발견 또는 발굴 완료일부터 2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사진 자료를 그 문화재가 발견·발굴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발견·발굴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89호 서식의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후 법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출현여부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자에게 해당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p> <p>제60조(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 방법) ① 「유실물법」에 따라 매장물이나 유실물로서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함과 동시에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이나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판명되면 그 물건이 문화재임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p>제54조(경찰서장의 보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에 관한 경찰서장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장물 또는 유실물의 종류, 명칭, 수량 및 현상에 관한 설명 2. 습득 또는 발견의 연월일, 장소 및 경위 3. 습득자 또는 발견자의 성명 및 주소 4. 경찰서에 제출된 연월일 5. 문화재로 인정되는 사유 6. 보관상황 7.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의 유래·전설·그 밖의 상황과 그 토지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주소 8.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가 유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과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 9. 사진,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p> <p>2.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p> <p>제61조(국가 귀속과 보상금)</p> <p>① 제59조제2항·제3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해당 문화재는 「민법」 제253조와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 기관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발굴 유물의 처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p>	<p>제40조(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소유자 반환)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공고기간 안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으면 제출받은 입증자료를 조사·검토한 후 그 공고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소유권 존재여부의 판단을 위한 조사 또는 관계자(관계기관을 포함한다)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관계기관이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 요청한 경우 3.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 	<p>제55조(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소유권 반환 신청)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90호 서식에 따른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讓與)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④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발견 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5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⑤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절차나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p>	<p>을 주장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p> <p>제41조(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소유권반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이 조에서 “소유권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증자료의 조사·검토 및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반환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한 해당 문화재를 발견하거나 습득하는데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으면 그 경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 중에서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은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p>	<p>제56조(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이하 “소유권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제8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매 회의마다 위촉하는 3명 이상 5명 안에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소유권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반환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소유권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유권심사위원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면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소유권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제57조(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등) ① 법 제61조제1</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로 정한다.</p> <p>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와 건조물 등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p>	<p>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 가액을 통보받은 보상금지급대상자는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서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항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는 법 제54조부터 법 제57조까지 또는 법 제91조에 따라 발견신고 또는 발굴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화석, 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p>② 제53조에 따라 공고한 문화재 중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발견·발굴한 기관은 별지 제91호 서식의 발굴 매장문화재 보관증과 출토유물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4부를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토유물과 유구의 과다 또는 유물과 유구의 가치규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기간 안에 신고가 곤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면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제58조(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서는 별지 제92호</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서식에 따른다.</p> <p>제59조(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제57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보관·관리관청”이라 한다)에게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 3.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과학관 <p>② 보관·관리관청은 문화재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면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문화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 2. 국립민속박물관 3. 국립·공립·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4. 해당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관</p> <p>③ 보관·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라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하려면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존시설의 적부와 문화재의 활용도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기관이 해당 문화재를 다시 다른 기관에 대여하거나 현상변경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면 제2항에 따라 그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한 보관·관리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기관은 별지 제93호 서식의 국가귀속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전시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p> <p>⑥ 보관·관리관청은 매년도의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문화재청장은 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실태가 적정하지 못하거나 국가 귀속 문화재의 안</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보관·관리관청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60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물의 처리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57조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물을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매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장소는 가능한 한 해당 유물이 발굴된 유적지 안으로 하고 매장할 때는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장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석과 함께 매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물의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p> <p>제61조(매장문화재의 대여) ① 보관·관리관청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학교 등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에서 대여신청을 하면 다음의 경우에만 이를 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의 전시 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안으로 한다. 다만,</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62조(매장문화재의 보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9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그 사업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개발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와 그 보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p>	<p>제43조(사전협의대상 및 개발사업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을 말한다.</p> <p>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p>	<p>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62조(국가 귀속 문화재의 인수·인계) 보관·관리관청은 해당 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된 날부터 1년 안에 해당 문화재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하고, 인수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94호 서식에 따른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건설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63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64조(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p> <p>제65조(「유실물법」의 준용) 매장문화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유실물법」 제13조를 준용한다.</p> <p>제5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p> <p>제66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6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재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p> <p>제67조(회계 간의 무상관리환) 국유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환(管理換)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68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문화재청장이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p> <p>②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제37조, 제38조, 제44조 및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란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p> <p>제69조(처분의 제한)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4조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제70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관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6장 시·도지정문화재</p> <p>제71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p>	<p>제4장 시·도지정문화재</p> <p>제44조(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의 사전협의) ① 시·도지</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특별시, 해당 광역시, 도 또는 특</p>	<p>사는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과 인정하려는 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인정하려는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승이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최근 사진을 포함한다) 및 활동상황 기록물 3.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배경 및 필요성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을 받으면 그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⑥ 문화재청장,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72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p> <p>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p> <p>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p> <p>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73조(경비부담) ① 제7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74조(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p>	<p>제45조(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3조(국가보조)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보조금교부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을 준용한다.</p> <p>제64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의 경우</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2.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p> <p>3.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p> <p>4.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경우</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가.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지정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p> <p>나.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p> <p>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p> <p>라.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p> <p>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p> <p>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p> <p>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p> <p>아.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2.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의 경우</p> <p>가.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p> <p>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p> <p>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p> <p>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3.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75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4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p> <p>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9조,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3조부터</p>		<p>고의 경우</p> <p>가.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수량</p> <p>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p> <p>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p> <p>라. 변경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p> <p>마. 사진 및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4.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멸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의 경우</p> <p>가.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p> <p>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p> <p>다. 멸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p> <p>라. 멸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p> <p>마. 사진 및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7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7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p> <p>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46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p> <p>① 법 제77조제1항의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p> <p>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p>	<p>제65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절차)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5호 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서에 제66조에 따른 자격요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8조(자격 요건) ①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p>	<p>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매매 등 현황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집계하여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별지 제96호 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이를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인에게 별지 제97호 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③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매매 등 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98호 서식에 따른다.</p> <p>제66조(자격요건 증명서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2.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3.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p>제67조(박물관·미술관의 범</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7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제80조(준수 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p>		<p>위)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이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p> <p>제68조(문화재매매장부의 검인) ① 법 제80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99호 서식의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으로 한다.</p> <p>② 문화재매매업자는 거래내용을 기록한 제1항의 문화재 매입(매도)대장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 서식의 문화재 매입(매도)대장 검인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12에 따른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81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2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1조, 제103조 및 104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营业을 한 경우 4.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83조(표창)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p>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장부는 기재를 완료한 날부터 5년 안에 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p> <p>제69조(폐업신고) 법 제81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01호 서식에 따른다.</p> <p>제7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96호 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副賞)을 수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경우에 그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에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5.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6. 문화재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p>제84조(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을 수사기관에 체포(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6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p>	<p>제47조(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84조의 수사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관한 법률」 제5조제16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p> <p>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4조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p> <p>제48조(제보의 처리) 법 제8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9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619 1151 983 1447"> <thead> <tr> <th>등 급</th> <th>포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td> <td>2,000만원</td> </tr> <tr> <td>2등급</td> <td>1,500만원</td> </tr> <tr> <td>3등급</td> <td>1,000만원</td> </tr> <tr> <td>4등급</td> <td>500만원</td> </tr> <tr> <td>5등급</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급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50조(포상금의 배분) ① 포상금은 제49조에 따라 사건 별로 결정된 포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제보자에게, 100분의 50의 금액을 범인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각각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p>	등 급	포상금액	1등급	2,000만원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원	5등급	200만원	<p>제71조(제보조서) 영 제48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조서는 별지 제102호 서식에 따른다.</p> <p>제72조(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p> <p>제73조(포상금의 청구)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사범 제보 또는 체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지 제103호 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소유예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p>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최초 발굴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별지 제104호 서식의 매장</p>
등 급	포상금액													
1등급	2,000만원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원													
5등급	200만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8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공로가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자가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를 수 있다.</p> <p>제51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2.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허가 및 그 취소 3.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를 제외한다. <p>가. 건조물의 원형대로의 보수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p>	<p>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 포상금 청구서에 공적사실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4조(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 제출) 시·도지사는 영 제5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면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행위가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이행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한식담장의 원형대로의 보수</p> <p>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신축, 개축 또는 증축</p> <p>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p> <p>마. 표석, 안내판 및 경고판의 설치</p> <p>바. 철책, 석책(石柵)의 설치</p> <p>사.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방제, 시비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p> <p>아. 학술·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插穗) 채취</p> <p>4.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p> <p>5.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p> <p>6.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중 문화재청장이 정한 경미한 변경허가</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86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p> <p>①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가 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p>	<p>7. 법 제38조제8호에 따른 신고의 수리 중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p> <p>8.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허가</p> <p>9.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p> <p>10. 법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p> <p>11.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보존대책의 수립 및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조치명령</p> <p>1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제60조제2항에 따른 통지</p> <p>13. 법 제10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조치나 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戰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87조(지원 요청) 문화재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86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88조(화재예방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 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 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소화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89조(문화재의 보호, 관리, 수리 등 전문 인력의 양성)</p> <p>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 관리, 수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p>		<p>제75조(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 전문 인력의 양성)</p> <p>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9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자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명할 수 있다.</p> <p>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재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자</p> <p>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자</p> <p>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 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장 첨부) 2. 별지 제106호 서식의 서약서 3. 성적증명서 및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 4.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연구계획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연구실적 개요(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p>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p> <p>제76조(성적증명서 제출 등)</p> <p>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여야 한다.</p> <p>② 법 제89조제4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공과목 또는 연구과목을 변경한 때 2. 교육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가 불가능하게 된 때 4. 본인의 성명·주소 등이 변경된 때 <p>③ 장학금을 지급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자는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7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법 제89조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6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90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p>	<p>제52조(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p>	<p>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지급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p> <p>③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과목 또는 연구과목을 변경한 때 3. 제76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p>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p> <p>제78조(연구논문 발표의 제한) 연구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논문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9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① 행정기관이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p> <p>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2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p>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 중 제30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 환경, 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p>	<p>제53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p>	<p>시계획, 대기오염, 화학물질, 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p> <p>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p> <p>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p> <p>③ 행정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별지 제107호 서식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④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면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고시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토절차를 생략한다.</p> <p>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관련 전문</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내면 그 조사 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 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그 기관을 제2항에 따른 고시대상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p>	<p>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결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p> <p>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는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p> <p>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p> <p>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p> <p>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p>	<p>기관(이하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육상지표조사기관과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p> <p>②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08호 서식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인력, 시설 및 기자재 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 안에서 기한을 정하여 지정하고, 해당 기관명과 주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준과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제81조(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사업) 영 제53조제1항제3호</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른 문화재 보존 대책(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에 포함된 조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p> <p>⑨ 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p> <p>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p> <p>2. 절토(切土) 또는 굴착(掘鑿)으로 인하여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p> <p>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p> <p>4.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p> <p>5.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적분</p>	<p>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p> <p>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p> <p>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나. 문화유적분포지도</p> <p>다. 문화유적원부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p> <p>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p> <p>4.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p> <p>5.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p> <p>6. 법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p>

문 화 재 보 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92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p> <p>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p>	<p>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p> <p>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p> <p>제54조(지표조사보고서 등) ①</p> <p>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표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 대상지역의 역사, 고고(古考),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내용 2. 해당 지표조사를 실시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자 의견 <p>②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한다.</p> <p>제93조(개발 사업에서의 문화재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94조(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5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p>	<p>제55조(문화유적분포지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3조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수록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의 위치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의 것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의 위치 <p>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5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는 전적, 서적, 판목(版木),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p>	<p>제8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영 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별표 16과 같다.</p> <p>제8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 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109호 서식의 국외박물관 등</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p> <p>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p>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⑤ 제1항 본문과 제3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되, 그 범위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57조(일반동산문화재 등의 감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감정하는 자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구입·기증 문화재 국외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의 국외수출 또는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84조(일반동산문화재 등의 감정자격) 영 제57조에 따른 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가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2.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관계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3.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이거나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6.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7.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자</p> <p>제85조(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요령)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감정 요령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정을 신청한 물건이 제83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감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보편타당성 있게 감정 평가한다. 3. 단독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감정한다. <p>제86조(감정의뢰 및 회보) 영 제57조에 따른 감정 의뢰 및 감정결과 회보는 별지 제110호 서식에 따른다.</p> <p>제87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감정위원이 영 제57조에 따라 감정을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8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이전에 그</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111호 서식의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 2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 서식에 따른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확인대상물품이 법 제94조제1항의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1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비문화재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표 17에 의한 표지를 해당물품에 붙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은 제83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만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p> <p>제89조(수수료) ①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확인받으려는 동산의 수량과 유형별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p> <p>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이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2. 제8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95조(문화재 보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p> <p>제96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보호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④ 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제97조(외국문화재의 보호) ①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p>	<p>제58조(사업계획승인 및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96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보호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장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보호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⑤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98조(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현저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 교육 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p>	<p>제59조(세계유산 등의 보호)</p> <p>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8조 제3항에 따른 등록세계유산등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등록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등록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모니터링에 따른 관련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관련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제9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①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p>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에서 제34조(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p>	<p>제60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전지역(「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p>②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p>	<p>제90조(도난물품 등의 공고)</p> <p>① 법 제99조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매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p>⑤ 제4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2.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 취소</p> <p>3. 제25조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p> <p>4. 제26조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등록취소</p> <p>5. 제28조에 따른 수리업자의 등록취소</p> <p>6. 제34조, 제35조 또는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p> <p>7. 제82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p>제101조(무허가 수출 등의 죄)</p> <p>① 제35조제1항 본문(제75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p> <p>②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情)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p> <p>제102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제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 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 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p>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p> <p>제104조(도굴 등의 죄) ①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에 처한다.</p> <p>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같은 항에 따른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p> <p>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p> <p>⑥ 제54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p> <p>제105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106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 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p>제107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에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108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107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p> <p>제109조(미수범 등) ① 제101조 부터 제104조까지, 제105조 제1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②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죄를 범할 목적 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10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 하여 제107조 또는 제108조 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제104조제3항 및 제4항, 제107조 또는 제 1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104조제3항과 제4항의 경 우에는 해당 문화재를 몰수 한다.</p> <p>제111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4조제1호(제75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 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 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 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p> <p>2. 제34조제3호(제42조와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p> <p>3.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p> <p>4.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p> <p>2. 제5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p> <p>제112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1항(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8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2. 제22조제1항이나 제26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한 자</p> <p>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수리업의 영업 행위를 한 자</p> <p>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4조제1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자</p> <p>5.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p> <p>제113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2. 제16조제4항(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가지</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p> <p>3. 제45조제4항 본문(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45조제4항 본문이 준용되는 경우와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p> <p>4.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p> <p>5.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p> <p>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p> <p>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p> <p>8. 허가 없이 제34조제2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p> <p>9. 제43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 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6항·제8항, 제61조제6항, 제90조 또는 제91조제4항에 따른 명령, 지시 또는 조사에 불응하는 자</p> <p>제114조(무자격 수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1항(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기술자의 성명이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업자의 상호, 수리업자등록증, 수리업자등록수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p> <p>제1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8조제6호 또는 제9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8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② 제38조제5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38조제8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1. 제22조제2항이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제3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3. 제49조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제1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① 제11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11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p>	<p>제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p>	<p>제9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p>	<p>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부 칙	부 칙	부 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제99조제4항·제5항, 제100조제7호,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 제80조, 제82조, 제100조제7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 제61조, 제64조,</p>	<p>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② (문화재매매업자 교육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 법률 제8278호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시행하고, 문화재청장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56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에 의한 자격요건 증빙서류) 법률 제8278호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 제8278호 부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인한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 사본 2. 법률 제8278호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교육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65조, 제79조의2제7호 및 제93조제1항을 적용한다.</p> <p>제3조(지정문화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② 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에 따른 해당 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③ 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폐지된 「舊皇室財産法」에 따라 국유로 된 구 황실재산 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李垠)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양여하려면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p>	<p>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p>	<p>기관이 발급한 수료증명서</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5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073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5073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p> <p>② 법률 제6840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6840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p> <p>③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각</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제1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제1호(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p> <p>제7조(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p> <p>제8조(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19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률 제5719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제61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9조(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 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08년 1월 26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 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인 2008년 7월 26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p>제1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11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3644호 文化財保護法改正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법률 제5719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③ 법률 제6443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p> <p>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p> <p>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42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p> <p>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p> <p>⑤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p> <p>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p> <p>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p> <p>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p> <p>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p> <p>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p> <p>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4호”를 “제34조제3호”로, “제58조”를 “제75조”로 한다.</p> <p>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p> <p>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호·제4호”를 “제34조제1호·제3호”로, “同法第54條 但書”를 “같은 법 제70조 단서”로 한다.</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p> <p>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文化財保護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p> <p>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 2007.4.25 대통령령 제2002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의사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보지정분과위원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보지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3.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사적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 연극, 음악, 무용,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예능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죽공예 등 공예기술에 관한 사항
7.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3호에 따른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과 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가액의 결정 및 법 제84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항
9.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4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10.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자료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외부지역에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사항

제6조 (분과위원회의 조직) ①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합동분과회의) ①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회의를 열 수 있다.

- ② 합동분과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회의에서 호선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회의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회의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회의의 의장이 지정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①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분과위원회·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13조 (윤리규정) 위원회는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와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0023호, 2007.4.25>

이 영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생략>·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 (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② 삭제 <2001.3.20>

제6조 (근무지의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여비의 구분계산) ① 여행도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6.30>

② 같은 날에 여비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제8조 (근무지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때의 여비)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3]

제2장 운 임

제9조 (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외에 전철요금에 따라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개정 2007.11.13>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제13조 (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14조 삭제 <2007.11.13>

제15조 (운임지급의 제한) 관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일비·숙박비 및 식비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하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 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3>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06.3.29, 2007.11.13>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⑥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원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07.11.13>

제17조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

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4.18, 2007.11.13>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6.1.12, 2006.3.29>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07.11.13>

제4장 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19조 (이전비의 지급대상) ① 국내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국내이전자”라 한다)로서 구임지(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3>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

② 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07.11.13>

③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자와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제20조 (이전비의 지급) ① 이전비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을 말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 ③ 국내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3>

제21조 (국내 가족여비) ①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 ② 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구임지 또는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1. 운임과 숙박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7.11.13>

- ⑤ 이전 후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을 이전하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 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11.13>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가족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 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11.13>

- ⑦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국내 가족여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1.3.20]

제23조 (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7에<%생략:별표 7%>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제5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제24조 (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 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 ② 출장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③ 외국근무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가 그 발령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귀국하는 때에는 그 해당 직급·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6.30>
- 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7>

제25조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6조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국내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중 1인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3.20>
- ③ 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개정 2007.11.13>
- 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1월 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⑤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제27조 (전역된 자 등의 여비)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되어 귀가하는 자에 대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에 대한 여비액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② 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자와 휴가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여비액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0.4.18, 2007.11.13>

제6장 보 칙

제28조 (여비의 조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2007.11.13>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여비지급의 특례) ①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지급액·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7.11.13>

②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③ 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제30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무원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9에 의한다.

부 칙 <제15680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내여비규정
2. 국외여비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 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⑤ 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⑥ 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⑦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⑧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⑨ 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항중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일비·숙박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국내여비규정 제3조·제4조·제13조·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제5조·제14조·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⑩ 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⑪ 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 칙(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15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단서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3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특호의 다목의 해당공무원란중 "부총리·" 및 "처장·"을 삭제하고,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차관, 처의 차장"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으로 하며, 다목 및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여수수산대학교"를 "여수대학교"로 하고, 구분란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7의 구분란중 "차관 및 처의 차장"을 각각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 내지 <109>생략

부 칙 <제16691호,200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공무원보수규정) <제16785호,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차관보, 1급공무원"을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부 칙 <제17153호,2001.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6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1. 수산관계공무원여비의 지급대상란중 "국립수산물검사소(지소를 포함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7275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계급"을 "계급·직무등급"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해당직급"을 "해당 직급·직무등급"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을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4급 및 5급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17484호,20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7776호,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7881호,200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7994호,2003.6.13>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220호,2004.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673호,200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9270호,200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공용차량관리규정) <제19414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 칙 <제19523호,2006.6.1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무원보수규정) <제20152호,2007.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하고,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한다.

부 칙 <제20381호,2007.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이 완료되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제7조, 제8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402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의 지급대상란 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를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제3조관련]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제10조부터제13조까지및제16조제1항관련]

별표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제12조제2항관련]

별표4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관련]

별표5 이전비지급기준표[제20조관련]

별표6 국외이전비정액표[제20조제2항관련]

별표6의2 국외가족여비지급기준표[제22조관련]

별표7 국외준비금지급액표[제23조제1항관련]

별표8 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지급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

별표9 공무원이아닌자에대한여비지급구분표[제30조관련]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